



결산 분석 종합



결산분석시리즈 V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201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차 례

CONTENTS

제 1 부 거시·총량 분석 등

I. 거시·총량 분석 / 3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평가

- 1.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3
- 2. 2015년도 정부 중점 투자과제 분석 4
- 3. 재정건전성 분석 6

[중점 분석]

- 1.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분석 7
- 2. 예산의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8
- 3.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9
- 4. 신규 재정사업 결산 10
- 5. 추가경정예산사업 12
- 6. 수시배정사업 14
- 7. 예비비 15

II.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분석 / 16



제 2 부 위원회별 분석

제1장 | 국회운영위원회

I. 국회 / 21

1.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사업 지연(관리국·의정연수원) 21
2. 국회규칙 제정을 전제로 한 국민감사청구예산 편성 및 타사업 집행(감사관실) 22

II. 국가인권위원회 / 23

1. 청사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관련 재정 법령 준수 필요(운영지원과) 23

제2장 | 법제사법위원회

I. 법무부 / 27

[주요 현안 분석]

1.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공통) 27
 - 1-1.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개선 필요(법무실, 검찰국) 27
 - 1-2. 특별감찰관 예비비 이월 개선 필요(특별감찰관) 28
 - 1-3. 교도소 수용인원 증가의 대책 마련 필요(교정본부) 28



CONTENTS

2. 몰수금·추징금 징수 노력 강화 등(검찰국)	29
2-1. 미납 추징금 징수 노력 필요	29
2-2.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 개선 필요	29

[개별 사업 분석]

1. 법조협회의 정부청사 사무실 사용료 수납 필요(법무실)	30
2. 법조윤리협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 등(법무실)	30
3. 아이로 시스템(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고도화 예산 투입 후 서비스 중단(법무실) ...	31
4.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걱정 집행 필요(검찰국)	31
5. 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목표 달성 저조(검찰국, 교정본부 등)	32
6. 아동인권 증진 사업 운영의 내실화 필요(인권국)	32
7.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사업 계획 부실(인권국)	33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적정예산 반영 및 집행방식 변경 검토 필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3
9. ‘세계인의 날’ 행사비 정산의 외부 위탁 지양 필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4

II. 법제처 / 35

[주요 현안 분석]

1. 대통령령 등 국회제출 상황 보고 필요(기획조정관)	35
--------------------------------------	----



[개별 사업 분석]

1. 법제교육센터 민간교육 실시의 과제(법제교육과) 35

III. 감사원 / 36

[주요 현안 분석]

1. 조직 확대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운영지원과) 36
2.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수정을 고려할 필요(첨단감사지원단) ... 36

IV. 대법원 / 37

[주요 현안 분석]

1. 국선번호로 지급 연체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정예산 편성 필요(기획조정실) 37

[기타 사업 분석]

1. 연수원 기본경비 집행률 감소 및 타 사업으로의 전용 반복 개선 필요(사법연수원) 38
2.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연구개발비의 과다한 수의계약 개선 필요(기획조정실) 38
3.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적정예산 편성 필요(기획조정실) 39
4.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기획조정실) 39

제3장 | 정무위원회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43

[주요 현안 분석]

1.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 43

[개별 사업 분석]

1. 연구개발비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필요(공통) 44
2. 중요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강화 및 중요규제 기준의 법제화 필요(규제조정실) 44

II. 국민권익위원회 / 45

[주요 현안 분석]

1. 정부부처의 콜센터 통합운영 내실화 필요(서울종합민원사무소) 45
2. 민원서비스 미흡 부처의 서비스 개선 필요(권익개선정책국) 46

[개별 사업 분석]

1. 타부처 외국어 민원에 대한 번역 지원 서비스의 사업화 및 예산 확보 필요
(권익개선정책국) 46



Ⅲ. 국가보훈처 / 47

[주요 현안 분석]

1. 보훈심사 및 보상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공통) 47
 - 1-1. 보훈급여금 사업관리 강화 필요(공통) 47
 - 1-2. 신고포상금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필요(보상정책국) 47
2. 88골프장 매각 및 운영 방안의 개선 필요(공통) 48

[개별 사업 분석]

1. 보훈병원진료 과소예산편성의 문제(복지증진국) 49
2. 보훈단체 회관 매입 지원의 기준 마련 필요(복지증진국) 49
3. 독립운동관련행사 등 지원 예비비 요건 미흡(보훈선양국) 50
4.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 집행실적 부진(보훈선양국) 50
5. 보훈정책개발 수의계약 과다 문제 시정 필요(기획조정관) 51
6. 지방보훈회관 건립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시정 필요(보상정책국) 51

Ⅳ. 공정거래위원회 / 52

[주요 현안 분석]

1. 과징금 세입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과징금 환급액 축소 필요(업무지원팀, 심판관리관실) 52

[개별 사업 분석]

1. 「행정소송수행」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심판관리관실) 53
2. 「공정거래지원」사업의 분리 및 적정 성과지표 설정 필요(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심판관리관실) 53

V. 금융위원회 / 54

[주요 현안 분석]

1.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금융정책국)	54
1-1. 안전설비투자 지원대상 정비 필요	54
1-2. 해운보증기금 자본금 형성 노력 필요	55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개선과제(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56
2-1. 기금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56
2-2. 정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장려금리 인하계획 수립	56
2-3. 가입기준 및 유형 분류체계 재검토 필요	57
3. 자금세탁방지사업의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개선과제(금융정보분석원)	58
4.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9
4-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9
4-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9
5. 공적자금상환기금 상환계획 개선 필요(공적자금상환기금)	60
6.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성과평가 강화 필요(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	61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행정인사과)	62
8.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공통)	63

[개별 사업 분석]

1. 비상임위원에 대한 조사활동비 지급의 문제점(행정인사과)	64
2. 하계휴가 지원 혜택 과다(행정인사과)	64
3. 기술평가 신용대출 이차보전 사업예산 집행 상 문제점(기술신용보증기금)	65
4.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부진(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65



5. 구상권관리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신용보증기금)	66
6. 비목의 용도에 맞지 않는 기본경비 예산집행(행정인사과)	66
7.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 산출근거 수정 필요(행정인사과)	67

제4장 | 기획재정위원회

I. 기획재정부 / 71

[주요 현안 분석]

1.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공통)	71
1-1. 예비비 편성요건과 정부 입법 홍보비 편성	71
1-2. 예비비를 통한 조직 신설 예산 편성의 문제점	71
1-3.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	72
2. 기금평가제도의 개선과제(재정관리국)	73
3. 국제부담금 집행 시 환차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공통)	74
4.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해외 M&A 대출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외국환평형기금)	75
5. 대통령 자문기구 운영의 개선과제(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청년위원회)	76
5-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사업의 문제점	76
5-2. 자문기능에 충실한 청년위원회 운영 필요	76
6.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체계 및 성과관리의 개선과제(국유재산관리기금)	77
7. 법정배분제도 개편 검토 필요(복권기금)	78
8.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원구조 개선과제(대외경제협력기금)	79
9. 융자계정 정리 필요성 검토(공공자금관리기금)	80



CONTENTS

- 10.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즉시 시행에 따른 예산과 집행 간 괴리(예산실) 81
- 11.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현황 조사 및 관리 필요(국유재산관리기금) 82

[개별 사업 분석]

- 1.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의 준비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대외경제협력기금) 83
- 2.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민간협력차관 전액 불용(대외경제협력기금) 84
- 3. 추경 편성 시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대외경제국) 84
-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상 문제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85
- 5.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금관리비 부담 전가의 문제점(대외경제협력기금) 85
- 6. 기준환율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 및 집행(국제금융협력국) 86
- 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집행 상 문제점(재정기획국) 86
- 8.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명 및 소관 프로그램 변경 필요
(복권기금) 87

II. 국세청 / 88

[주요 현안 분석]

-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심사정책국) 88
- 2. 가산금, 과태료 등 수입 실적 제고 필요(징세법무국) 88



[개별 사업 분석]

1. 압류재산공매 적정 예산편성 및 비목 변경 필요(징세법무국) 89
2. 조세박물관 이전 비용에 대한 집행 관리 개선 필요(징세법무국) 89
3. 탈세제보포상금 등의 제도개선 필요(조사국) 90

Ⅲ. 관세청 / 91

[주요 현안 분석]

1. 수출입통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통관지원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91
 - 1-1.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통관지원국) 91
 - 1-2. FTA 이행지원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 사업 역할 분담 필요(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 91

[개별 사업 분석]

1. 기계기구매각대 과다 세입계상 시정 필요(심사정책국) 92
2. 관세소송비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기획조정관) 92
3. 밀수단속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필요(조사감시국) 93
4. 국제협력 사업 관리 강화 필요(정보협력국) 93
5. 면세점 대상 선정 및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검토 필요(통관지원국) 94

Ⅳ. 조달청 / 95

[개별 사업 분석]

1.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기획조정관) 95
2.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비축물자 확보 방안 필요(국제물자국) 95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방식 개선 필요(시설사업국) 96



CONTENTS

V. 통계청 / 97

[주요 현안 분석]

1. 통계조사작성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공통) 97

[주요 현안 분석]

1.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는 수입대체경비 시정 필요(운영지원과) 98
2.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통계교육원) 98

제5장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I. 미래창조과학부 / 101

[주요 현안 분석]

1. 사업비 집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공통) 101
2. 기술료 세입처리 및 징수방식의 문제점(공통) 102
3. R&D 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개선 필요(공통) 103
4. 정보통신방송분야 기금 사업비 운용의 개선과제(공통) 104
5.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05
 - 5-1.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 사업의 특허 성과 개선 필요 105
 - 5-2.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 필요 105
 - 5-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의 부처 간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 106
 - 5-4.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업의 지원대상 개선 필요 106



6.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	107
6-1.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107
6-2.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부적절한 자체수입 예측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 초래	107
7. 출연연구기관 기술료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	108
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	109
8-1.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 사업의 대학 부담금 비율 명시 필요	109
8-2. 민간투자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사업	109
8-3. 기업공감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운영실적 개선 필요	110
9. 정보통신분야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성과 제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111
9-1.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졸업자의 중소기업 고용 유지 성과 제고 필요	111
9-2. 국내 중소기업이 유치한 해외인력의 고용 유지 성과 제고 필요	111
10. 창조경제 지원 사업의 개선과제(창조경제기획관)	112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필요(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113
2. 원자력의학원의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재검토 필요(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13
3. 연구개발특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사전준비 미흡(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	114
4.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미래인재정책국) ..	114
5. BTL 전문과학관의 전시물 개선 필요(미래인재정책국)	115
6.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수입 부족 개선 필요(미래인재정책국)	115
7. 해외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글로벌연구실 사업(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16



8.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예비비 편성 문제(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 116
9.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축소 필요(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17
10. 간접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과학기술전략본부 성과평가혁신관) 117
11. 정보통신방송분야 정책연구사업 간 차별성 강화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118
12.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 118
13.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분야별 과제 간 성격 구분 명확화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119
14.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 119
15. 융합보안솔루션 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120
16. 신규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마련 필요(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120
1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보험보상금의 연례적 과소계상 부적절(우정사업본부) 121
18. 우편업무 정보화 사업 결과의 효율적 활용 필요(우정사업본부) 121

II. 방송통신위원회 / 122

[주요 현안 분석]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방식 및 사업 범위 조정 필요(공통) 122
 - 1-1.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서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명시 필요 122
 - 1-2.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의 재검토 필요 122



[개별 사업 분석]

1. 남북교류협력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에 대한 수익계약 위법(기획조정실) 124
2.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사업의 연차목표 수립 필요(방송정책국) 124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필요(이용자정책국) 125
4.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의 활용도 제고 필요(방송기반국) 125
5. 중소기업 광고제작비 지원 사업의 중도포기 최소화 필요(방송기반국) 126

III. 원자력안전위원회 / 127

[주요 현안 분석]

1.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방사선방재국) 127
 - 1-1.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구역에 대한 감시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 127
 - 1-2.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실태조사·교육 등의 위탁 업무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 127

[개별 사업 분석]

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기획조정실) 128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설비 개선비 지원은 재검토할 필요(원자력안전국) 128
3.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의사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방사선 방재국) 129
4. 원자력안전 실태조사의 저조한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원자력안전국) 129



CONTENTS

제6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교육부 / 133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방교육지원국) 133
 - 1-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확보 필요 등 133
 - 1-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 개선 필요 134
 - 1-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 134
2. 대학 등록금 경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학술장학지원관) 135
3. 특수교육 내실화 필요(지방교육지원국, 국립특수교육원) 135
4. 교육부 산학협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학지원관) 136
 - 4-1.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 사업의 중복 해소 필요 136
 - 4-2.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 개선 필요 136
5.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공정성 확보 시스템 보완 필요(대학정책관) ... 137
6. 사학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학교정책관) 138

[개별 사업 분석]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장평가 실시 필요(대학정책관) 139
2. 노후 위험시설 개선 위주의 시설사업 반영 필요(교육안전정보국) 139
3.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필요(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140
4. 재외교육기관 지도·조사 강화 필요(국제협력관) 140



5. 평생학습중심대학의 대학별 대응투자 비율 준수 필요(평생직업교육국)	141
6. 평생학습계좌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평생직업교육국)	141
7. BK21 플러스 사업비의 적기 교부 필요(학술장학지원관)	142
8.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필요(학술장학지원관)	142
9. 서울대학교 출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학정책관)	143
10. 예비비 이월 관리 필요(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143
11. 적정 수준의 기본경비 편성 필요 등(공통)	144

II. 문화체육관광부 / 145

[주요 현안 분석]

1. 문화체육관광분야 기금재원 확보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공통)	145
2.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점검	146
2-1. 관광산업 융자의 정책적 지원기준 마련 필요(관광정책관)	146
2-2. '문화가 있는 날' 정착을 위한 참여기관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문화정책관)	146
2-3.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예술정책관)	147
2-4.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문화정책관)	147
3. 융복합관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제관광정책관)	148
3-1. 의료 관광육성사업의 보건복지부사업과 유사중복 해소 필요	148
3-2. MICE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148

[개별 사업 분석]

1. K-Style Hub 구축사업의 기금운용 계획변경 부적절(관광정책관)	149
2.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재정비 필요(관광정책관)	149



CONTENTS

3.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준 마련 및 계획적인 사업 추진 필요(국제관광정책관)	150
4.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시범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재설정 및 사업추진 재검토(콘텐츠정책관)	150
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의 보건복지부와 연계 필요(예술정책관)	151
6.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여 스토리산업을 지원하고 형평성 있는 상금 지급 필요 (콘텐츠정책관)	151
7. 스포츠산업융자의 다양한 종목 지원과 적정예산 편성 필요(체육정책관)	152
8.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는 예비비 집행 필요(문화정책관)	152
9.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사업추진 필요(예술정책관)	153
10.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구축사업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저작권정책관) ...	153
11.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한 HD드라마타운사업 보조금관리 철저(미디어정책관)	154
12. 종합형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체육정책관)	154

Ⅲ. 문화재청 / 155

[주요 현안 분석]

1. 문화재보호기금 운용개선 필요(문화재정책국)	155
2. 문화재청 소관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철저 필요(운영지원과)	156

[개별 사업 분석]

1. 무형문화재 보호사업 성과 제고 필요(문화재정책국)	156
2.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문화재정책국)	157
3.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는 예비비 집행 필요(문화재활용국)	157



제7장 | 외교통일위원회

I. 외교부 / 161

[주요 현안 분석]

1. 공공외교 사업의 수행 방식 개편 필요(문화외교국) 161
 - 1-1. 공공외교 수행 체계 개선 필요 161
 - 1-2.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 161
2. 재외공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기획조정실) 162
 - 2-1. 재외공관 차량 교체 시 법령 준수 필요 162
 - 2-2. 재외공관 행정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미흡 162
3. 정상 및 총리외교의 예산 집행 개선 필요(의전장실) 163

[개별 사업 분석]

1. 아세안문화원 건립 부진 등(남아시아태평양국) 163
2. 전략사업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국제협력단) 164
3. 수행방식 미흡으로 우간다 지원사업(ODA) 취소(한국국제협력단) 164
4.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환 필요(재외동포재단) 165

II. 통일부 / 166

[주요 현안 분석]

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성과 개선 필요 166
 - 1-1.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제도 성과 개선 필요(남북하나재단) 166
 -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필요(하나원) 166
 - 1-3. 지역 하나센터 사업 예산 집행 방식 개선 필요(남북하나재단) 167



CONTENTS

2. 경험·교역보험 제도 개선 필요(기획조정실)	167
3. 통일준비위원회의 과도한 홍보사업 지양 필요 등	168
3-1. 과도한 홍보사업 진행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개선 필요(통일준비위원회)	168

[개별 사업 분석]

1. 세계평화회의의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통일정책실)	169
2. 「이산가족지원」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통일정책실)	169
3. 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교류협력국)	170
4. 「인적왕래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교류협력국)	170
5.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체계적 진행 필요(교류협력국)	171
6. 6.25전쟁 남북피해기념관(가칭) 운영방안 모색 필요 등(6.25전쟁남북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국)	171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72

[개별 사업 분석]

1.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건비 집행 필요(기획조정관)	172
2.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위원활동지원국)	172



제8장 | 국방위원회

I. 국방부 / 175

[주요 현안 분석]

1. 국방부의 부적절한 인력 운용 및 인건비 증가 175
 - 1-1. 책정된 인력규모 및 정원 내 병력 운용의 필요성(군구조개혁추진관실·보건복지관실) ... 175
 - 1-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부합하는 한시적 기구 운용 필요(기획관리관실) ... 176
 - 1-3.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보건복지관실) 176
2. 간부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7
 - 2-1. 간부 주거시설 확보계획 및 관리의 개선방안(시설기획관실) 177
 - 2-2. 전세대부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시설기획관실) 177
3. 집행계획 변경제도의 과도한 활용 개선 필요(계획예산관실) 178
4. 다국적군 파병사업의 개선 필요(국제정책관실) 178

[개별 사업 분석]

1. 국방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보화기획관실) 179
2. 군 골프장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건복지관실) 179
3. 영외자 급식비 과세 필요(군수관리관실) 180
4. 「국유재산법」에 반하는 국유재산 관리전환(시설기획관실) 180
5.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체결한 정보사 자산취득 계약의 문제점(시설기획관실) 181
6. 군 장려금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인사기획관실) 181
7. 시설관리용역 수의계약 과다 시정 필요(시설기획관실) 182

CONTENTS

8. 국회에서 증액된 시설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필요(시설기획관실)	182
9.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제2 군자녀 기숙형고교 설립사업 재검토(시설기획관실)	183
10. 일용품 현금지급제도의 개선(군수관리관실)	183
11. 교육용 탄약 확보의 적정성 제고(군수관리관실)	184
12. 소프트웨어 자산인식 오류문제 개선(정보화기획관실)	185
13. 국방전직교육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보건복지관실)	185

II. 방위사업청 / 186

[주요 현안 분석]

1. 방위력개선사업의 연부액 현실화 필요(공통)	186
1-1. 한국형기동헬기 사업의 연부액 지급계획 부적절(한국형헬기사업단)	186
1-2. 전투근무지원정 연부액 과소편성으로 인한 차년도 예산 압박 및 업체 부담 심화(합정사업부)	187
2. 절충교역 현황 및 개선방안(획득기획국)	188
2-1. 절충교역 제도의 전략적 활용 필요	188
2-2. 절충교역 이행관리 출장 개선 필요	188
3. 국외근무(주미 국제계약지원단,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9	
3-1. 국외사업 현장감독관(PMO) 운영 내실화 필요(공통)	189
3-2.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파견제도 개선 필요(국제계약부)	189
4. 연평도 포격에 대응한 긴급소요 사업의 획득 지연(지휘정찰사업부)	190
4-1. 전술비행선 소요 삭제	190
4-2.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 사업의 전력화 지연	190



[개별 사업 분석]

1. 저장탄약신뢰성평가(ASRP) 계획 대비 평가실적 저조(국방기술품질원) 191
2. 시험연구비 통제 강화 필요(공통) 191
3.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 추진 지연 및 총사업비 증액 소요 발생(항공기사업부) 192
4.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지연에 따른 타 사업의 연쇄적 지연(지휘정찰사업부) 193
5. 2014년에 종료된 지하시설파괴폭탄 사업의 조정증액 집행 부적정(유도무기사업부) 194
6.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 소요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기동화력사업부) 195
7. 부대개편 사업 추진계획 내실화 필요(기동화력사업부) 195
8. 방산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비목 변경 등 집행방식 개선 필요
(방산기술통제관) 196

III. 병무청 / 197

[주요 현안 분석]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충역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방안 197
 - 1-1. 보충역 소집적체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사회복무국) 197
 - 1-2.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폐지 관련 신중한 논의 필요(사회복무국) 197

[개별 사업 분석]

1. 병역면탈 등 적발의 정확성 제고 필요(병역자원국) 198
2. 인도·인접제도의 필요성 재검토(입영동원국) 198
3. 현역병 입영 후 귀가 비율 증가의 개선 필요(입영동원국) 199

제9장 | 안전행정위원회

I. 행정자치부 / 203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재정 보완대책 및 재정건전성 제고정책의 개선과제(공통)	203
1-1. 자치구 재정압박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	203
1-2.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정책의 보완과제	203
1-3.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204
1-4. 순세계잉여금의 회계처리 및 재정공시제도의 개선필요	204
1-5. 비효율적인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제도의 개선필요	205
2.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전자정부국)	206
2-1. 전자정부 대국민 창구의 통합적 운영 필요	206
2-2. 행정자치부 시스템 위주의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개선 필요	206
2-3.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의 집행상의 문제점	207
2-4.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207
2-5.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의 법령상 근거 필요	208
2-6. 공무원 활용성이 미흡한 모바일 전자정부의 개선 필요	208
3. 정부 3.0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창조정부조직실)	209
3-1. 정부 3.0 대국민 인식도 제고 미흡	209
3-2. 중앙행정기관 원문공개율 저조	209
3-3. 정부 3.0 컨설팅단과 국민디자인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210
3-4. 국가중점개방데이터 개방의 성과 제고 필요	210
4. 지방교부세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지방재정세제실)	211
4-1.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배분기준의 명확화 필요	211
4-2. 특별교부세 연도말 집중집행의 문제점	211



5.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공통)	212
-----------------------------------	-----

[개별 사업 분석]

1. 법·제도 개선 위주의 개도국 대상 공공행정컨설팅의 추진 필요(기획조정실)	213
2.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업의 일부 내역의 성과 미흡(지방행정실)	213
3. 「지역발전활성화」사업 일부 내역의 성과 제고필요(지방행정실)	214
4. 초과승인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지방행정연수원)	214

II. 인사혁신처 / 215

[주요 현안 분석]

1. 지속가능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인재개발국)	215
2.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인사혁신국)	216
3.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통합관리 필요(인사혁신국)	217

[개별 사업 분석]

1. 위탁교육과정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인재개발국)	218
2. 초과승인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인재개발국)	218
3. 예비비 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필요(기획조정관)	219
4. 기금수익 총당금의 범위와 규모의 법령상 근거마련 필요(공무원연금공단)	219

Ⅲ. 경찰청 / 220

[주요 현안 분석]

1. 무인단속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기획조정관, 교통국)	220
1-1. 과태료 결손시효불납액 과다의 개선방안	220
1-2. 속도위반 무인단속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220
1-3.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221
1-4. 체납차량 현장적발 시스템 운영의 개선방안	221
2. 도로 차선 시인성(視認性) 개선 방안 마련 필요(교통국, 도로교통공단)	222
3. 경찰인력 운용의 문제점(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222
4. 지역치안 개선사업 통합적 기준 필요(생활안전국)	223
5. 범죄수사분석시스템 통합 운영 필요 등(수사국, 과학수사관리관)	223
6. 경찰장비현대화 사업 운영 개선과제(정보화장비정책관)	224
6-1. 분산 편성되고 있는 피복비의 통합 필요	224
6-2. 희망품목 신청에 의한 피복비 집행의 개선방안	224

[개별 사업분석]

1. 광역교통정보수집 사업 시정조치 점검 및 향후과제(교통국)	225
2. 관광경찰대 운영 기준 명확화 필요(외사국)	225
3.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토지매입비 집행의 문제점(기획조정관)	226



IV. 국민안전처 / 227

[주요 현안 분석]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연차별 사업 계획 수정 고려 필요(재난관리실) 227
2. 함정 유류비 및 공공요금 사용 문제(해양장비기술국, 해양경비 안전국) 228
 - 2-1. 함정 유류비 미지급금 발생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228
 - 2-2.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이용 연례적 반복 개선 필요 228

[기타 사업 분석]

1. 사유재산 피해복구예산 과다 편성 및 부적절한 전용 집행 개선 필요(재난복구정책관실) .. 229
2.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전신문고 집행 개선 및 기능 제고 방안 마련 필요(안전정책실) .. 229
3. 재난관리 전문인력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재난관리실) 230
4. 방재실험시설 구축 사업의 지출원인행위 없는 자산취득비 이월 시정 필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30
5. 수색구조 역량강화사업에서 예비비 이월 및 비목편성 오류 시정 필요(해양경비안전국) · 231
6. 연안구조장비 도입 사업의 집행을 제고 필요(경비안전국) 231
7.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방제정 건조 사업 예산 편성 필요(해양오염 방제국) 232
8. 추경예산이 편성된 종합훈련탑 신축 및 소방장비 구입 예산 집행실적 저조(중앙소방본부) · 232
9.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마련 필요(중앙소방본부) 233
10.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술 이전 성과 제고 필요(안전총괄기획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33
11. 풍수해보험사업 온실부문 가입률 제고 필요(재난관리실) 234



CONTENTS

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35

[주요 현안 분석]

1.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선거장비 보관경비를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선거국) 235
2. 재보궐선거관리의 연례적인 예비비 편성 지양 필요(선거국) 236
3.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 필요(선거국) 237
4.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령상 근거마련 필요(선거국) 238

[개별 사업 분석]

1. 터치스크린 투표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재검토 필요(선거국) 239
2. 홍보비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홍보국) ... 239
3. 예비금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기획조정실) 240
4. A-WEB 운영지원의 내실화 필요(기획조정실) 240

제10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I. 농림축산식품부 / 243

[주요 현안 분석]

1.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농촌정책국) 243
 - 1-1. 귀농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243
 - 1-2. 귀농귀촌교육 수료생의 정착률 추적 조사 필요 243
 - 1-3. 지자체 준비 부족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연 244
 - 1-4.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조속한 실시 필요 244



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농촌정책국)	245
2-1. 어촌산촌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245
2-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의 관리 강화 필요	245

[개별 사업 분석]

1.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의 예산 산출 내역과 상이한 집행 개선 필요(식량정책관)	246
2.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경제성 검토 강화 필요(유통소비정책관)	246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사업 개선방안(축산정책국)	247
4.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개설 증진 필요(창조농식품정책관)	247
5. 품목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농업정책국)	248
6. 공동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사업 절차 개선 필요(축산정책국)	248
7.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투자 제고 방안 모색 필요(식품산업정책관실)	249

II. 해양수산부 / 250

[주요 현안 분석]

1. 해운·항만 부문 신성장동력 투자의 효율화 필요	250
1-1. 마리나 항만 이용 수요의 재추정 후 개발 계획 조정 필요(항만국)	250
1-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질적 사업 성과 제고 필요(해운물류국)	250
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251
2-1.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	251
2-2.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시 자격요건 강화 필요	251
3. 예산 미편성·부정확한 추계 등을 개선하여 자체세입·수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 (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252
3-1. 연례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과목의 예산 편성 필요	252
3-2.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향상 노력 필요	252



CONTENTS

[개별 사업 분석]

1. 수요가 미흡한 원양어선현대화 융자사업의 지원조건 재검토 필요(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253
2.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 노력 필요(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253
3. 재정 지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출 실적이 감소하는데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254
4. 해상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의 재발 방지 필요(해운물류국) · 254
5. 낙도보조항로 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시후 그 결과를 사업자 선정에 반영 필요(해운물류국) 255
6. 항로표지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할 필요(해사안전국) · 255
7. 해양사고 예방활동 예산의 해양사고 예방과 무관한 사업으로의 전용 부적절(해사안전국) · 256
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창구의 일원화 필요(해운물류국) 256

III. 농촌진흥청 / 257

[주요 현안 분석]

1.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 향상 필요 등(공통) 257
 - 1-1.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실적은 낮아짐 257
 - 1-2.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예산으로 양산설비 구축 부적절 257
2.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농촌지원국) 258
 - 2-1. 시군별 특성화를 위한 지원이 특정 작물에 집중되는 현상 시정 필요 258
 - 2-2. 경제발전계정에서 제주 지역에 대한 수익모델 시범사업 지원 부적절 258

[개별 사업 분석]

1.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지역활력화 작목육성 사업의 중복 지원 해소 필요(농촌지원국) · 259



2.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가금연구단지 이전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국립축산과학원) ... 259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보급 목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연구정책국) 260
4. 농가맛집 창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농촌지원국) 260
5.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 강화 및 타당성
재조사 필요(국립축산과학원) 261

IV. 산림청 / 262

[주요 현안 분석]

1. 임도시설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산림자원국) 262

[개별 사업 분석]

1.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방제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산림보호국) 263
2. 산림 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산림자원국) 263
3. 세종시에 조성하는 국립중앙수목원과 중앙공원의 개장시기 조정 필요(산림이용국) 264

제11장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I. 산업통상자원부 / 267

[주요 현안 분석]

1. 기업에 대한 R&D 지원 문제와 개선과제(공통) 267
 - 1-1.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증가 267
 - 1-2. 산업 구조개선 관점에서 R&D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 267

CONTENTS

2. R&D 과제 기획 제도의 개선과제(공통)	268
3. 산업 R&D 사업 특허의 질적 우수성 제고 필요(공통)	269
4. 기술료 세입 처리 방식의 일관성 부족(공통)	270
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공통)	270
5-1.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 부진	270
5-2. 계통한계가격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발전차액지원금의 과소 추계	271
5-3.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부진하여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실효성 미흡	271
6.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한 고용증대 노력 필요 등(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272
6-1.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용감소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필요	272
6-2. 해외이전 공장의 국내 회귀유도 등을 통해 고용증대 노력 필요	272
7. 소재부품 R&D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273
7-1. 소재부품 분야 무역수지를 고려한 R&D 지원 방향 점검 필요	273
7-2. 소재부품 R&D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273
8. 기술개발기반 구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274
8-1. 장기수요 조사에 근거한 장비 구입 필요	274
8-2.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장비구입 예산 미집행	274
9. 자금재원 감소를 고려한 산촉기금 지출 절감방안 마련 필요(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	275
10. 여성 R&D인력 지원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276
10-1. 여성 R&D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	276
10-2. 경력복귀 여성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저조한 취업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76
11. 가스안전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277
11-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	277
11-2. 과소 추계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의 수요를 재점검할 필요	277



12. 석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278
12-1.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연탄 가구에 대해 직접 지원할 필요	278
12-2. 석탄 차액보전금과 탄광근로자의 자녀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	278
12-3. 대한석탄공사의 경영효율화와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279
12-4.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의 재검토 필요	279
13.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인하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280
14.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281
14-1.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계정 분리 및 계정간 차입금의 상환 필요	281
14-2. 방사성 폐기물 운반 비용을 기금의 수입·지출에 산입할 필요	281
1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282
15-1. 미세먼지·원자력안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사업을 확대할 필요	282
15-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부족	282
16. 무역보험기금 수출신용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무역투자실)	283
16-1. 신용보증기금과 중복성이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선전적(船積前) 수출신용 보증'을 축소할 필요	283
16-2.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금융기관 법정출연금을 신설할 필요	283

[개별 사업 분석]

1. 융복합소재센터 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	284
2.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284
3. 의료기기 지원 사업의 구매실적 개선 필요(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285
4. 만군 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국방 R&D 효율화 필요(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285
5. 바이오화학 분야 상용화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286
6.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수수료 수익의 사업비 재투자 확대 필요 등(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286

CONTENTS

7.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실적 개선 필요(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287
8. 연말 쇼핑행사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문제(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287
9. 기술금융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288
10. 에너지 분야 R&D 전담기관의 운영비는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289
11. 해외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여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289
12.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의 중복 지원을 개선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290
13.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의 계약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290
14. 「해상풍력기반구축사업」의 집행 실적 저조(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291
15. 「가스냉방 설치비 지원」 사업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291
16.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292
17.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의 실적 부진(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292
18. 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 보험」 지원 실적 저조(무역투자실)	293

II. 중소기업청 / 294

[주요 현안 분석]

1. 중소기업청의 출연·보조 사업비 관리 개선 필요(공통)	294
1-1. 중소기업청 R&D 사업비가 전문기관에 예치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	294
1-2. 비 R&D 사업은 예치금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294



2.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경영판로국)	295
2-1. 추경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	295
2-2.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	295
2-3. 상위 신용평가 등급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발생 문제 개선 필요	296
2-4.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지원대상 선별 필요	296
3.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소상공인정책국)	297
3-1.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실적 제고 필요	297
3-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297
4.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창업벤처국)	298
4-1.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 제고 필요	298
4-2. M&A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98
5. 중복 가능성이 있는 창업지원 사업의 통합추진 필요(창업벤처국)	299
5-1. 창업아카데미와 창업선도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원화 필요	299
5-2.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와 창업보육센터 통합 운영 필요	299
6. 중소지식 서비스기업 육성 사업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편성 부적절(창업벤처국)	300
7. 중소기업 R&D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생산기술국)	301
7-1. 기획평가관리비 중 위탁사업비 과다 문제	301
7-2. 산학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방식 개선 필요	301
7-3.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302
8.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일원화 필요 (생산기술국)	303

[개별 사업 분석]

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총 예산에서 정부수입 비율 과다 문제(중소기업정책국)	304
2. 벤처기업 채용지원 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등(창업벤처국)	304

CONTENTS

3. 창업대학원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재검토 필요(창업벤처국)	305
4. 창업인턴제 사업은 실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예산 편성 필요(창업벤처국)	305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영판로국)	306
6.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지원 사업의 추계강화와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방안 마련 필요(경영판로국)	306
7.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의 성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경영판로국)	307
8. 연구용역비 집행상 문제점(중견기업정책국)	307

III. 특허청 / 308

[주요 현안 분석]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특허·디자인 심사국)	308
1-1. 특허 선행기술조사 위탁용역의 경쟁을 강화할 필요	308
1-2. 특허 심사관의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	309
1-3. 디자인권 심사시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행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309
2. 특허 활용을 위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산업재산정책국)	310
2-1. 은행의 지식재산(IP) 담보 대출 활성화 필요	310
2-2.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수익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310
3. 국유 및 공유 특허의 활용도 제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11

[개별 사업 분석]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12
2.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12
3.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실적 저조(산업재산정책국)	313
4.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다각화 필요(산업재산정책국)	313



5. 특허상담센터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 성과 제고 필요 (산업재산보호협력국)	314
6.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강좌지원」 사업과 「지식재산 학점은행」 사업간의 연계 강화 필요(국제지식재산연수원)	314
7. 특허청 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발명 캠프의 재검토 필요(국제지식재산연수원)	315
8.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예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공통)	315

제12장 | 보건복지위원회

I. 보건복지부 / 319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개선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319
2. 가슴기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보건복지부, 환경부)	320
2-1.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320
2-2. 원인미상 질환의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	320
3. 필수의료과목 및 지방병원의 의사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 필요(보건의료정책관)	321
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 등 비효율성 해소 필요(건강보험정책국)	322
5.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건강보험정책국)	323
5-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	323
5-2. 누적적립금을 고려한 보험료율 산정 필요	323
5-3. 건강보험 부담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 확대 필요	324
5-4. 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 마련 필요(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324

CONTENTS

5-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ODA사업 추진 부적절	325
5-6.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 개선 필요	325
5-7.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효율화를 위한 각 기관의 부담금 기준 마련 필요	326
6. 메르스 대응 예산의 집행상 문제(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327
6-1. 국가 안전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이 전문가 검토없이 결정(질병관리본부)	327
6-2.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 집행 저조(공공보건정책관)	328
6-3. 메르스 관련 지원장비 세부지침 마련 필요(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자원관리과)	328
6-4.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질병관리본부)	329
7.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건산업정책국)	330
7-1.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육성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330
7-2. 홍보비 위주의 지원으로 지방의 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성과 미흡	330
7-3. 해외환자 보호 미흡	331
7-4.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관리 필요(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331
8. 보건복지부 인력 및 인건비 운영 개선 필요(공통)	332
8-1. 전문직위제 운영 개선 필요	332
8-2. 의료업무 수당 지급 부적절	332
8-3. 공중보건 의사 인건비 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필요	333
9.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334
10.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보육정책관)	335
10-1.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으로 본사업 차질 우려	335
10-2. 대표성 없는 시범지역 선정 개선 필요	335
11. 치매환자시설 및 가족 지원 미흡 등(공통)	336
11-1.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 시설 확충 필요	336
11-2.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등 필요	337
11-3. 치매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37



12. 아동학대 대책 관련 개선과제(인구아동정책관)	338
12-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338
12-2.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쉼터 확대 필요	338
13.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 후 추계 및 집행관리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	339
13-1. 생계급여 과소편성으로 인한 이·전용 등 개선 필요	339
13-2.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	340
13-3. 주거급여·교육급여 집행관리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340
14.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인구아동정책관) ·	341
14-1.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	341
14-2. 국내입양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모색	342
14-3.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전산화 조속 추진	342

[개별 사업 분석]

1.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건강정책국) ·	343
2.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343
3.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보건복지부 역할 강화 필요(질병관리본부)	344
4.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필요(보건의료정책관)	344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공공보건정책관) ·	345
6.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미흡(보건의료정책관)	345
7.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보건의료정책관)	346
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검진항목 재평가실시 지연(건강정책국, 질병관리본부)	346
9.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집행 개선 필요(공공보건정책관)	347
10.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347
11. 특성화대학원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노인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348
12. 치료재료 및 약제 급여여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개선 필요(건강보험정책국) ·	348

CONTENTS

13.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사업의 일부지역 성과 저조(공공보건정책관)	349
14.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패널티 부여 필요(공공보건정책관) ..	349
15. 예산 미배정에 따른 한의약 해외거점지원 사업 국회 증액예산 전액 불용(한의약정책관)	350
16.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집중 개선 필요(보육정책관)	350
17.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이용실적 제고 필요(보육정책관)	351
18. 노인돌봄서비스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노인정책관)	351
19.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부실 대책 필요(노인정책관)	352
20.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사업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352
21. 국민연금공단 보유 부동산(사옥 및 리조트) 수익성 개선 필요(연금정책국)	353
22. 기초연금 보조율 산정시 실수요(기초연금수급률) 반영 필요(연금정책국)	353
23. 장애아동가족지원 추계 부정확 개선 필요(장애인정책국)	354
24.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비용 추계 필요(장애인정책국) ·	354
25. 추경으로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집행부진(장애인정책국)	355
26. 긴급복지 중복수급 등 개선 필요(복지정책관)	355
27. 자활연수원의 자활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복지정책관)	356
28.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관리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개선 필요(복지행정지원관) ·	356
29.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개선 필요(사회서비스정책관)	357

II. 식품의약품안전처 / 358

[개별 사업 분석]

1. 식약처 소관 교육의 교육비 본인부담 부과 검토 필요(공통)	358
2. 나트륨 저감화 사업 위탁사업비 추진방식 부적절(식품영양안전국)	358
3. 고위험의료기기 인증업무 허가업무 역량 집중 필요(의료기기안전국)	359



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기양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의약품안전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359
5.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 필요(식품영양안전국) · 360
6. 외부전문가 대상후보군 다양화 필요(기획조정관) 360
7. 수입식품 검사담당 공무원 피복비 지급 절차 마련 필요(식품안전정책국) 361
8. 의약외품정책과 성과 미흡(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 정책과) 361

제13장 | 환경노동위원회

I. 환경부 / 365

[주요 현안 분석]

1. 환경재정 운용의 안정성 제고 필요(공통) 365
 - 1-1.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취약 및 일반회계전입금 의존도 심화 365
 - 1-2. 지출예산 과다산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365
 -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및 일부 세부사업에 있어 동 회계 사업으로의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366
2.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공통) 367
3. 하수도사업 재정투자 방향 전환 필요(상하수도국) 368
4.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성 제고 필요(물환경국) 369
 - 4-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연 및 가동률 저조 369
 - 4-2.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연 및 효과성 미흡 369
 - 4-3.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연, 가동률 저조 등 370
 - 4-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시설 설치 지연 370



CONTENTS

5. 폐기물관리시설 추진실적 제고 및 투자효율 제고 필요(자원순환국)	371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연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가동률 격차	371
5-2. 폐기물자원화시설 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371
6. 미세먼지 저감방안 재정비 필요(기후대기국, 환경정책실)	372
6-1. 경유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강화 필요	372
6-2. 사업장총량관리제 실효성 제고 필요	372
6-3.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실적 저조	373
7.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환경부, 보건복지부)	374
7-1.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374
7-2.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원인규명 프로세스 보완 필요	374
8. 생물자원 전시·연구기관의 조속한 기능 정상화 및 연구역량 강화 필요(자연보전국)	375
9.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검토 필요(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376

[개별 사업 분석]

1.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제고 필요(상하수도국)	377
2. 토양·지하수관리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상하수도국)	377
3.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대책사업 집행실적제고 필요(상하수도국)	378
4.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전환 필요(자원순환국)	378
5.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관리강화 필요(환경보건국)	379

II. 고용노동부 / 380

[주요 현안 분석]

1.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지원사업의 성과제고 필요(공통)	380
--	-----



1-1. 기업보조금의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성과 제고 필요	380
1-2. 생계비 지원사업의 비정규직 지원성과 제고 필요	380
1-3.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근로여건 개선지원의 성과 제고 필요	381
1-4.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381
2. 추경사업의 연내 추경효과 미흡(공통)	382
2-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382
2-2.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추경편성 취지 달성 미흡	382
2-3.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의 청년 신규채용 성과 미흡	383
2-4.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사업의 성과부진 우려	383
3.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문성·경쟁력 제고 필요(고용서비스정책관)	384
3-1. 고용센터의 업무와 인력구조 개편 필요	384
3-2. 고용복지+센터의 분산된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성과 제고 필요	384
3-3. 민간위탁 지원방식 개편 필요	385
4. 성과 부진으로 인한 폐지사업 과다(공통)	385
4-1.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의 집행실적 부진	385
4-2. 전직지원 장려금의 전직지원 성과 부진	386
4-3.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부진	386
4-4.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의 사업취지와 다른 운영	387
5. 청년 일자리사업의 고용성과 개선 필요(공통)	387
5-1. 청년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 성과 제고 필요	387
5-2. 재학생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운영방식 개선 필요	388
5-3.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의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성과 제고 필요	388
6.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공통)	389
6-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389
6-2. 실업급여계정의 법정적립금 배율 준수 필요	389



CONTENTS

[개별 사업 분석]

1. 다양한 사업성과를 고려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계획 수립 필요
(직업능력정책국) 390
2.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검토 필요
(고령사회인력정책관) 390
3. 한국폴리텍대학 신축사업의 대학정원 조정계획 마련 필요(직업능력정책국) 391
4. 정책홍보 방송광고를 위한 예비비 편성 부적정(노사협력정책관) 391
5.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청년여성고용정책관) 392
6. 대구산재병원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필요(산재예방보상정책국) 392
7. 산재예방요율제의 할인지표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산재예방보상정책국) 393
8.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성과 저조(직업능력정책국) 393
9.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의 고용유지 효과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노동시장정책관) · 394
10. 퇴직연금가입 사업주 부담금 지원사업의 전액불용(근로기준정책관) 394

III. 기상청 / 395

[주요 현안 분석]

1. 기상관측장비 도입 및 설치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공통) 395
2. 출연금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공통) 396

[개별 사업 분석]

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관측기반국) 397
2.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및 현업화 실적 제고 필요 397
3. 위약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발생 최소화 필요(기획재정관) 398



제14장 | 국토교통위원회

I. 국토교통부 / 401

[주요 현안 분석]

1. 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주택토지실) 401
 - 1-1. 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401
 - 1-2. 분양보증과 금융성대출보증을 분리·운영할 필요 401
2.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주택토지실) 402
 - 2-1.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한 사업자 선정기준 재조정 필요 402
 - 2-2.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 402
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도시실) 403
 - 3-1. 신규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403
 - 3-2.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도로 준공시기 조정 필요 403
 - 3-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내부도로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필요 404
4. 불법건축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이행강제금 감경조항 개선 필요(국토도시실) 405
5.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건설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건설정책국) 405
6. 수자원 부문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상 문제점(수자원정책국) 406
 - 6-1. 댐 추경사업의 실집행을 저조·부적절한 특례적용·경기부양효과 미흡 406
 - 6-2. 수도 추경사업의 수공 부담분 미집행·집행실적 부진 406
7. 홍수·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개선사업 보완 필요(수자원정책국) 407
 - 7-1. 「댐 설계기준」에 위반하여 미설치된 비상방류설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 407
 - 7-2.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407
 - 7-3.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의 보강대책 마련 필요 408

CONTENTS

8.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통)	408
8-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월	408
8-2. 예산배정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배정계획 변경 필요	409
9.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통)	409
9-1.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산정기준 개선 필요	409
9-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태 개선 필요	410
9-3. 개발부담금 계획액의 산정 방식 개선 필요	410
9-4. 원주·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410
10.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항공정책실)	411
11.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실집행 및 추경집행 부진(철도국)	412
11-1. 추경 대상 사업의 추경 증액분 미집행	412
11-2. 일부 세부사업의 실집행 미흡 및 연도말 출연금 집행의 문제점	412
12. 광역철도 건설지원사업의 실집행 및 추경집행 부진 등(철도국)	413
13.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등(도로국)	414
13-1.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경 증액분 집행 미흡 등	414
13-2. 2015년 완공사업의 국가 출자금 과다 집행	414
14. 도로건설사업의 토지매입비 실집행 개선 필요(도로국)	415
15. 차선의 시인성(視認性, visibility)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도로국)	416
16. 임시공휴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 미흡(도로국)	417

[개별 사업 분석]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의무적 분리도급 준수 필요(주택토지실)	418
2. 재정비촉진사업의 과다한 이월을 초래하는 국비 교부기준 개선 필요(주택토지실)	419
3.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의 실집행실적 제고 필요(국토도시실)	419



4. 해수담수화시설의 부지선정 기준 개선 필요(수자원정책국)	420
5. 건물 매각대금의 회계처리 시정 필요(항공정책실)	420
6. 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사업 성과 제고 필요(항공정책실)	421
7.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 포장사업의 집행 개선 필요(항공정책실)	421
8. 항공안전 교육훈련사업의 안전과 무관한 교육 실시(항공정책실)	422
9. 철도 PSO 보상비 지급의 법령 준수 필요(철도국)	422
10.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집행 부진(철도국)	423
11. 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철도국)	423
12. 고속도로 조사설계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부진 등(도로국)	424
1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기 부적정(교통물류실)	424
14.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의 분석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교통물류실)	425
15.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자동차관리관)	425
16.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의 부적절성(교통물류실)	426
17. 연구용역의 목적 외 집행 과다(교통물류실)	426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427

[주요 현안 분석]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건설 집행관리 강화 필요(기반시설국)	427
1-1.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 사업의 추경예산 집행 부진	427
1-2. 오송-청주공항, 오송-청주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추경예산 집행 부진	427
1-3. 당초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등	428
1-4.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428
1-5. 건설공사 형식·주관사 변경으로 인한 집행 부진 등	429
2. 토지매입비 예산의 실집행 부진 및 집행상 문제점(기반시설국)	430



CONTENTS

- 3.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적기 완공을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공공건축추진단) 431
 - 3-1.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A) 건립사업의 안전조치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431
 - 3-2. 건립 지연에 따른 국회 시정조치요구 위반 등 431

[개별 사업 분석]

- 1. 복합민원센터 건립사업 불용 및 사업목적 변경 등(공공건축추진단) 432
- 2. 경찰서 건립사업의 전액 불용 문제(공공건축추진단) 432
- 3. 지식산업센터 건립 자원사업의 추진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 부진 등(공공건축추진단) · 433
- 4. 아트센터 건립사업의 과도한 사업 지연 문제(공공건축추진단) 433

Ⅲ. 새만금개발청 / 434

[개별 사업 분석]

- 1.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 방식 개선 필요(기획조정관) · 434
- 2.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개발사업국) 434

제15장 | 여성가족위원회

I. 여성가족부 / 437

[주요 현안 분석]

- 1. 학교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437
- 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가족정책관) 437



[개별 사업 분석]

1. 구로가족센터 건립 예산 2회계연도 초과이월 우려(가족정책관) 438
2. 다누리콜센터 위탁사업비 예산 초과 발주(가족정책관) 438
3. 잉여금을 고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예산 편성 필요(여성정책국) 439

제 1 부
거시 · 총량 분석 등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평가】

1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액은 371.8조원으로, 당초 본예산 382.4조원은 물론 세입경정을 실시한 추경예산 377.7조원에 비해서도 5.8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15회계연도 총지출 결산액은 372.0조원으로, 추경예산 384.7조원 대비 12.7조원 적었으며, 당초 본예산 375.4조원에 미치지 못하였음

나. 세입·세출

- 2015회계연도 총세입은 328.1조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0.1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7조원이 발생하였고,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5.9조원)을 제외한 세잉여금은 2.8조원이 발생하였음

다. 기금

-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516.4조원으로 전년도의 515.7조원보다 0.1% 증가하였고, 기금운용실적 총액은 운용계획보다 66.9조원 많은 583.2조원으로 전년(537.2조원) 대비 8.6% 증가하였음

라. 예비비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3조 1,633억원(일반회계 3조 1,564억원, 특별회계 6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는 예산액의 52.2%인 1조 6,49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억원이고, 불용액은 1조 4,959억원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거시·총량 분석」 pp.1~5.

2

2015년도 정부 중점 투자과제 분석

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3대 중점 투자과제로서 ① 경제 살리기, ② 안전 만들기, ③ 희망 나누기를 제시하고 과제별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음
 - 또한, 2015년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메르스 대응·가뭄 및 장마대책·서민생활 안정·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

나. 경제 살리기

- 「경제 살리기」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주요 정책사업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업 R&D 지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사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지원을 실시할 필요
 -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정책은 경기침체 대응에 기여하였으나, 지원대상 선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한계기업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청년·중장년의 취업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과도한 계획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산액(408억원) 대부분이 집행되었으나,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유지라는 사업목적에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
 - 「보건제품·의료서비스 펀드」사업은 국내 의료·제약업계의 해외투자를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까지 조성 실적 미흡

다. 안전 만들기

- 「안전 만들기」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주요 정책사업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안전설비투자 지원」사업은 2015년 1.66조원의 안전설비투자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여 계획을 초과달성하였으나,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에까지 지원을 과다하게 확대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정비할 필요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지원실적이 부진한 문제 발생

라. 희망 나누기

- 「희망 나누기」는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 기초연금 본격 시행, 맞춤형 개별급여 정착,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주요 정책사업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사업이 신설되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직·재창업에 기여하였으나, 사업준비가 부족하여 지원실적이 저조
 - 「정규직 전환 지원금」사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재설계를 검토할 필요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의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보조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거시·총량 분석」 pp.6~11.

3

재정건전성 분석

가. 재정수지

□ 2015년 재정수지 현황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0.2조원 적자
 - －추경 대비 6.8조원 개선된 것이나 본예산 대비로는 7.2조원, 전년 대비로는 8.7조원 악화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8.0조원 적자
 - －추경 대비 8.6조원 개선된 것이나 본예산 대비로는 4.6조원, 전년 대비로는 8.4조원 악화
- (악화 원인) 총수입 증가폭(15.4조원)보다 총지출 증가폭(24.1조원)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

□ 재정수지 연도별 추이(1996년 이후)

-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IMF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1999년(-7, -18.8, -13.1)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17.6)을 제외하고는 2015년이 유일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나. 국가채무

□ 2015년말 국가채무 현황

- 2015년말 국가채무는 590.5조원으로 2014년말에 비해 57.3조원(10.7%)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율은 2.0%p 증가(35.9%→37.9%)
- (증가 원인) 일반회계 적자보전(39.6조원)을 위한 국채 증가(53.5조원)

□ 국가채무 연도별 추이(2006년 이후)

- 2015년 국가채무 590.5조원은 2006년 국가채무 282.7조원에 비해 307.8조원 증가(연평균 8.5%)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 29.3%에서 2015년 37.9%로 8.6%p 높아짐
 - －국가채무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 최근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 －2015년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가 329.8조원, 금융성 채무가 260.6조원으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55.9%, 금융성채무의 비중이 44.1%(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 증가에 따른 것
 -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은 2006년 48.9조원에서 2015년 240.1조원으로 4.9배가 되었으며, 국가채무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6년 17.3%에서 2015년 40.7%로 증가
 -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의 전년 대비 증가폭 39.6조원은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이 처음 발생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것

[참 조] 「2015회계연도 거시·총량 분석」 pp.12~17.

【중점 분석】

1

연례적 집행 부진

가. 현 황

-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은 전(全)부처의 주요 사업 중 최근 4년간(2012~2015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반면 2015년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정의
- 각 부처 사업 중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은 통일부 등 23개 부처의 113개 사업으로, 2015년도 총 예산현액은 4조 1,415억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0.7%
 - 2012~2015년 각 연도 기준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률(47.5%) 측면에서는 가장 양호하나, 사업 수는 가장 많음
- 각 부처 보조사업 중 연례적 실행 부진사업은 국토교통부 등 11개 부처의 74개 사업으로, 2015년도 총 예산현액은 3조 1,775억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1.7%

나. 분석의견

-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의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준비단계보다 집행단계의 사유가 많고, 집행단계 사유 중에서는 사업추진 지연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집행(실행 포함) 부진사업은 72.7%가 사업 집행단계에서 부진사유 발생
- 집행 부진사유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
 - 사업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지연 요인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필요
 - －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지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부진 발생
 - 보조사업비 교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 및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 － 국토교통부의 「동읍-봉강 국지도 건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형생태녹색관광」 사업은 2015년에 매칭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실행 부진
 - 예산안 심사 시 집행 부진 원인 해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 －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2016년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pp.18~31.

2

예산의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 현 황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262조 4,745억원 중 이용액은 1,968억원(0.07%), 전용액은 6,216억원(0.24%)이며 특별회계 65조 5,447억원 중 이용액은 1,114억원(0.17%), 전용액은 7,699억원(1.17%)임
- 2015회계연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130조 7,684억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의 5.64%에 해당하는 7조 3,716억원이 순증함

나. 분석의견

- 이용·전용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및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발생함
 - 기상청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해양수산부 「해상원격의료」 시범사업, 경찰청 토지매입비 집행은 이용·전용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함
- 이용·전용 범위 및 절차 상 문제가 있는 사례가 발생함
 -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활동 지원을 위해 「해양사고예방활동 지원」 사업에서 전용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
 -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처 세종청사이전」 사업이 재난관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동 사업을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신설하여 동일 프로그램에 있는 사업에서 전용
- 예산 과다·과소편성 후 이용·전용을 통해 집행한 사례가 발생함
 - 국가보훈처 「보훈병원진료」, 미래창조과학부 「보험보상금」, 국민안전처 「지방관서 기본경비」,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은 예산 과소편성 후 이·전용
 - 대법원 「연수원 기본경비」는 예산 과다편성 후 전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불용이 과다한 사례가 발생함
 - 사학연금기금의 「퇴직수당급여」 및 「연금급여」, 외국환평형기금의 「해외 M&A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불용과다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pp.32~37.

3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가. 현 황

-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총지출을 기준으로 4조 9,192억 1,200만원을 감액
-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용·전용 등 제도를 사용하여 국회 예산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감액 사업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나타남
 -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금지

나. 분석의견

- 2015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시 감액된 사업을 정부가 감액 취지에 맞지 않게 증액하여 집행한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는 향후 이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사업은 1회성 공연 등 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취지에서 감액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전용을 통해 5억원을 증액하여 뮤지컬 아리랑의 제작비용과 1회 공연 관객 2,000명 무료초대를 지원하였음
 - 방위사업청의 「K56탄약운반장갑차」 사업은 2차 양산 착수금 9억원을 남기고 2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해 부족액 30억원을 자체 전용하였음
 - 국가보훈처의 「기본경비」는 보훈단체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징벌적 조치로 3,400만원 감액되었으나, 지방기관 명칭변경 등에 따라 다른 사업비에서 4억 3,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생활)(청주시 용두천)」 사업은 2억 2,900만원 감액된 20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환경부는 정상 추진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12억원을 다른 사업에서 증액 조정함.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어 집행액은 1백만원에 불과한 문제가 발생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대국민홍보)」 사업은 인구주택총조사 응답자 축소(20% 현장조사)에 따라 홍보비 예산 1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홍보를 위한 조달계약 수수료 부족 등으로 다른 사업에서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집행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pp.38~39.

4

신규 재정사업 결산

가. 현 황

- 201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은 35개 부처의 423개 사업, 5조 3,498억원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의 1.39%를 차지
 - 일반회계 사업이 209개, 3조 2,182억원이고, 특별회계 사업이 119개, 8,747억원이며, 기금 사업이 95개, 1조 2,569억원임
 -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액 규모가 큰 부처는 교육부(8개 사업, 1조 4,764억원), 보건복지부(17개 사업, 1조 1,550억원), 국토교통부(81개 사업, 6,656억원), 산업통상자원부(37개 사업, 4,256억원), 문화체육관광부(34개 사업, 3,971억원) 순으로,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신규 재정사업 예산액의 77.0%를 차지
- 신규 재정사업 예산액 5조 3,498억원의 77.4%인 4조 1,383억원이 집행됨
 - 집행률은 일반회계가 67.5%, 특별회계 90.8%, 기금이 93.1%로서, 평균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높음
 - 신규 재정사업이 5개 이상인 부처 중에서 보건복지부(103.1%), 행정자치부(99.3%), 법무부(96.9%)는 집행률이 높은 반면, 고용노동부(14.9%), 기획재정부(38.0%), 교육부(41.9%)는 집행률이 저조

나. 분석의견

- 집행실적 부진
 - 집행실적 부진은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찰서 건립」사업은 세종시 내 경찰서 건립의 시급성을 이유로 직제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제협의 결과 반영되지 않아 전액 불용
 - －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건립」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2015년 교부액 50억원 전액을 이월하여 2015년도 예산의 2회계연도 초과이월이 우려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 유사한 내용을 분산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데, 2015년 수급자 133명이 중복됨
 - 법무부의 「아동인권증진」사업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비, 기념품비 등을 집행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차별화 노력 필요

□ 사업계획 또는 사전검토 미흡

- 예산이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 사전검토를 충실히 하고, 사업 수행의 전제가 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은 예산안 편성 전에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후 실시한 BPR·ISP결과로 계획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 예산 68억 5,600만원 전액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로 전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2014년 내에 수립할 계획이었던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이 지연되어 예산액 15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함
 -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중복, 취업유인 및 장기 근속 유도 효과 미미 등으로 2015년에만 추진하고 이후 폐지함.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도 신규사업인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을 2년만 실시하고 성과저조로 폐지한 바 있음

□ 성과 부진

- 신규 재정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운영방식이 정착되지 않아 계속사업보다 성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성과를 제고해나갈 필요
 - 보건복지부의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은 음압병상 설치를 위하여 보조금 269억 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2015년말까지 음압병상을 설치한 병원은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업공감원스톱」사업은 이용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이용실적이 적고 전체 이용실적(2016년 3월 기준) 중 전문 기술상담 실적은 18.2%에 불과하므로, 오프라인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전문 기술상담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pp.40~46.

5

추가경정예산사업

가. 현 황

- 메르스·가뭄 등의 여파로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활력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¹⁾의 규모(총수입·총지출 기준)는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4조원, 메르스 및 가뭄 대응 등을 위한 세출확대 6.2조원 등 11.6조원임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외에 정부 내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3.1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할 계획을 세움
-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148개 사업에 6조 1,564억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계획현액)은 51조 9,724억원이며, 이 중 48조 7,444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3.8%임

나. 분석의견

-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미만으로 부진함
 - 국토교통부의 「대구사이언스 국가산단 진입도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원이 추가된 31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정부진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대비 65.3%에 해당하는 207억 5,3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 국민안전처의 「중앙119 구조본부 출동장비 등 확충 및 운영」사업은 종합훈련탑 신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해당 공사의 계약이 12월 31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비가 전액 이월되었음
 - 고용노동부의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은 6,000명의 청년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반영된 사업이나, 실제 채용자는 157명에 불과하여 추가경정예산 123억 3,000만원 중 18억 700만원만 집행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13개 사업은 보조사업자 등의 실집행률이 70%미만으로 부진함
 - 국토교통부의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50억원이 증액된 5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20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0억원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5.3%에 불과한 39억 7,100만원만 집행하였음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기금의 사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

- 보건복지부의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234억원), 254개 보건소에 구급차 공급(186억 3,600만원) 등을 위해 1,645억 1,5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7.4% 수준인 780억 4,800만원이었음
 -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어느 병원 또는 보건소에 어떤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병원들이 이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고, 보건소 구급차 공급은 254개 보건소 중 81개 보건소만이 예산을 집행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메르스로 침체된 영세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보다 관람객 수요가 많지 않아 2015년 실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4.5% 수준인 193억 4,100만원이었음
-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6개의 사업은 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었거나, 계획보다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은 간호인력 취업 지원(20억원) 등을 위하여 70억원이 추가된 80억 9,5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유휴간호사 480명 등 총 720명에게 재취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참여한 간호사는 495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는 125명에 불과하였음
 -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은 취업 지원 목표를 당초 3만 5,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11억 2,800만원이 추가된 1,773억 8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고용노동부가 실제 지원한 인력은 목표 대비 73.4%에 불과한 3만 4,396명 수준이었음
 - 국토교통부의 「대청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27.5km의 관로 매설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150억원이 추가된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관로 매설 실적은 목표 대비 78.9%에 불과한 21.7km 수준이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pp.47~55.

6

수시배정사업

가. 현 황

- 수시배정이란 기획재정부가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
 - 2015년에는 29개 부처, 274개 사업이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

나. 분석의견

- 국회중액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 2015년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 중액 사업은 149개 사업으로, 전체 수시배정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 수 기준으로 54.4%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2개 증가한 규모
 - 국회중액 사업을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기준 미비
 -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사업 ‘선정’ 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된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배정’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집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 예산 배정을 신청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예산 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수시배정에 대한 국회통제 장치 부재
 - 수시배정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사업의 지정여부, 지정사유, 규모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 예를 들어, 「국가재정법」에 수시배정사업 지정 및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pp.56~62.

7

예비비

가. 현황

- 예비비는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계상되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
-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조 1,63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조 6,491억원은 사용, 182억원은 이월되었으며 1조 6,491억원이 불용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69억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됨
 -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총 25개 중앙관서에서 사용되었고, 지출결정액은 1조 6,853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6,491억 4,400만원 수준
 - 예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5,094억 3,900만원)이며, 기획재정부(4,579억 600만원), 법무부(3,057억 6,000만원), 보건복지부(1,107억 6,000만원) 순

나. 분석의견

-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집행 사례 발생
 - 예비비 편성을 위해서는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인사혁신처의 「정책연구개발(R&D)」사업, 고용노동부의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통일부 등의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 등은 예비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예비비 집행과정의 목적외 사용, 이월, 이·전용 등 발생
 -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이·전용할 수 없으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간협력기반조성」과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지원」은 목적외 사용으로 보이며, 국민안전처의 「수색구조역량강화」와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는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선거관리」, 법무부의 특별감찰관실의 예비비는 전용이 발생하였음
-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등에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
 -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 「형사보상」은 연례적 예비비 사용

[참 조] 「2015회계연도 거시·총량분석」, pp.63~70.

【시정요구사항】

가. 현 황

- 국회는 2015년 9월 8일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시정요구 1,812건, 부대의견 25건을 채택하고, 감사원에 4건의 감사요구를 하였음
- 정부는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 2014회계연도 시정요구 1,812건에 대하여 1,624건(89.6%)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88건(10.4%)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부대의견 25건에 대해 21건(84%)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4건(16%)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함
- 감사원은 4건의 감사요구에 대해 감사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으나, 이 중 3건은 국회법에서 정한 시한(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2012회계연도 또는 2013회계연도 결산의결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사항은 200건이고, 이 중 62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반복 시정요구는 2010회계연도 결산의결시 153건에서 2014회계연도 200건으로 증가함
－ 반복적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기존 시정요구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므로 정부는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 시정요구 38건과 부대의견 2건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조치결과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1,215건 중 29건과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1,541건 중 69건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전년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만 보고하고 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제 2 부
위원회별 분석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사업 지연 (관리국 · 의정연수원)

가. 현 황

- 국회는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의 연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강원도 고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시설비 11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사업이 목표보다 지연되고 있음
 - 2015년 계획현액 170억 3,400만원 중 68.5%만 집행되었으며, 공사진척도는 47.34%로 목표 64.29% 대비 저조함
- 기존 강화 연수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성에 국회 의정연수원이 완공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강화 연수원의 역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pp.6~7.

2

국회규칙 제정을 전제로 한 국민감사청구예산 편성 및 타사업 집행 (감사관실)

가. 현 황

- 국회는 국민감사청구 지원을 위해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는 국민감사청구 관련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못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타 사업에 사용하였음
 - 국회규칙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후 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저촉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p.8.

II 국가인권위원회

1 청사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관련 재정 법령 준수 필요(운영지원과)

가. 현 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청사를 이전하였으며, 이를 위해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 및 세목조정하여 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사 이전과정에서 반환받은 기존청사(무교동 청사)의 임차보증금과 새로 지불한 신청사(저동 청사)의 임차보증금을 상계처리하였음
 - 반환받은 기존청사의 임차보증금으로 신청사의 임차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p.15.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통)

1-1.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개선 필요(법무실, 검찰국)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집행
 -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법무실 소관)에서 예산액 400억원에 전용액 4억 3,400만원, 예비비 2,607억 8,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012억 2,200만원 전액 집행
 - － 국가배상금은 최근 5년간 예비비 사용액 중 최고치 기록
 - 「형사보상」 사업(검찰국 소관)에서는 예산액 200억원에 이용액 52억원, 예비비 277억 7,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529억 7,500만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예산 과소 편성으로 예비비 집행과 이·전용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국가재정법」 제22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
 - 법무부는 적정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를 신청하여 지급하는 경우, 절차상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국가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더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1-2. 특별감찰관 예비비 이월 개선 필요 (특별감찰관)

가. 현 황

- 2015. 3. 27. 특별감찰관(차관급)이 임명됨에 따라 2015년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운영
 - 23억 8,200만원(인건비 4억 3,300만원, 기본경비 2억 5,700만원, 특별감찰활동 사업비 16억 9,200만원) 중 21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은 이월, 1억 9,600만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특별감찰관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당초 예비비 신청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공사비(칸막이 설치 등) 용도로 요구한 예비비 2억 7,600만원 중 4,400만원을 홈페이지 구축용역으로 전용 후 4,2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
 - 예비비를 본래 신청목적과 달리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미부합

1-3. 교도소 수용인원 증가의 대책 마련 필요 (교정본부)

가. 현 황

- 교도소 수용자의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용관리」 사업 실시
 - 예산액은 1,047억 4,7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액 133억 9,800만원 및 예비비 34억 6,4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216억 900만원 중 1,215억 8,300만원 집행(예산액 대비 116%)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 초과집행이 발생하므로 수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인원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015년 말 수용인원은 54,667명으로 예산상 계획인원 48,000명 대비 13.9% 초과(연평균 약 3,000명의 증가세)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25~32.

2 몰수금·추징금 징수 노력 강화 등 (검찰국)

2-1. 미납 추징금 징수 노력 필요

가. 현 황

- 법무부는 2015년 몰수금 및 추징금 세입예산으로 1,688억 3,900만원 계획
 - 1,171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69.4% 수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5년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추징금 조정액 대비 집행실적 저조
 - 2011년 0.36%, 2012년 0.57%, 2013년 0.43%, 2014년 0.37%, 2015년 0.38%
 - 추징금의 국고 환수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2.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 개선 필요

가. 현 황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 예산액 107억 2,100만원 중 96억 3,400만원 집행
 - 내역사업으로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를 위한 보상금(민간인 대상) 및 포상금(공무원 등 대상) 제도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편성한 7억 7,700만원 중 2,330만원(3.0%) 집행
 -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포상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이 우수 검찰청에 대한 포상금 3,850만원 집행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33~36.

【개별 사업 분석】

1

법조협회의 정부청사 사무실 사용료 수납 필요 (법무실)

가. 현 황

- 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법무부·검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사법연수생 등 2만 5,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회로서 1949년 설립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조협회는 정부과천청사 112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 「국유재산법」 제32조를 준수하여 정부과천청사 사용에 따른 적정 사용료 납부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37.

2

법조윤리협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 등 (법무실)

가. 현 황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에서 ‘마을변호사 운영(예산액 1억 4,0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지원(예산액 4억 1,500만원)’, ‘법조윤리협회 지원(예산액 1억 5,500만원)’ 등 수행
 - ‘법조윤리협회 지원’ 예산액 1억 5,500만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조윤리협회의 위원 및 간사 구성 다양화를 통한 조사권 및 독립성 강화 필요
 - 위원 9명 중 법학과 교수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
 - 간사는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
 - － 법조윤리협회가 대부분 전직 판사이거나 검사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수집·보관·제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공정성 저해 우려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38~39.

3

아이로 시스템(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고도화 예산 투입 후 서비스 중단 (법무실)

가. 현 황

- 법무부는 「민상사 입법지원 선진화(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아이로(i-law)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 2015년 동 사업 예산액 4억 9,200만원 중 아이로 시스템 유지보수 1억원, 시스템 고도화 예산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각각 9,700만원, 2억 3,5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보시스템의 향후 활용계획 등 장기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예산 편성·운용 필요
 - 2015년 아이로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16년 예산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2015. 12. 28.)하여 고도화 예산 낭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40~41.

4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 (검찰국)

가. 현 황

-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을 추진
 - 예산현액 366억 5,000만원 중 365억 3,100만원 집행
 - － 이 중 전국 64개 검찰청사의 시설 및 청소 용역 등 청사관리용역 예산으로 145억 8,1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 사업에서 10억원을 전용(증)하고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항목에서 9억 8,372만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165억 6,504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인건비의 최저임금(시급 5,58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시급 8,019원) 적용 필요
 - 검찰청 청소용역원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미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42~43.

5

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목표 달성 저조 (검찰국, 교정본부 등)

가. 현 황

- 법무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설치 필요
 - 2014년 50%, 2015년 60%, 2017년 80%, 2020년 100% 목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기준 법무부의 LED 조명 보급률은 평균 32.6%로 목표치 60%에 미달
 - 검찰 소속기관 및 교정시설의 평균 LED 조명 보급률은 26.8%, 30.1%로 평균 미만
 - 정부 시책에 맞추어 조명 교체를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LED 조명 보급목표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44~45.

6

아동인권 증진 사업 운영의 내실화 필요 (인권국)

가. 현 황

- 법무행정 분야에서 아동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인권증진」 사업을 2015년 신규 편성
 - 2015년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99.4%인 1억 7,9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타 부처 홍보사업 및 정책연구용역 사업과의 지속적인 차별화 노력 필요
 - ‘아동인권’ 영역에서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지속 제기
- 향후 사이버강좌 제작은 법무연수원 사업비 활용 필요
 - ‘아동학대 범죄 수사실무 사이버강좌 제작’에 600만원 집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46~48.

7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사업 계획 부실 (인권국)

가. 현 황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개편」 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 2015년 계획액인 민간자본보조(320-07목) 30억 800만원 전액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부되었으나, 9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억 5,1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안 요구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보조금의 68.2%를 이월
 -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49.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적정예산 반영 및 집행방식 변경 검토 필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가. 현 황

- 법무부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사업을 운영
 - 2015년 예산액 57억 3,500만원 중 99.7%에 해당하는 57억 1,500만원 집행
 - － 예산액의 대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 50억 4,900만원으로, 보조금 전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기관에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교육 수요 증가로 강사 인건비 부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여성가족부 등과 프로그램 중복 여부를 조사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50~51.

9

‘세계인의 날’ 행사비 정산의 외부 위탁 지양 필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가. 현 황

-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사업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11억 9,600만원),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9억 3,500만원) 등의 내역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 39억 6,700만원 중 33억 5,500만원(84.6%)을 집행
 -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총 7곳과 외국인장기자랑 등 위탁용역(계약액 2억 200만원)을 실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산업무의 외부 위탁을 자제할 필요
 - 위탁용역(계약액 1억 2,000만원) 사후원가 계산을 위하여 (사)감우회에 사후원가 계산업무를 위탁(2015년 5~9월, 500만원)하였으나, 원가정산 위탁사업비(500만원)가 위탁정산에 따른 행사비 절감 총액(766,716원)을 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52.

II

법제처

【주요 현안 분석】

1

대통령령 등 국회제출 상황 보고 필요 (기획조정관)

가. 현 황

- 정부입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운영 경비 18억 2,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제처가 대통령령 등 국회제출상황 종합 관리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58~59.

【개별 사업 분석】

1

법제교육센터 민간교육 실시의 과제 (법제교육과)

가. 현 황

- ‘법제교육센터’에서 2015년에 비공무원 1,352명 교육실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령에 부합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비공무원 대상 법제교육과정 교육비용 징수 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60~61.

III

감사원

【주요 현안 분석】

1

조직 확대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 (운영지원과)

가. 현 황

- 감사원은 기존의 지방행정감사국을 지방행정 감사 1, 2국으로 개편하고 2016년 1월 부터 이를 시행(정원 기준 45명 증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6년부터 적용된 지방행정감사국 조직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5년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 필요
 -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68~69.

2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수정을 고려할 필요 (첨단감사지원단)

가. 현 황

-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이란 감사원이 수감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감사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연차별 추진 계획 수정 필요
 - 2015년 완료 예정이었던 지방재정 자료 수집·분석시스템 개발을 2015년 11월 계약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70~71.

IV

대법원

【주요 현안 분석】

1 국선번호료 지급 연체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정예산 편성 필요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번호료 지원 사업을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선번호료 지급 연체 발생
 -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액은 294억원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건비 등에서 42억원을 전용
- 국선번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 연체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79~81.

【개별 사업 분석】

1

연수원 기본경비 집행률 감소 및 타 사업으로의 전용 반복 개선 필요 (사법연수원)

가. 현 황

- 연수원 기본경비는 사법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액 36억원 중 31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타 사업으로의 전용규모는 매년 증가
- 집행률 감소 추세와 사법연수생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82~83.

2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연구개발비의 과다한 수의계약 개선 필요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대법원은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에서 집행한 연구개발과제 25건 중 17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의 연구개발은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84~85.

3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적정예산 편성 필요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제출하려면, 신청자 등은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
 - 면허료 및 수수료는 인지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납한 것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3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의 수납실적이 저조하며, 매년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 2015년 수납률은 69.2%에 불과: 예산액 4,207억원 중 수납액은 2,911억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86.

4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국민참여재판지원 사업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법정설치, 배심원 경비 지원 등을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
 - 대법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시설비를 일반법정 리모델링 및 소년법정 증설에 집행
 - 이는 정당한 전용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
- 철저한 사전 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87.

제3장

정무위원회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요 현안 분석】

1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가. 현 황

-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요인과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환경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의 중요성 강조
 - 환경부가 주관기관으로서 위해성평가 및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환경보건 관련 업무 수행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일부 업무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생명보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환경성질환·원인미상 질환 등 보건의료와 관련있는 환경보건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관점에서 원인미상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고 대응할 필요
 - 보건복지부가 환경보건 업무를 수행하면 즉시 의료기관과 협조할 수 있어 시간적 효율성이 환경부가 환경보건 업무를 할 때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에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업무를 이관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
- 국무조정실은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의 총괄부처로서 환경보건 업무의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을 지원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p.7~9.

【개별 사업 분석】

1

연구개발비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필요 (공통)

가. 현 황

- 국무조정실은 18개 세부사업에서 총 24억 1,500만원의 연구개발비 집행
 - 예산현액(28억 2,6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5.0%(정보화 사업 제외시 80.5%)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계획적인 예산 편성 필요
 -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57.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69.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61.8%), 중동국부펀드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지원사업(61.3%) 등의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저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0~12.

2

중요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강화 및 중요규제 기준의 법제화 필요 (규제조정실)

가. 현 황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안에 대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규제를 심사
 - － 2015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024건의 신설·강화 규제안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9.4%에 해당하는 96건을 중요규제로 결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요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서의 사전검토를 보다 강화할 필요
 - 신설·강화 규제안에 대해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는 2015년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완
 - － 2015년 총 96건의 중요규제 중 39건에 대해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3~15.

II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정부부처의 콜센터 통합운영 내실화 필요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가. 현 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부부처의 콜센터(2015년 12월 기준으로 41개 부처에 96개)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단일 대표번호(110번)로 통합하여 운영
 - 1단계 사업으로 2014년에 4개 부처(국민권익위원회,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통합
 - 2단계 사업으로 2015년에 4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통합, 2016년에 3개 부처(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통합할 계획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운영” 대상 콜센터를 보다 확대할 필요
 - 각 부처 콜센터마다 별개의 번호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기존 콜센터와 콜번호를 폐지하는 통합운영을 보다 확대할 필요
 - － 통합운영은 병행운영과 달리 기존 콜센터와 콜번호 모두 폐지
 - － 병행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침해신고번호(1398)와 교육부의 민원콜센터(6222-6060) 통합운영 필요
-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전문성 등을 평가할 필요
 - 통합 대상 콜센터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합운영이나 병행운영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한 평가 수행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22~24.

2

민원서비스 미흡 부처의 서비스 개선 필요 (권익개선정책국)

가. 현 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
 - 부처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2013년의 경우 8개, 2014년 3개, 2015년 9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부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처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보다 강화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25~26.

【개별 사업 분석】

1

타부처 외국어 민원에 대한 번역 지원 서비스의 사업화 및 예산 확보 필요 (권익개선정책국)

가. 현 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 창구로 접수된 외국어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처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접수 및 처리 단계에서 번역을 지원
 - 2015년에 접수된 외국어 민원은 1,370건으로 2014년의 912건에 비해 50.2%, 번역료 지출은 3,144만원으로 2014년의 964만원에 비해 226.1% 증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어 민원에 대한 번역 지원 서비스를 현행처럼 내역 구분 없이 국민신문고운영 사업 예산(일반수용비)으로 집행하기보다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27~28.

III

국가보훈처

【주요 현안 분석】

1

보훈심사 및 보상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통)

1-1. 보훈급여금 사업관리 강화 필요(공통)

가. 현 황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수시보상금 전체를 의미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적정예산편성을 통해 이·전용을 최소화 할 필요
 - 10종류의 보훈급여금 중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6.25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 재해보상금, 영구귀국정착금 등 6개의 사업에서 이·전용 및 내역 조정이 발생
- 과오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금금의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의 낮은 수납률을 보임

1-2. 신고포상금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필요(보상정책국)

가. 현 황

- 「등록관리」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신고포상금은 2013년에 처음 신설되어 예산으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고, 2014년에도 8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등 실적 저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p.36~41.

2

88골프장 매각 및 운영 방안의 개선 필요 (공통)

가. 현 황

- 88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기타재산수입」, 「골프장위탁운영」, 「골프장시설투자」, 「골프장사업운영」,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8골프장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수립
 - 2011년 8월 이후 매각 공고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역시 2009년 실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재평가되지 않아 골프장에 대한 평가액 역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
- 골프장 매각과 운영수입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규모에 대한 왜곡이 발생
 - 「기타재산수입」내에 골프장 매각 대금을 계상함과 동시에 골프장 운영수입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하고 있어 보훈기금의 기타재산수입이 과다 계상됨
 - 지출사업에서도 「여유자금운용」에 골프장 매각대금을 반영한 계획액 편성과 함께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사업도 여전히 추진 중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42~43.

【개별 사업 분석】

1 보훈병원진료 과소예산편성의 문제 (복지증진국)

가. 현 황

- 「보훈병원진료」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병원 진료비등을 지원하는 사업
 - 2015년 예산으로 3,16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진료비 부족에 의해 123억원이 이용되어 예산현액은 3,287억 7,700만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편성과 집행 지양 필요
 - 보훈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의 전전년도 부족분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급
- 보훈병원진료 예산의 과소 편성 시정 필요
 - 보훈병원진료비의 부족으로 매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발생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p.44~46.

2 보훈단체 회관 매입 지원의 기준 마련 필요 (복지증진국)

가. 현 황

- 「고엽제 단체 지원」은 고엽제관련자의 권익도모 및 고엽제 단체의 활동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체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회관매입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할 필요
 - 국가의 재정사업은 명확한 원칙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피지원단체의 재정여건, 지원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 비율 등을 설정하는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입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p.47~48.

3

독립운동관련행사 등 지원 예비비 요건 미흡 (보훈선양국)

가. 현 황

- 「독립운동관련행사등 지원」은 국내·외 독립기념행사를 추진 및 지원하는 사업
 - 광복 70년 기념사업의 신규 추진에 의해 예비비 34억 2,800만원이 배정되어 예산현액은 58억 1,700만원이며, 이 중 52억 3,200만원이 집행하고 5억 8,500만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비비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예비비 집행 시정 필요
 - 광복 70년 기념사업 추진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임
 -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큰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 사업 내용과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국회의 심사 및 의결을 받지 않는 점에서 문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49~50.

4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 집행실적 부진 (보훈선양국)

가. 현 황

- 「광복회관 재건축」은 노후된 광복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
 - 2015년 계획현액은 146억 2,400만원으로, 이 중 16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29억 9,100만원 이월, 300만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
 - 2014년 전액 이월에 이어 2015년에도 이월액이 2015년 계획액의 99%인 129억 9,100만원에 해당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12.5%에 불과
 - 공사계약은 2015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2016년 6월 현재 공정률은 3.8%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51.

5

보훈정책개발 수의계약 과다 문제 시정 필요 (기획조정관)

가. 현 황

- 「보훈정책개발」은 보훈교육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보훈정책을 개발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훈정책개발 사업 연구용역개발이 대다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
 - 연구용역개발 중 수의계약의 비중은 2013년 87.5%, 2014년 100%, 2015년 95.5%
 - 연구용역의 주제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준하는 보안상의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용역 수행업체가 소수가 아니므로 일반경쟁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p.52~54.

6

지방보훈회관 건립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시정 필요 (보상정책국)

가. 현 황

- 「지방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인 지방 보훈회관 건립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필요
 - 2015년도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실집행이 부진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여전히 사업이 지연된 주된 사유는 ‘부지선정 지연’이라는 점에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보조금 분할 교부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55.

IV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과징금 세입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과징금 환급액 축소 필요
(업무지원팀, 심판관리관실)**

가. 현 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의 2015년도 예산액은 6,532억 4,000만원이며, 3,284억 8,500만원 수납(50.3%)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과징금 세입 편성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
 - 세입 편성의 비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확성 미흡
 - 2015년도 과징금 세입 편성시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5,306억원)”을 기본으로 함
 - 2014년도 기준(“최근 3개년도 평균징수결정액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적용시 약 170억원, 2013년도 기준(“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수납액”) 적용시 1,347억원 정도 과다 추계
- 패소 등에 따른 과징금 환급 규모가 과다하므로 과징금 부과 전문성을 높여 그 규모를 축소할 필요(2015년도 환급액 3,572억원)
 - 과징금 부과 전문성을 높여 직권취소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환급하는 금액을 줄일 필요
- 과징금 환급 대상 사건과 환급금액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므로 주요 사건의 패소 등으로 환급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62~66.

【개별 사업 분석】

1

「행정소송수행」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 (심판관리관실)

가. 현 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부담
 - 「행정소송수행」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24억 8,300만원이나, 30억 2,500만원 집행(변호사 선임료 및 패소사건 비용부담을 위한 예비비 4억 9,500만원 등 포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도의 변호사 선임료 예산으로 2014년도의 변호사 선임료(106건, 5억 6,300만원)를 지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
- 변호사 선임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 일부(3억 5,000만원)를 타 사업(패소사건 비용부담)으로 전용한 것은 부적절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67~69.

2

「공정거래지원」사업의 분리 및 적정 성과지표 설정 필요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심판관리관실)

가. 현 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행정소송수행,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지원」사업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정거래지원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담당부서 등이 이질적인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수행 사업 등을 분리하여 편성하고 적정 성과지표(패소율 등) 설정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70~72.

V

금융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정책국)

1-1. 안전설비투자 지원대상 정비 필요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으며, 2015년도 예산은 800억원(산업은행 400억원, 기업은행 400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출자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설비투자 펀드의 목적이 ‘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이 아니라 ‘국민안전 관련업종의 생산활동 지원’에 편중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안전설비투자 공급실적이 저조하자, 2015년 1월 「안전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안전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함
 - 이에 따라 2015년 안전업종 지원 수요가 급증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지원된 1조 8,999억원 중 85.3%인 1조 6,201억원이 안전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남
-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에까지 지원을 과다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침에 규정된 안전업종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국민안전 증진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들이 안전업종으로 분류되어 동 펀드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떡류·빵류 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비디오 및 영상기기 제조업 등

1-2. 해운보증기금 자본금 형성 노력 필요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해양보증보험에 실시한 선출자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액 500억원 중 300억원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출자하였고, 200억원은 불용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충분한 자본금을 형성하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대한 출자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전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음
 - － 2015년에는 예산액 500억원 중 300억원만 출자되었고, 2016년도 예산액 400억원도 수시 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2016년 6월 현재까지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음
-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는 당초 예산 상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이 계획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 유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82~88.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개선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2-1. 기금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가. 현 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본금리 외에 추가적인 장려금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기금으로 설치된 것임
 - 저축장려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1/2씩 출연하여 재원을 부담하며, 2015년도 저축장려금 집행액은 988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환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전적으로 정부 재정 및 한국은행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재원의 성격과 지출사업의 성격 간 연계성이 부족함
 - 규모가 작고 정책사업이 1개에 불과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 일시자금 외 별도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원을 농어민에게 전달해주는 계정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물고 있음
 -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여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2-2. 정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장려금리 인하계획 수립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연 저축한도를 상향하고 장려금리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금의 정책목표·외부 금리환경 변화·저축 가입수요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재정지출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목적 하에 장려금리를 인하함
 - 저금리 환경을 감안하여 장려금리를 하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거와 동일한 재정지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적인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3. 가입기준 및 유형 분류체계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준은 가입 대상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농가·어가·축산업가 등 유형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가입자 내에서 일반 농어가와 저소득 농어가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장려금리를 적용함
 - 주요 구분기준으로 농가는 경지면적, 어가는 어선의 톤수, 축산업가는 가축별 사육규모를 각각 사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주요 가입 대상범위 및 일반농민과 저소득농민 유형 구분 기준은 30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대부분은 농가로서 법률이 제정된 1986년 이래 30년 간 경지면적 2ha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30년 전 설정한 경지면적 기준이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 일반 농가인지 저소득 농가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장려금리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나, 이를 구분하는 경지면적 1ha 기준에 대해서도 30년째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89~94.

3

자금세탁방지사업의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금융정보분석원)

가. 현 황

-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 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STR에 대한 상세분석을 실시함
 - 국세청·검찰 등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STR 및 CTR 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며, CTR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융기관에서 FIU에 제공하는 STR 건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밀한 STR 기준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외부에 제공되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금융기관에서 FIU에 제공한 STR은 62만 4천 건으로, 이 중 4.9%인 3만 1천 건에 대해서만 FIU가 상세분석을 실시
- 기관요청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실제 탈세 적발 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기관에 대한 개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매우 신중히 실시되어야 하므로, 정보 제공의 정당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필요
- CTR 정보의 통보유예 비율이 여전히 과다하며, 현행 6개월의 1차 통보유예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통보대상자 61,815명 중 법률에 따라 10일 이내에 통보를 실시한 경우는 5,960명(9.6%)에 불과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STR을 25년간 보존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보존기간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
 -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공소시효 중 최장기간(사형)인 25년 기준에 맞추어 보존기간을 설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95~100.

4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가. 현 황

- 201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11조 122억원, 기본재산은 2조 5,252억원으로, 운용배수는 4.4배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운용배수가 낮을 뿐 아니라 부실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으므로, 농특회계 전출 규모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운용배수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부실률은 2015년 1.7%로 신용보증기금(4.0%), 기술신용보증기금(4.2%) 등에 비해 매우 낮으나, 운용배수(4.4배)도 신용보증기금(9.4배), 기술신용보증기금(9.0배)에 비해 낮음

4-2. 주택신용보증기금

가. 현 황

- 2015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54조 2,867억원, 기본재산은 5조 1,028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0.6배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실률이 매우 낮은 수준(0.7%)이므로 추가적으로 운용배수를 높일 여지가 있음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나 주택구입 수요자에 비해 높은 출연료를 부담하므로, 출연료를 추가 인하 방안 검토 시 우선적으로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출연료를 인하가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연계되어야 하나 그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출연료를 인하가 시장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p.101~105.

5

공적자금상환기금 상환계획 개선 필요 (공적자금상환기금)

가. 현 황

-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르면, 상환대상 부실채권 규모는 총 97.2조원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49조원을 부담하고, 금융권에서 특별기여금으로 20조원을 부담하며, 부실채권 회수를 통해 28.2조원을 상환하는 것이 예정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정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필요한 일반회계전입금 총량을 재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을 규칙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소요될 정부 재정부담 규모를 명확히 산출한 후,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을 규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
 - 2013년 재정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부실채권 회수자금은 당초 계획을 10조원 이상 초과한 41.6조원이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정부 재정부담은 당초 예상했던 49조원보다 훨씬 적은 35.8~38.3조원 수준이 될 전망
 - 기획재정부는 부실채권 회수액이 계획보다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미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음
- 향후 부실채권 초과회수로 인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보고」는 부실채권 회수자금이 계획 대비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특별기여금 부담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금융권은 부실기업과 함께 부실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공동책임자인 동시에, 공적자금으로 인해 경영정상화의 혜택을 입은 수혜자이므로, 금융권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06~109.

6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성과평가 강화 필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자체연구 및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신용보증이 지원기업의 고용과 재무비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주기적인 외부 기관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실시한 자체평가 또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는 신용보증 공급이 기업의 고용창출, 매출증가, 영업이익 증가 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자체평가 또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는 수행주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규모 보증공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상 성과지표는 단 2개에 불과하므로, 정부 내 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상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설정된 성과지표는 ‘성장동력 확충 부문 보증공급’·‘일반보증 부실률’ 단 2개뿐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정보화 사업을 제외하면, ‘창조경제지원분야 신규공급’·‘기술보증사고율’ 2개에 불과
 - 기금 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다양한 계량지표에 의해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가의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에도 기금의 업무수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p.110~111.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행정인사과)

가. 현 황

-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2015년에 발생한 지출수요는 2015년 세입을 재원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국가재정법」 상 이월 절차를 거쳐야 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택금융공사는 2년 연속 연말에 대위변제금 부족액이 발생하자 이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 2015년 대위변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12월말 부족액이 발생하자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족분 330억원을 차년도 1월에 지급하였음
 - － 2014년에도 연말 대위변제금 부족이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98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부족액이 발생하여 이를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
- 금융위원회는 매년 월말 임차료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임차료 부족을 이유로 2014년 12월 임차료(1억 4,500만원)를 2015년도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고, 이로 인해 2015년 임차료가 재차 부족해지자 2015년 12월 임차료(1억 7,000만원)를 재차 2016년도 예산을 통해 지출하면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2016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임차료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12~113.

8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공통)

가. 현 황

-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의미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책기관별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객관적인 한계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은행 및 KDI 등 정책기관 간 한계기업 분류기준이 상이하여,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객관적인 한계기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 및 한계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저성장 및 경기불황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에 한계기업 보증잔액 비율이 급증하였고 최근 5년간 지원 한계기업 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
 - 한계기업 보증잔액은 2014년 5,657억원에서 2015년 7,55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보증잔액 중 한계기업 보증잔액 비율은 매년 평균 3.0%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 3.8%로 상승
 - 지원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는 2011년 299개에서 2015년 586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보증 초기에는 한계기업이 아니었으나 한계기업으로 신규 진입한 기업 수가 2011년 148개에서 2015년 370개로 2배 이상 증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p.114~115.

【개별 사업 분석】

1

비상임위원에 대한 조사활동비 지급의 문제점 (행정인사과)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2015년 4인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안전검토사례금 및 조사활동비 등 총 1억 500만원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지급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는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회의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100만원의 조사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 위반 소지가 있고 타 행정위원회에서 유사한 운영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편성지침은 “비상임위원회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명시하여 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율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른 행정위원회의 경우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조사활동비를 별도로 정액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17~118.

2

하계휴가 지원 혜택 과다 (행정인사과)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2015년 직원 하계휴가 지원을 위해 민간 숙박업체 객실 4~5개를 임차하여 36명의 직원에게 1인당 2박 3일 숙박료(평균 48만원)를 지원하였음(1,752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 예산으로 매년 동일한 민간 숙박업체를 지정하여 하계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직원 자부담 없이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여 혜택이 과도함
- 숙박 여부에 대한 증빙이 실시되지 않아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동 사업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19~120.

3

기술평가 신용대출 이차보전 사업예산 집행 상 문제점 (기술신용보증기금)

가. 현 황

- 「기술평가 신용대출 이차보전」사업의 2015년도 계획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기금운용 계획변경을 통하여 60억원이 증액되어 이 중 9억원만 집행되었고 51억원이 불용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연중에 계획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음
- 이차보전비용 지급방식을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이 부진하였고, 당초 계획되지 않은 최저금리 제한조건이 부가되면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였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21~122.

4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부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가. 현 황

-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1억 1,800만원이 이용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억 1,200만원이 되었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7월에 활동이 종료될 한시조직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12개월분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음
 - 백서발간 계획 취소, 연구개발비 미집행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도 부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23~124.

5

구상권관리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신용보증기금)

가. 현 황

- 「구상권관리」사업의 2015년도 계획액은 1,078억원으로 이 중 750억원이 집행되었고 328억원이 불용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구상권관리 사업은 3년 연속 집행률이 60%대로 부진하였으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연례적 집행부진은 채권보전조치·소송비용·상각채권관리비·상각채권 회수위임비용의 집행부진에 기인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p.125~126.

6

비목의 용도에 맞지 않는 기본경비 예산집행 (행정인사과)

가. 현 황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는 운영비,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는 청소·보안용역비, 시설비 집행 시 비목을 예산집행지침 상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
 - 청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탁사업비(210-15)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하여 1억 1,100만원을 집행
 - 책상, 의자, 칸막이 등 기자실 물품 구입비용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430-01)가 아닌 시설비(420-03) 비목으로 집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p.127.

7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 산출근거 수정 필요 (행정인사과)

가. 현 황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15년도 예산액은 4억 5,2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100만원을 수납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과거 특정시점(2010~2012)의 평균 수입실적을 지속적으로 산출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최근 수입실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입실적의 평균이 아닌 2010~2012년 평균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4억 5,200만원 규모의 세입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 평균 수입실적으로 산출근거를 대체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부위원회 소관], p.128.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공통)

1-1. 예비비 편성요건과 정부 입법 홍보비 편성

가. 현 황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11억 2,000만원의 예비비를 지면광고·옥외광고·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홍보비로 편성하여 이 중 11억 1,931만원을 집행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는 정부 입법을 위한 대국민 홍보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국회의 법률안 처리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인 입법과정의 본질적인 성격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시급한 제정 필요성은 국회 내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보임

1-2. 예비비를 통한 조직 신설 예산 편성의 문제점

가. 현 황

- 조직 신설을 이유로 2015년 중 예비비가 편성·집행된 세부사업은 총 9개로, 19억 6,600만원이 배정되어 15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신설된 조직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재정기획국, 안전예산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등 4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직 신설 여부는 중장기 조직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나, 기획재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조직 신설 예산을 충당하였음
- 정부 내 조직 신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준비되어 예산안 편성과 연계되므로, 재정기획국의 신설이 준비가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신설 결정이 연말에 이루어져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1-3.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

가. 현 황

-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100억원)은 출연대상 및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2015년 100억원이 신규편성되어 전액 불용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예비재원은 수요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였음
-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은 사용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비비와 성격이 동일
-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위한 예비재원 편성은 국제금융기구 출연 시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 예산안 편성지침에 규정된 국제부담금 편성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제부담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0~17.

2 기금평가제도의 개선과제 (재정관리국)

가. 현 황

- 기금평가는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로 분류됨
 -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사업운영평가)와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자산운용평가)로 구분되며,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재원구조의 적정성·기금존치의 타당성을 평가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기가용자산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존치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는 중기가용자산평가의 결과(과다·적정·과소)만이 제시될 뿐,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음
- 자산운용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일정 비율의 하위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평가는 자산운용의 실적 수치 및 상대평가 등급만을 표로 제시할 뿐, 운용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경우에 별도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음
- 개별 기금의 연기금투자폴 위탁운용성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연기금투자폴 도입 시 소규모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 기금 여유자금과 통합하여 운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음
 - 단독 기금이 수익자로 설정된 통합펀드를 다수 기금이 참여하는 통합펀드로 개편하는 등 연기금 투자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8~21.

3

국제부담금 집행 시 환차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공통)

가. 현 황

- 2015년도 기획재정부의 국제부담금 예산은 「국제금융기구출연」 등 8개 세부사업에 1,235억원이 편성되어 1,132억원이 집행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의 국제부담금 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각 부처의 개별 사업부서에서 재량적으로 납부시기를 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환차손 예방을 위한 절차적 규정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임
 - 「국제금융기구출연」사업의 국제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환율이 고점에 이른 연말에 부담을 납부하여 환차손이 크게 발생한 사례가 발생함
 - 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환전 제도를 통해 고정환율로 환전을 실시하여 환차손 위험에서 벗어남에 따라, 국제부담금 납부 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각 부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부담금을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의 전문성 있는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환위험 예방확률을 높이고 국제부담금 집행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부담금 집행 시에는 환율 변동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환차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납부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 pp.22~24.

4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해외 M&A 대출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
(외국환평형기금)

가. 현 황

- 외국환평형기금은 2015년 9월 10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2조원 규모의 「해외 M&A 대출」사업을 신규추진하였음
 - 동 사업은 국내기업의 해외 M&A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0억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2016년 6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외 M&A를 위한 외화자금 대출 수요 예측이 미흡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한 1.2조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연중에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조치라 할 것이나, 연중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 국민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4년 4월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총액한도 \$150억 규모의 외화대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외화대출 사업은 여유자금 운용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임
 - － 또한 여유자금 항목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편성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에는 국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외화대출 사업은 규모가 각각 \$150억 및 \$50억으로 대규모이고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재정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자율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의 정률 한도뿐 아니라, 정액 한도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5~27.

5

대통령 자문기구 운영의 개선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청년위원회)

5-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사업의 2015년도 예산은 21억 9,100만원으로, 지원단은 이 중 1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전용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위탁사업비 예산의 절반이 불용되었으며, 회의개최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일반수용비 집행이 부진하였음

5-2. 자문기능에 충실한 청년위원회 운영 필요

가. 현 황

- 2015년도 「청년위원회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9억 3,500만원(전년도이월액 7,000만원) 중 44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년위원회가 자문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위탁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대통령 자문이나, 소액 규모의 행사성 사업 집행에 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위탁사업 실시 결과가 부처 간 협업과 대통령 자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성과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여 위탁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8~31.

6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체계 및 성과관리의 개선과제 (국유재산관리기금)

가. 현 황

- 201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는 25개 부처 총 9,783억원의 공용재산 취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8,375억원이 집행되어 85.6%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함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사업체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 경우에 따라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혼재되어 편성되는 문제가 있음
- 사업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함
 - 하나의 기금 내에 편성되어 있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성과를 각기 다른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통일된 성과관리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단위사업 내 모든 신축사업의 공정률을 합산하여 그 평균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사업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움
 - 공정률은 각각의 건축 건별로 당초 추진일정과 비교하여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지표이므로,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사업들과 일괄 합산하는 것은 과정지표를 설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32~35.

7

법정배분제도 개편 검토 필요 (복권기금)

가. 현 황

-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은 복권판매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기금에 배분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에는 10개 기관·기금 등에 총 5,392 억원이 배분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정배분사업에 장기간 동안 지속하여 복권판매수익금의 35%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가 영구적 보상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복권발행업무를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은 과열경쟁에 의한 사행성 조장과 투명하지 못한 복권수익금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책결정이었으며, 이들 기관들이 복권발행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영구히 복권판매수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정배분비율 가감제가 도입되었으나, 전체 기관에 대한 배분총량은 35%로 고정되어 있어 국가가 영구적 보상을 실시할 수 없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각 기금·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재원을 마련할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법정배분사업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12~113.

8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원구조 개선과제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현 황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수입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전입금이 2015년 7,66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81.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정부는 향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대규모 일반회계 전입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지속가능한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금융을 도입할 계획이나, 이를 위해서는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서의 전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개발금융」이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으로서 시장차입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금리로 개도국을 지원하되, 시장조달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차이는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의미함
 - 개발금융 지원방식은 완전한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방식은 부분적인 구속성 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비구속성 원조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개발금융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서의 전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39~40.

9

용자계정 정리 필요성 검토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현황

- 2015년 용자계정의 지출 규모는 2.0조원으로, 「총괄계정·차관계정으로 예수원금 및 이자상환(1.8조원)」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자계정 내 용자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379억원이 집행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용자사업 규모가 과소하여 용자계정 설치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용자사업은 소관부처 특별회계·기금 및 복권기금 등으로 이관이 가능해 보이므로, 용자계정의 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유사 제도가 다양하여 사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용자사업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2011년 8개 사업 1,011억원 규모(결산)의 용자사업은 2016년 2개 사업 177억원 규모(예산)로 급감
 - 2015년 지출의 90%가 타 계정에 대한 예수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구성되어 용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정 설치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을 정리하고, 소규모 잔여 용자사업을 타 재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용자사업은 소관부처의 특별회계·기금을 통해 수행이 가능하고, 회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적합한 재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41~43.

10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즉시 시행에 따른 예산과 집행 간 괴리 (예산실)

가. 현 황

-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현실에 맞게 숙박비 상한을 조정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실시한 결과, 2015년 1월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여비 숙박비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동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무원 여비규정이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않고 개정 즉시 시행되어 예산과 집행 간 괴리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2015년 1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숙박비 단가가 즉시 인상되었으나, 2015년도 예산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여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 발생
 - － 최근 5년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은 2차례 더 있었는데, 모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을 위한 부처 간 협의 시 개정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매년 예산안 편성 시마다 주기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공무원 여비규정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불규칙하게 개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여비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44~45.

11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현황 조사 및 관리 필요 (국유재산관리기금)

가. 현 황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손실과 국유재산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에 규정된 특례 목록만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운용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201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특례 목록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별표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국유재산특례 현황은 포함하지 않음
 - 개별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방만한 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개별 법률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유재산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실제 운용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46~47.

【개별 사업 분석】

1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의 준비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현 황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는 2015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1,000만의 차관을 공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014년 9월 동 융자사업의 신설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요구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110억원의 예산이 2015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마무리 단계에서 반영됨
- 그러나 2015년 독일재건은행(KfW)이 우리나라가 제안한 차관의 10배 이상 규모의 차관을 IFAD에 제안함에 따라, IFAD는 수출입은행과의 차관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어 예산 110억원이 전액 불용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양자 간 협정 체결없이 낙관적인 기대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 국제기구에 대한 차관 공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ODA 차관의 성격과 함께,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공여라는 점에서 국제부담금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가 개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ODA 차관을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의 공식적인 요청을 우리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사업으로 반영
 -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
 - 그런데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은 IFAD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고 IFAD와 우리 정부 간 차관공여를 실시하겠다는 공식 협정 또한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편성됨
- 기준환율에 맞지 않게 사업예산을 과다 편성함
 - 201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기준환율은 1,030원/\$이나, 동 사업은 \$1,100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7억원의 예산이 과다편성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48~49.

2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민간협력차관 전액 불용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현 황

- 「민간협력차관」사업은 개도국에 소재한 ODA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액 30억원이 전액 불용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는 사업수요를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민간협력차관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원대상이 전무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됨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면서 OECD DAC에서 규정하는 ODA 적격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요건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아 사업수요 부족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50~51.

3 추경 편성 시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대외경제국)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400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50억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현액 1,150억원이 전액 출자됨
 - 대출 목표는 1.25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었으며, 실제 2.0조원을 추가 공급하여 총 대출실적은 당초 목표를 상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출입은행의 대출실적이 추경 목표를 상회하였으나, 제조업 중심의 여신공급 계획과 달리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대기업의 수혜비율이 높았음
 - 제조업 부문은 추가공급 계획 1.15조원 중 0.97조원이 지원된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계획 0.1조원의 10배 이상인 1.01조원이 추가공급됨
 - 당초 계획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향유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52~54.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상 문제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가. 현 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사업은 2015년도 예산액 88억 4,5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73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안편성지침 규정과 달리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대규모 전용이 발생하였음
- 당초 계획과 달리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음
 - 예산안 편성 시에는 재정정보과가 사업을 담당하였으나, 동 사업이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신설되어 담당 조직이 변경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55~57.

5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금관리비 부담 전가의 문제점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현 황

-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령에 따라 위탁비용은 기금이 부담하여야 하나, 매년 약 30%의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용 부담이 수출입은행에 전가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법령을 준수하여 수출입은행 위탁비용을 실수요에 맞게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되, 수출입은행의 실지출비용의 집행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58~60.

6

기준환율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 및 집행 (국제금융협력국)

가. 현 황

-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사업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출연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예산 중 \$1,000만은 GCF 사업출연금이고 \$100만은 GCF 사무국 운영비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도 정부 예산편성 기준환율(1,030원/\$)을 위반하여 독자적인 기준환율(1,070원/\$)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 기준환율 적용 시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4억 4,000만원 과다편성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61.

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집행 상 문제점 (재정기획국)

가. 현 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위탁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9억 6,900만원 중 8억 900만원이 집행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매년 KDI와의 위탁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나, 연례적인 낙찰차액이 발생하므로 예산편성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2년 연속 국외여비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국외여비 예산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62~63.

8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명 및 소관 프로그램 변경 필요 (복권기금)

가. 현 황

-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은 복권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년 단위로 예탁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계획액 5,17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전출금이 아닌 예탁금이므로, 사업성격에 맞게 사업명을 수정하고 소관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것이므로 그 성격은 전출금이 아니라 예탁금이나, 타 기금에 전출을 실시하는 다른 법정배분사업들과 함께 「기금 간 거래(전출금, 8900)」라는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 편성되어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64~65.

II

국세청

【주요 현안 분석】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심사정책국)

가. 현 황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는 자영업자의 탈세적발 확률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
 -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예산은 11억 9,200만원이었으나 포상금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8억 9,600만원을 이용하여 총 20억 8,800만원을 집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가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72~74.

2

가산금, 과태료 등 수입 실적 제고 필요 (징세법무국)

가. 현 황

- 경상이전수입으로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의 제도를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산금을 비롯한 과태료·변상금 등 수입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매년 수입 실적 저조로 인하여 지적을 받고 있으나 실적 개선은 미미한 편
 - 과태료, 변상금, 가산금에 대한 수납률 저조는 수납자와 미수납자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 및 비용이 수반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75~76.

【개별 사업 분석】

1

압류재산공매 적정 예산편성 및 비목 변경 필요 (징세법무국)

가. 현 황

- 「압류재산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체납징수관리를 하는 사업
 - 2015년 예산으로 45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1,700만원을 이용하여 예산현액은 48억 9,300만원이며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
 -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3개의 내역사업에서 모두 내역변경 및 이·전용이 발생
-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기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과 내역 조정된 금액은 운영비(210목)로 지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77~78.

2

조세박물관 이전 비용에 대한 집행 관리 개선 필요 (징세법무국)

가. 현 황

- 「조세박물관 운영」은 조세관련 유물의 수집 및 전시를 하는 조세박물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조세박물관을 이전하였음
 - 2015년도 예산은 14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비에 해당하는 내역을 일반수용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
 - 조세박물관 이전 비용 중 건물, 공작물, 구축물 등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비에 해당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79~80.

3

탈세제보포상금 등의 제도개선 필요 (조사국)

가. 현 황

- 「조사반활동비」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등’을 운영
 - 탈세제보포상금 등은 탈세제보포상금과 차명계좌신고포상금으로 구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탈세제보포상금과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의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
 - 탈세제보포상금과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사이에 2년 연속 내역조정이 발생하고 있음
-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
 -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는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에 대해 그 규모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건당 100만원 지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81~82.

III

관세청

【주요 현안 분석】

1

수출입통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관지원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1-1.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통관지원국)

가. 현 황

-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는 수출입물품 통관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입가격공개품목 가격조사 사업의 취소는 사업 편성 당시 계획 수립의 미흡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수당이 여러 사업에서 집행되었으므로 이를 일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

1-2. FTA 이행지원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 사업 역할 분담 필요(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가. 현 황

- 「FTA이행지원」으로 “중소기업원산지관리지원” 및 “FTA 집행관리”사업을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원산지관리지원 사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사업과 지원내용이 유사하므로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의 사업은 대상이 동일하고, 그 방식이 컨설팅 및 영세업체에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보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88~93.

【개별 사업 분석】

1

기계기구매각대 과다 세입계상 시정 필요 (심사정책국)

가. 현 황

- 「기계기구매각대」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 차량, 보일러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기구의 매각에 따른 수입을 계상하는 사업
 - 2015년도 예산은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수납액은 800만원, 미수납액은 1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세청은 기계기구매각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
 - 기계기구매각대는 관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구를 매각하는 것으로써, 그 계획을 관세청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고, 기관외부의 예측할 수 없는 요소의 작용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전 계획 수립이 충분히 가능한 세입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94.

2

관세소송비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기획조정관)

가. 현 황

- 「관세행정관리」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원활한 관세행정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관세소송비용을 동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송패소 비용 증가로 인해 6억 2,200만원을 전용하여 6억 6,4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세청은 관세소송비용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
 - 매년 배상금은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95~96.

3 밀수단속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필요 (조사감시국)

가. 현 황

- 「밀수단속」은 수출입통관 시 밀수품에 대한 단속과 밀수신고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사이버 불법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관세청 웹사이트 내에 모니터링 민간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사이버감시단이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밀수단속 사업의 사이버감시단 운영예산 편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세관조사요원·사이버감시단 합동 워크숍’ 개최, ‘밀수방지 홍보 기념품 제작지원’ 비용 등으로 예산을 집행
 - 사이버감시단 운영지원 예산은 사이버감시단 운영에 미치는 효율성이 낮다고 보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97~98.

4 국제협력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정보협력국)

가. 현 황

- 「국제협력」은 국제 관세협력 활동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국제회의 개최지원 및 참가」, 「국제기구 전문가양성」 등을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협력 사업 중 국제기구 전문가양성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필요
 - 사업 내용이 주로 국제회의참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회의의 참석이 타 사업의 국외출장과의 차별성이 적어 보임
 - 사업을 목적에 맞는 성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기연수 또는 국제기구 전문가로 인증된 관세청 직원을 활용한 내부교육 등 사업 내용 변경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99~100.

5

면세점 대상 선정 및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검토 필요 (통관지원국)

가. 현 황

- 「면허료 및 수수료」는 보세구역 특허, 품목분류사전심사, 통계 및 증명서 등에 대한 수수료 수입은 수출입통관 시 밀수품에 대한 단속과 밀수신고 등을 수행하는 사업
 - 면허료 및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라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2015년 39억 1,000만원이 수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규진입 면세점 대상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현재 관세청 등 정부에서는 시내 면세점의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
 - 신규진입 면세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컨소시엄 형태의 면세점 활성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
-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및 부과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특허에 대한 발급수수료의 성격과 함께 면세점의 운영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약 40억원의 수수료 징수 규모는 매출 규모에 비해 미약한 편
 -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검토함에 있어서 면세점의 유형, 면세점 사업자의 규모, 면세점별 이익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01~103.

IV

조달청

【개별 사업 분석】

1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 (기획조정관)

가. 현 황

- 「지방조달행정 기본경비」는 지방청의 경상적 경비지출을 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노력 필요
 - 조달청 청사관리용역원의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시급 8,019원)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11~112.

2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비축물자 확보 방안 필요 (국제물자국)

가. 현 황

-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 회전자금은 수요물자사업자금과 비축물자사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보유형태는 비축원자재 재고, 외상매출금 및 현금 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14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에도 여전히 목표재고에 못 미치는 재고량 수준임
 - 원자재 시장의 안정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서 비축물자 확보 노력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13~114.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방식 개선 필요 (시설사업국)

가. 현 황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해 설계금액·설계도서 등의 적정성을 사전검토하고,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기획·설계·공사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는 사업
 - 2015년 예산현액은 26억 4,400만으로, 이 중 22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200만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은 일반수용비 편성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미흡
 -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자문 수요예측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문위원들의 현장답사 비용을 과도하게 사업계획에 포함
 - 기존의 업무와 디자인 자문위원의 업무 유사성에 대한 파악이 늦어 별도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수립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경우에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이 미흡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15~116.

V

통계청

【주요 현안 분석】

1

통계조사작성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공통)

가. 현 황

- 통계청이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총 58종으로 조사통계 41종, 가공통계 15종, 보고통계 2종임
 - 2015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경제총조사가 시행 중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조사 활성화에 따른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
 - 신뢰도 높은 인터넷조사를 위해 대면조사와는 다른 형식의 설문지 개발과 불편사항을 수렴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
 - － 설문지에 대한 이해가 대면조사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며 신뢰도 저하의 우려
 - － 일부 항목의 경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설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음
- 통계조사 결과 및 활용에서 국민의 체감도와외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통계조사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체감도와외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현실 반영도 증대 및 지역통계와의 연계 활성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현실에서 체감하는 물가와 괴리감을 느낀다는 언론보도 다수
 - － “생활업종 통계지도”의 경우 전국사업체 조사의 내용이 2014년 조사내용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현실과 다르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22~124.

【개별 사업 분석】

1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는 수입대체경비 시정 필요 (운영지원과)

가. 현 황

- 「수입대체경비」로 통계교육원 수입, 통계생산대행, 통계개발대행,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을 계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
 - 통계교육원 수입과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에서 연례적인 초과수납액이 발생
 - － 통계교육원 수입의 경우 교육과정, 인원 실적 및 시설 임대수입의 증가추세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및 지방통계생산 수요조사의 반영의 어려움 존재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25~127.

2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통계교육원)

가. 현 황

- 「통계전문 교육지원」은 국가 및 민간기관의 통계작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통계캠프·통계아카데미·교사 연수과정·연구학교 등을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빅데이터, 행정자료활용 등 최근 통계트렌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통계 전문교육을 활성화할 필요
-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는 집행관리 필요
 -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어야 하는 CCTV구입을 시설 장비유지비로 집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128.

제5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사업비 집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통)

가. 현 황

- R&D 사업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2015년 3조 3,167억 원이며, 이 중 3조 3,024억 원을 집행
 - 1분기에 당해연도 전체 예산의 26.9%인 8,907억원, 2분기에 38.9%인 1조 2,887억 원을 전문기관에 교부
 - 2014년 1분기에는 전체 예산의 17.5%, 2분기에 40.7%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전문기관에 대한 1분기 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예치잔액이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
 - 2015년 1분기(1~3월) 교부금 8,907억원 중 4,558억원(51.2%)만을 1분기 내에 집행
 - 1분기 교부금 대비 집행액은 2014년 77.1%에 비해 낮은 수준
- 일반회계 재원의 사업은 전문기관 예치잔액이 증가할수록 재정손실이 발생
 - 한국연구재단은 R&D 사업비를 323개의 예금상품에 예치, 이 중 264개 상품이 2015년 1년물 국고채 이자율 1.698%보다 낮은 수익률
- R&D 사업 출연금 미집행액과 전문기관 예치잔액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초과수납 발생
 -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출연금 반납액은 전년대비 107억원 증가, 보조사업 반납금은 27억 8,400만원이 감소, 출연금은 대부분 R&D 사업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4~18.

2

기술료 세입처리 및 징수방식의 문제점 (공통)

가. 현 황

- 국가 연구개발 사업 결과물의 실시권을 획득한 자에게 납부받은 기술료 수입은 2015년에 175억 9,500만원이며, 일반회계·과학기술진흥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각각 발생
 - 일반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징수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술료 징수과목의 통일과 기술료 수입의 별도 과목 편성 등 2014년 결산 심사 시 채택된 부대의견에 따른 조치방안 강구 필요
- 기술료 납부 기업의 현금흐름 부담을 고려할 때 기술료 실시를 통한 사업화 매출 발생 이후 정액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
 - 2015년 정액기술료 납부기업 대상 조사 결과 48.6%가 매출 발생 이전에 기술료 납부
-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는 매월 세입처리할 필요
 - 기술료를 징수하는 일부 전문기관은 2015년 1~9월에 징수한 기술료까지만 2015년에 세입처리 하고 10~12월에 징수한 기술료는 2016년 세입으로 처리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9~22.

3

R&D 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개선 필요 (공통)

가. 현 황

- 국가 R&D 사업의 미국특허등록은 2010~2014년 기간 중 총 3,607건 발생,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 2,403건, 산업통상자원부 464건, 교육부 408건 순으로 많이 나타남
 - 피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특허 성과를 통해 특허의 질적 수준 평가
 - 피인용 정보는 특허 공개 후 해당 특허를 인용하여 출원된 특허수로 측정, 피인용횟수가 많을수록 기술적 가치가 높은 특허로 평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전 부처 R&D 사업의 특허는 국제 수준이나 민간 R&D 사업에 비하여 우수 특허가 부족
 - 2010~2014 미국특허 3,607건 중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을 보이는 우수 특허는 3.5%인 127건에 불과, 비교 대상 한국 출원인에 의한 미국특허 5,183건 중 우수 특허는 7.6%
 - 일본·영국·독일 등 비교대상 국가별 미국특허 중 우수특허 보다 낮은 비중
- 미래창조과학부 R&D 사업의 특허는 대학 지원 중심의 교육부 R&D 사업에 비해 우수 특허가 부족
 - 미래창조과학부의 미국특허 2,403건 중 우수 특허(상위 10% 피인용 특허)는 82건(3.4%)으로, 교육부의 408건 중 29건(7.1%)에 비해 낮은 수준
- 미래창조과학부의 미국특허 2,403건 중 중 피인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특허가 941건인 39.2%
 - 비교 대상 미국특허에서 피인용이 없는 특허는 24.3%, 한국국적 출원인에 의한 미국특허에서는 25.2%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23~28.

4

정보통신방송분야 기금 사업비 운용의 개선과제 (공통)

가. 현 황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 및 보조사업은 전담기관을 거쳐 수행기관으로 자금이 교부되며, 수행기관 교부 전 예치잔액은 전담기관이 운용
 - R&D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운용한 평잔액은 793억원이며, 비R&D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용한 평잔액은 96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R&D 사업비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수행기관으로 교부되기 전 상태의 예치잔액에 대한 운용수익률이 R&D 사업비에 비해 저조하므로 이를 제고할 필요
 - 2015년에 R&D 자금의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예치잔액에 대한 이자율은 1.47% 수준인 반면, 비R&D 자금의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예치잔액에 대한 이자율은 0.1%로 저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29~30.

5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5-1.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 사업의 특허 성과 개선 필요

가. 현 황

-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은 바이오, 나노·소재,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2010~2014년에 창출된 미국특허등록 성과는 10개 사업에서 총 181건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의 20개 사업에서 창출된 181건의 미국특허 중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도를 보이는 우수특허는 3건으로, 특허성과 측면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개발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임
 - 상위 10% 피인용도를 보이는 우수특허는 첨단융합기술개발 사업 1건,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1건,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 사업 1건 뿐임
 - 181건의 특허 중 피인용이 전혀 없는 특허는 54.7%인 99건

5-2.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조 1,9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0개 사업단을 통해 추진 중, 2015년 예산은 908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의 중요한 목적인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실적을 개선할 필요
 - 2013~2015년 기간 중 동 사업 참여 해외연구진은 위탁과제 3건에서만 파악
-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필요
 - 2015년 3개 사업단에만 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기업 지원 연구비는 1.7%에 불과

5-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의 부처 간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을 추진, 2015년 예산은 464억원으로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TRL(기술성숙도) 기준에서 모두 실증연구 중심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R&D 지원이 동일한 영역에서 중복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은 TRL 기준으로 2015년 정부연구비 465억원 중 실증연구 연구비로 413억원(88.8%) 원천연구 연구비로 52억원(11.2%) 집행

5-4.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업의 지원대상 개선 필요

가. 현 황

-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은 해외에서 신약 임상 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임상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5년에는 4개 과제에 75억원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장기업 중심으로 지원
 - 2015년 지원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상장회사(메디포스트, 코오롱생명과학, 제넥신)
- 신약개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민간투자와 균형을 이룰 필요
 -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민간 현금 부담금이 총연구비의 2.5~12.7%로 낮은 수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31~39.

6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6-1.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가. 현 황

-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예산은 총 1조 8,600억원이며 이 중 1조 8,402억원이 집행되고 198억원이 불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5개 출연연구기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는 출연연구기관의 자체수입을 고려하여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지원 규모를 산정할 필요
 - 2015년 당초 수입계획 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한 출연연구기관은 25개 중 8개
 -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3개 출연연구기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수입계획 보다 실제 수입 증가

6-2.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부적절한 자체수입 예측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 초래

가. 현 황

- 국가핵융합연구소의 2015년 출연금 예산은 779억 8,100만원이며 773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8,7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유희시설 매각대금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 초래
 - 수입계획 수립 당시 계상되지 않았던 잡수입 28억 4,044만원을 결산잉여금으로 처리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40~44.

7

출연연구기관 기술료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가. 현 황

- 25개 출연연구기관의 2015년 기술료 수입은 1,147억원으로 2014년 746억원 대비 53.8%가 증가
 - 2015년 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지출은 기술료 보상금 374억원(46.0%), 기술료 연구사업 174억원(21.4%),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86억원(10.6%) 순으로 사용
 - 기술료는 R&D 사업의 성과를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 사용자가 국가 등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10개 기관만이 기술료를 활용하여 R&D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기술료 재원의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
 - 전년대비 기술료 지출액 중 R&D 재투자 비중이 증가한 곳은 2개 기관, 대다수 출연연구기관이 기술료 수입 규모가 크지 않아 R&D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
 - 출연연구기관 간 기술료 R&D 사업의 통합 운영 등 행정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술료 수입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술료 재원의 R&D 사업비를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
 - 2015년 기술료 연구사업비 87억 3,900만원 중 인건비 집행액은 47억 700만원(53.9%)
 -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기술료 연구사업비를 인건비로 집행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면 재료연구소(기술료 연구사업비 중 10%) 한 곳 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45~48.

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8-1.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 사업의 대학 부담금 비율 명시 필요

가. 현 황

-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대학 보유기술 이전 촉진」 사업을 수행, 2015년 집행액은 54억원
 - 2006년부터 연간 50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이하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운영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학 TLO 운영비 지원 사업은 대학의 부담금을 의무화할 필요
 - 2015년 30개 TLO 중 8개는 정부지원금에 대응한 매칭자금의 부담 없이 지원

8-2. 민간투자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사업

가. 현 황

- 민간투자 유치기업에게 투자금의 6배 한도에서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사업을 추진, 2015년 예산은 120억원으로 41개 기업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에게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민간투자회사 보다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지주회사의 투자 참여 비율이 높으므로 민간투자회사 참여 비중을 높일 필요
 - 41개 기업 중 25개에 기업에 대한 투자처는 기술지주회사이며, 총 투자유치금 83억 4,200만원 중 65억 4,300만원이 기술지주회사의 투자금
 - 기술지주회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전문대학원에서 출자한 회사로 공공재원의 성격

8-3. 기업공감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운영실적 개선 필요

가. 현 황

-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중견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운영
 - 2015년 예산은 80억 3,600만원이며, 이중 38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5,0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업공감원스톱 서비스센터는 이용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이용실적이 저조
 - 2015년 6월 개소 이후 2016년 3월까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등을 받은 실적은 70건으로 월평균 10건에 불과, 오프라인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필요
- 기업공감원스톱 서비스센터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이용실적 중 81.8%가 정보 제공이며, 전문 기술상담 실적은 18.2%에 불과
 - 장비활용 및 기술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49~55.

9

정보통신분야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성과 제고 필요 (정보통신정책실)

9-1.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졸업자의 중소기업 고용 유지 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개설하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사업을 통해 2015년에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과정에 각각 30억 8,500만원, 32억 2,000만원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졸업자의 의무 근로·고용기간 이행률 제고 방안 필요
 - 2010~2013년 석사과정 입학생의 중도 포기 비율은 소프트웨어 석사과정의 경우 26.7%, 정보보호 석사과정의 경우 16.4%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졸업자가 의무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고용 의무이행률을 제고할 필요

9-2. 국내 중소기업이 유치한 해외인력의 고용 유지 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재외 한인인재를 유치할 경우 인건비와 체재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인재 스카우팅」 사업을 통해 2015년에 예산 30억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수인력 유치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종료 이후 해당 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비율을 제고할 필요
 -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고용되어 지원받은 인원 36명(2016년 6월 말 현재) 중 지원기간이 종료된 인원은 16명인데, 이 가운데 2명만이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 소관], pp.56~59.

10

창조경제 지원 사업의 개선과제 (창조경제기획관)

가. 현 황

-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단위사업 「창조경제기반조성」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은 501억 4,6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
 - 4개 사업 중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이 2015년부터 신규로 추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창조경제 펀드에서는 창업기업이 위험을 부담하는 대출 방식으로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2015년 61개 창조경제 펀드에서 조성된 금액은 총 1조 7,259억원이며, 이 중 투자 펀드 조성액은 7,289억원(42.2%), 대출 펀드 조성액은 9,770억원(56.6%)
- 창업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각 부처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2015년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의 지원 예산은 2015년 1,271억원 규모
 - 14개 사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한 사업은 소수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0~62.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필요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가. 현 황

-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융합연구단」 사업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수행
 - 2015년 예산은 381억 7,700만원이며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융합연구단 사업은 출연연구기관이 연구 분야와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
 - 출연연구기관은 현재 상호 협력 보다는 경쟁 방식으로 협동연구 과제 참여
- 융합연구단 사업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 출연연구기관 분담금은 연구회 지원금의 평균 50% 수준, 2015년 7개 융합연구단 사업에 참여한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총 224억원을 사업비로 분담
- 현재 융합연구단 참여 연구원은 사업 주관기관에서 70% 이상 근무해야 하기에 연구원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3~65.

2

원자력의학원의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재검토 필요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가. 현 황

- 난치성 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2017년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
 - 2015년 예산 70억원 중 30억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출연, 40억원은 불용 - 총사업비 1,950억원(미래부 700억원, 지자체 500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50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및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자체재원 조달 실패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음
 - 중입자가속기 기술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핵심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한국원자력의학원 주도 연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6~68.

3

**연구개발특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사전준비 미흡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가. 현 황

- 「연구개발특구역육성」 사업에서 부산·대구·광주 연구개발특구의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
 - 106억 5,000만원을 지자체로 교부하였으며, 지자체는 전년이월액 포함 182억 2,700만원 중 109억 6,5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특구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은 지자체의 준비부족 등으로 연례적으로 실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특구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집행가능한 금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9~71.

4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미래인재정책국)**

가. 현 황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사업을 수행
 - 2015년 예산액 59억 3,000만원은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비 심사와 정산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사업 예산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사고는 증가 추세
 - 다수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2~74.

5

BTL 전문과학관의 전시물 개선 필요 (미래인재정책국)

가. 현 황

- 과학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전문과학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BTL전문과학관 지원」 사업을 수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BTL 임대료를 50%씩 분담하여 지급
 - 2015년 예산은 54억 3,000만원으로 49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BTL 전문과학관은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전시물 교체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시물의 개선을 통해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
 - 6개 전문과학관 중 2015년 기획전시관 콘텐츠를 교체한 곳은 2개에 불과, 상설 콘텐츠 교체는 2015년 1개 전문과학관에서만 이루어짐
- 전문과학관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과학관별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5~76.

6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수입 부족 개선 필요 (미래인재정책국)

가. 현 황

- 과학기술 진흥과 문화 창달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운영
 - 2015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영규모는 2,486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체수입 재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체지출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50.3%에서 2015년 17.7%로 감소
 - － 기획재정부의 2016년 기금존치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로 조건부 존치 의견 제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7~78.

7

해외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글로벌연구실 사업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가. 현 황

- 기초원천 연구 분야에서 국내 연구주체와 해외 연구주체 간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연구실」 사업 수행
 - 2015년 예산은 225억 1,400만원이며 전액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외기관의 연구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공동연구가 추진될 필요
 - 2015년 지원 52개 연구실 중 19개는 해외기관 연구비 부담 없이 운영
- 글로벌연구실 사업은 1인 연구자 지원 비중이 과다
 - 52개 연구실 중 1인 연구자 연구실 지원이 38.5%인 20개
 - 1인 연구실 지원 비중은 2011년 4.8%에서 2015년 38.5%로 증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9~81.

8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예비비 편성 문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가. 현 황

- 과학기술분야의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인력교류·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기반조성」 R&D 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은 180억 2,700만원이며, 예비비로 6억원이 증액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산 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한 워크숍·포럼개최 등 행사성 경비 미집행액을 차년도 사업비로 사용
 - 2015년 국가 간 과학기술공동회의 등 국제협력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미집행액 39억 800만원은 차년도 사업의 직접비로 사용, 여기에 워크숍 등 행사성 경비가 포함됨
- 국내행사 성격의 대국민과학기술지원 사업 예비비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에서 집행
 - 대국민과학기술지원 사업은 국제협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크지 않은 과학기술분야 행사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2~84.

9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축소 필요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가. 현 황

- 원자력 분야 R&D 지원을 위하여 「원자력기술개발」 사업을 수행
 - 2015년 예산은 1,420억 2,500만원이며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원자력기술개발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하므로, 원자력 연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정부 지원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
 - 2015년 130개 과제의 정부연구비 1,420억원 중 90.9%인 1,292억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5~86.

10

간접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과학기술전략본부 성과평가혁신관)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모든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간접비 비율을 산출하여 고시
 - 간접비는 R&D 과제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지만, 개별 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실소요원가계산 방식의 간접비 산출은 대상 기관의 직전연도 결산액 기준으로 간접비 소요액을 산출하는 문제
 - 간접비율 측정은 최근 2년 이상의 간접비 집행액 평균을 반영하는 방식 적용 필요
- 간접비 집행 기관의 시설운영비 보전을 위하여 간접비율 산출
 - 시설운영비 보전을 위한 간접비는 각 R&D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 현재는 연구용 건물 신축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 소요된 운영경비의 50%를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인정하여 반영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7~88.

11

**정보통신방송분야 정책연구사업 간 차별성 강화 필요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연구사업으로 「ICT 진흥 및 혁신 기반 조성」 사업과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사업을 수행
 - ICT 진흥 및 혁신 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방송통신정책연구 등 3개 분야,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사업에서는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등 3개 분야의 정책연구 실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CT 진흥 및 혁신 기반 조성사업에 포함된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과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사업에 포함된 ‘융합활성화 정책연구’ 사업 간 차별성 강화 필요
 -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분야의 정책연구를 포함
 -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은 중장기 전략 마련, 방통융합 기반 정책연구 사업은 단기 현안 해결 과제를 수행한다는 계획과 달리 선정된 과제 간 구분 불분명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9~90.

12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에 포함된 「SW국제협력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외 정보화 컨설팅 사업비 지원 이후 후속 사업 수주로 이어지는 비중 제고 필요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보화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32개이나, 이후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후속 사업을 수주하여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21개로 15.9%
 - 동 사업이 해외 정보화사업 수주를 위해 그 사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후속 사업 수주 기업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91~92.

13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분야별 과제 간 성격 구분 명확화 필요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컴퓨터그래픽·가상현실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5년에 299억 4,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콘텐츠 성격별로 내역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나 각 내역사업의 과제 간 서로 유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 과제가 최소화되도록 수행기관 간 선정 과정 공유 확대 필요
 - 내역사업인 가상현실콘텐츠 발굴지원사업에서 지원한 ‘중독 질환 치료를 위한 몰입형 가상현실 치료 콘텐츠’의 경우 다른 내역사업인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93~94.

14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보조를 통해 동 사업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행기관이 타 기관으로 사업을 지정 재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사업 단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관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단계 정비 필요
 - 모바일 앱개발 환경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인터넷진흥원은 협약 체결금액 27억 3,400만원 중 22억 8,700만원(83.6%)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에 지정 재위탁
 - 최종 수행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직접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단계를 간소화하고 보조사업자 단계의 사업관리비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95~96.

15

**융합보안솔루션 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타 산업분야와 융합한 정보통신 융합산업에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ICT산업 융합보안솔루션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2015년에 스마트 의료 분야 과제 1건을 협약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 성과지표인 ‘과제 건수’는 단순한 산출지표이며, 목표치가 매년 1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2015년에 협약된 과제(협약기간 3년)를 수행하는 한 목표치를 100% 달성하게 되므로 이를 통한 성과 확인이 불가능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97.

16

**신규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마련 필요
(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가. 현 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2015년에는 215건에 대해 총 1억 8,470만원 지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발굴에 대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신고포상금의 법령상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도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채택되었으나 여전히 포상금의 법적 근거 미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98~99.

1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보험보상금의 연례적 과소계상 부적절 (우정사업본부)

가. 현 황

- 우정사업본부는 직원과 보험모집인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보험보상금」 사업을 편성하여 보상금 지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고 있는 보험보상금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할 필요
 - 보험보상금은 2012~2015년 간 매년 360~1,085억원 규모의 과소편성액을 수입금마련지출 또는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용(移用)을 통해 충당
 - 보험보상금을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고 매년 이용 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므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00~101.

18

우편업무 정보화 사업 결과의 효율적 활용 필요 (우정사업본부)

가. 현 황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우편업무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며, 그 내역사업인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2014년에 2곳, 2015년에 7곳의 무인우체국 신규 설치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무인우체국의 배달 취급실적이 저조하므로 배달 기능의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 2014~2015년에 개국한 무인우체국 9곳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배달 실적이 연간 20건 미만
 - 현행 「우편법 시행령」 상 우체국 내·외부가 아닌 곳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무인우체국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을 재배달받을 수 없으므로 동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02~103.

II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방식 및 사업 범위 조정 필요 (공통)

1-1.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보고서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명시 필요

가. 현 황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관리·지출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5년 총계기준 지출액 9,607억원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출하는 규모는 1,670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에 제출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보고서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포함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지출규모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결산보고서 작성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기금에 대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에 미부합
 - 특별회계의 경우 여러 부처가 동일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때 각 부처별로 결산보고서에 소관 지출규모와 내역을 명시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

1-2.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의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사업을 통해 아리랑 TV의 제작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예산 295억원을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교부하여 재단이 294억 1,700만원 집행
 - 2015년에 집행된 금액 중 프로그램 제작비는 194억 9,900만원이고, 방송기자재 구입 등 방송인프라 구축에 지원된 금액은 99억 1,8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방송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상 방송기자재 구입 등 자산형성적 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타 공익방송은 자산형성적 성격의 방송인프라 구축비에 대해 소속 부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 KBS와 EBS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지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1~115.

【개별 사업 분석】

1

남북교류협력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에 대한 수의계약 위법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남북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작 등에 3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북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작 시 KBS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
 -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작은 ‘경쟁을 통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타 지상파 방송사도 북한 방송사와의 공동 제작 경험이 있고, 「방송법」에서 민족 동질성 확보 사업에 대한 KBS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 사업의 위탁·대행 가능성을 명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6~117.

2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사업의 연차목표 수립 필요 (방송정책국)

가. 현 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로·지하철·철도 터널의 재난방송 수신용 중계설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 중계설비 지원」 사업 수행
 - 2015년 조사 결과 전국 터널 중 수신 불량 터널은 2,528개(KBS DMB 방송 기준)이며, 동 사업에서 2015년에 시범적으로 지원한 터널은 26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국 시설관리자의 의무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연도별 조사 필요
 - 중계기 설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상 원칙적으로 시설관리자의 의무
 - 동 시범사업은 일부 관리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면서 전국적인 의무이행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설치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연도별 조사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8~119.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필요 (이용자정책국)

가. 현 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 및 유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사업(5억 4,300만원)의 일환으로 이용자(학생·일반)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생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수혜인원 측면에서 지역 간 수혜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수행 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전체 학생 수 대비 교육 이수 학생 수의 비율이 부산은 12.1%, 인천은 5.8% 수준인 반면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각각 0.1~1.3% 수준으로 지역별 차이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20~121.

4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의 활용도 제고 필요 (방송기반국)

가. 현 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규제를 위해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을 수행하며, 2015년에는 기초조사와 본 조사 등에 45억 7,0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가 본 조사 패널구축 및 민간 시청률 조사기관에 대한 제공용도 외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표 확대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는 소요비용이 14억 1,500만원, 표본 수가 20,000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일반인에게 별도로 공표되지 않는 상태
 - 타 사업인 「방송평가 기반조성」 사업에서 수행하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의 경우 소요 비용(3억원)이나 조사대상 표본 수(4,200가구)가 더 적음에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활용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22~123.

5

중소기업 광고제작비 지원 사업의 중도포기 최소화 필요 (방송기반국)

가. 현 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2015년 예산 20억원 중 집행행된 금액은 16억 5,500만원이며, 이를 통해 32개 기업에 TV 광고, 78개 기업에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중도 포기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 2015년에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광고 제작을 포기한 기업의 비율은 TV 광고가 43.9%(57개 중 25개), 라디오 광고가 18.8%(96개 중 18개)
 - 선정 절차에서 기업의 마케팅 계획을 보다 충실히 점검하는 등 중도 포기율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24~125.

III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과제 (방사선방재국)

1-1.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구역에 대한 감시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현 황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 중
 - 2015년 예산 27억 9,000만원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출연하여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방사능 감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감시기를 조속히 추가 설치할 필요
 - 2015년 말 기준 1개 공항과 10개의 무역항에 73대의 감시기만 설치됨
- 통관 단계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

1-2.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실태조사·교육 등의 위탁 업무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

가. 현 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천연방사선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가공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 중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두 기관이 실태조사를 나누어 수행함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고, 이중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 주체의 일원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32~138.

【개별 사업 분석】

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억 1,000만원 출연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동 사업에서 집행한 국외출장비(4,148만원)는 재단의 내부 국외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출장비 한도(1,659만원)보다 2,489만원을 초과한 집행으로 부적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행사 참석이나 해외기관 시찰 등을 단순히 수행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국외출장은 지양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39~141.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설비 개선비 지원은 재검토할 필요 (원자력안전국)

가. 현 황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원전기기(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기관(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관리업무를 수행 중
 - 2015년 예산은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점검 등에 관한 예산 10억원과 성능검증기관의 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예산 5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시장의 진흥을 위한 성격의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설비개선비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
- 설비개선비 중 성능검증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자부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42~144.

3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의사의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 (방사선 방재국)

가. 현 황

-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으로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제’를 구축·운영 중
 - 2015년 방사선 비상 진료요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방사선비상진료용 의료장비·시설 비로 39억 7,2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상진료요원 중 의사의 교육 이수율(2015년 기준 74.8%)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비상진료기관이 장비구입비의 집행 잔액을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45~146.

4

원자력안전 실태조사의 저조한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 (원자력안전국)

가. 현 황

-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사업은 「원자력안전법」 제8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1억 4,000만원을 집행
 - 실태조사는 ①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 ②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허가 대상(1,460개 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 ③문헌·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한 자체 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저조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과 방식을 개선할 필요
 -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응답률이 2013년 38.5%, 2015년 48.4%로 저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47~148.

제6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교육부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교육지원국)

1-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확보 필요 등

가. 현 황

-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운용되며, 교육부는 지방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함
 - 2015년 지방교육재정 총 세입(62.4조원) 중 교부금이 63.2%를 차지(39.4조원)
 - 보통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27%의 96%+교육세분 교부금 전액
 -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27%의 4%이며 용도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6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3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10%)로 구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지급하는 재원 (2015년 예산 8,322억 1,400만원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사업은 2014년까지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에는 교육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편성·교부
-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1-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 개선 필요

가. 현 황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즉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지 않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재원 (2015년도 예산 4,161억 700만원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동일한 용도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맞는 사업 집행 필요
 - 교부대상에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학교시설비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될 개연성이 있음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위반하여 대응투자 없이 2회계연도에 걸쳐 사업비를 교부하는 사례 발생

1-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

가. 현 황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에 감소가 있는 경우 교부
 - 2015년도 예산 1,387억 300만원 중 재해복구에 284억 5,000만원,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에 1,102억 5,3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 목적으로 집행되는 비율이 연례적으로 저조
 - 201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총액 1,387억 300만원 중 재해복구에 사용된 금액은 284억 5,000만원(20.5%)에 불과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전 재해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18.

2

대학 등록금 경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장학지원관)

가. 현 황

- 정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자금대출 시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외 근무 비율을 상향하고 교육부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필요
 - 2015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70%
-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의 제한이 축소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9~22.

3

특수교육 내실화 필요 (지방교육지원국, 국립특수교육원)

가. 현 황

- 교육부는 일반회계로 국립 특수학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보통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담당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단 운영,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심층 분석(2015년 57억 2,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필요
 - 2015년 공립 특수교사 법정 정원 17,779명, 실제 배정 정원은 11,170명으로 정원확보율 62.8%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23~25.

4

교육부 산학협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학지원관)

4-1.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 사업의 중복 해소 필요

가. 현 황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직업교육의 연계성 강화(2015년 고용보험기금 160억 700만원)
 - 특성화고-전문대가 연계된 5년 통합과정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은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 사업과 유사
 - 특성화고-전문대-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을 통합 추진할 필요

4-2.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 개선 필요

가. 현 황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은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개 대학을 지원함(2015년 2,261억 8,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학 현장실습 교과목에 참여하는 학생 중 실질적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
-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전공학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26~30.

5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공정성 확보 시스템 보완 필요 (대학정책관)

가. 현 황

-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간소화,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 대학의 대입전형 역량을 강화(2015년 509억 9,900만원 집행)
 -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을 지원하며 동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성 확보 시스템 구축·운영(2015년 2억 4,200만원 집행)
 - － 공정성 확보 시스템은 유사도 검색 시스템, 고교정보시스템, 회피·제척 시스템으로 구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기소개서 표절이 의심되는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표절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처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 유사도 검색 결과 ‘표절 의심수준’ 이상으로 판단된 학생 1,346명 중 115명 합격
- 고교정보시스템의 등록률이 저조하고 등록 정보의 수준이 달라 동 시스템의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입력 정보를 내실화할 필요
 - 2015년 기준 전국 2,393개 고등학교의 68.3%인 1,636개교의 정보만이 등록됨
 - 고교 자율 입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별로 등록된 정보의 수준이 상이함
- 회피·제척시스템의 운영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2015년에는 활용 대학이 전무하므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법령 정비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취급이 불가하게 되어 교직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회피·제척시스템의 활용 곤란
 - － 법률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함
 - － 「고등교육법」에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미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31~34.

6

사학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정책관)

가. 현 황

-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여 사학연금을 운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동 기금을 통해 연금사업, 대여사업, 회관운영 및 정보화사업 등을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학연금 회관이 부실 운영되고 있으므로 손실이 발생하는 회관을 매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15년 회관의 임대율 및 손익이 모두 목표액에 미치지 못함
 - 서울·오류·둔산회관의 임대율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오류회관은 2014년 3억 5,000만원, 2015년 8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출 소요액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
 - 연금급여 371억 3,900만원, 퇴직수당급여 1,100억 200만원을 변경하였으나,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불용 발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주식 직접투자 비율의 변동 혹은 주식투자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사학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
 - 주식 국내 직접투자의 경우 수익률 -2.23%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국내 간접투자 수익률이 3.5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직접투자의 수익률 저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35~38.

【개별 사업 분석】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장평가 실시 필요 (대학정책관)

가. 현 황

-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2015년 152억 1,100만원 집행)
 - A~E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하고 평가 등급별로 최고 15%까지 정원을 감축하며, D, E등급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2차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39-41.

2

노후 위험시설 개선 위주의 시설사업 반영 필요 (교육안전정보국)

가. 현 황

-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을 통해 국립대학의 시설확충, 노후시설 리모델링·유지·보수, BTL정부지급금 등을 지원(2015년 3,490억 3,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축 사업보다는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정책 사업비 위주의 예산 지원 필요
 - 2015년 총 93개의 시설확충 사업 중 55개 사업(59.1%)이 신축 사업
 - 국립대학은 노후건물 비율이 높고 석면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
- 시설확충사업 반영 기준에서 3년 이내에 사업이 완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이 절반 이상(53.8%)이므로 집행 관리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42-43.

3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필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가. 현 황

- 교육부는 주변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급(2015년 185억 8,5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북아역사재단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발생
 - 한불국제학술회의는 한불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업 목적인 국제표기명칭오류시정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광복 70주년 학술회의는 한미관계를 다루고 있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으며, 중국·일본과의 역사적 갈등 해결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44-45.

4

재외교육기관 지도·조사 강화 필요 (국제협력관)

가. 현 황

- 교육부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2015년 4,200만원 집행)
- 2015년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범 운영(2015년 2억 8,0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외교육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조사를 강화할 필요
 - 최근 3년 내 지도·조사를 받지 않은 한국학교는 총 32개교 중 21개교, 한국교육원은 총 39개원 중 23개원으로 지도·조사 비율이 낮음
- 재외한국교육기관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콘텐츠를 보완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46-47.

5

평생학습중심대학의 대학별 대응투자 비율 준수 필요 (평생직업교육국)

가. 현 황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2015년 89억 4,445만원 실집행)
 - 학위/비학위과정 운영대학, 전문·회소분야 대표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의 3가지 유형으로 대학을 선발하여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응투자 기준 대비 대응투자액이 부족한 대학이 8개교에 달하므로 집행관리 필요
 - 학위/비학위과정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국고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규정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48~49.

6

평생학습계좌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평생직업교육국)

가. 현 황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사업은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여 사회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2015년 5억 1,300만원 실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과의 연동 방안을 마련하여 평생학습계좌제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활용 기관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 필요
 - 평생학습계좌제의 이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LG전자 한 곳 뿐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50~52.

7

BK21 플러스 사업비의 적기 교부 필요 (학술장학지원관)

가. 현 황

- 「BK21 플러스」는 국내 대학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별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게 월 100만원 내외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임(2015년 2,748억 600만원 실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BK21 플러스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적기 교부를 통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의 안정적 지원 필요
 - 2014년에는 4월 3일에 사업비가 대학에 교부되었으며, 2015년에는 3월 24일에야 대학에 교부되는 등 연례적으로 사업비 교부 지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53~54.

8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필요 (학술장학지원관)

가. 현 황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전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사구조 등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2015년 594억원 실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대학을 다수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분리하거나 지방대학 위주로 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출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에 사용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55~56.

9

서울대학교 출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학정책관)

가. 현 황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15년 4,381억 6,8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인화(2011.12.) 이후에도 법인회계 중 출연금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므로 서울대학교의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2015년 2학기 기준 편제정원 45명 중 실제 대학원생은 32명에 불과하며, 평창캠퍼스에 실제 입주한 기업이 3개에 불과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57~59.

10

예비비 이월 관리 필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가. 현 황

-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기 위하여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사업을 통해 역사교과서를 집필(2015년 예비비 26억 9,606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역사교과서의 연구개발비 이월이 과다하므로 향후 예비비 집행 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집행 관리가 필요
 - 교과서 개발에 사용된 연구개발비 17억 6,000만원의 95.9%인 16억 8,761만원을 이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60~61.

11 적정 수준의 기본경비 편성 필요 등 (공통)

가. 현 황

- 교육부 본부의 업무 추진을 위해 본부 기본경비를, 국립대학의 운영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 기본경비를 지원
 - 2015년 본부 기본경비 140억 8,200만원, 국립대학 기본경비 1,533억 7,7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립대학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지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
 - 2013년 19억 8,500만원, 2014년 21억 8,000만원, 2015년 31억 2,300만원 등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을 통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증액
- 본부 기본경비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국별 기본경비를 실제 예산이 필요한 규모로 배분하는 등 이월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집행 관리 필요
- 글로벌 역량개발 연수를 국외업무여비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반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외업무여비가 아닌 국제화여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62~65.

II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현안 분석】

1

문화체육관광분야 기금재원 확보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공통)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규모는 2011년 4조 2,045억원에서 2015년 6조 4,406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연평균 증가율 5.6%)보다 빠르게 증가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015년 6.1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할 전망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속적인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문화부문 기금의 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여유자금의 감소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음
 - －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출수준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면, 향후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2017년에는 기금편성을 할 여유재원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
- 예산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사업계획과 집행과정을 철저히 관리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77~81.

2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점검

2-1. 관광산업 융자의 정책적 지원기준 마련 필요 (관광정책관)

가. 현 황

-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은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시설 확충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2015년 당초계획액은 4,500억원이었으나, 2015년도 추경예산 시 6,800억원으로 증액변경하여 6,131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668억 700만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불용 방지 필요
 - 추경예산 시 증액한 2,300억원의 융자금은 민간의 신청이 저조하여 70%만 집행
- 정책자금융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
 - 현재 관광업체가 신청한 융자액 내에서 은행의 대출심사로 지원규모가 결정
－ 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류미비 여부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만 판단

2-2. ‘문화가 있는 날’ 정착을 위한 참여기관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문화정책관)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들을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운영」사업을 시행
 - 추경예산 시 9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내역변경을 포함한 예산현액 130억 3,000만원 중 130억 2,1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참여기관에 대한 제도적 유인구조를 설계할 필요
- 기획프로그램은 타 사업과 차별성이 떨어지므로 ‘소외계층문화순회’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

2-3.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예술정책관)

가. 현 황

-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연 티켓 1장 구입 시 추가로 1장이 더 발급되는 플러스 티켓 정책을 통해 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지원
 - 추경시 신규로 예산 30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나, 실집행 단계에서 135억 2,400만원(45.1%)을 집행하고, 나머지 164억 7,6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당초 목적보다는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기간을 연장
 - 지원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공연단체들이 포함되었고,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여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한 영세한 공연단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4.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문화정책관)

가. 현 황

- 「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임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계획현액 681억원 중 679억원을 집행하였고, 사랑티켓 사업은 2015년 계획액 13억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통합문화이용권의 관광 및 체육분야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문화부문에 88.2%, 관광부문에 10.0%, 체육부문에 0.1%로 사용되어 문화부문에 소비가 편중
- 사랑티켓은 사업대상자가 고령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온라인 이외에도 오프라인 신청창구 마련 필요
 - 사랑티켓 수혜자 중 65세 이상인 비율은 0.5%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82~92.

3

융·복합관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관광정책관)

3-1. 의료 관광육성사업의 보건복지부사업과 유사중복 해소 필요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육성」사업을 추진
 - 2015년도 예산은 48억 9,000만원이며,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와 의료관광사업의 업무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각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환자의 증세 정도에 따라 구분한 업무 조정협약이 지켜지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국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3-2. MICE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가. 현 황

- 「MICE산업 육성지원」은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산업을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
 - 2015년도 계획액 236억 9,600만원 중 236억 1,0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명 이상 단체에 지원하는 기업단체지원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1회성 이벤트 보다는 중대형 단체 대상의 재방문 유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홍보의 성과가 특정지역에서는 미흡하게 나타나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93~99.

【개별 사업 분석】

1

K-Style Hub 구축사업의 자금운용 계획변경 부적절 (관광정책관)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에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을 활용하여 한식문화 소개, 전통공예품 전시 등 종합 한류체험공간을 마련하는 ‘K-Style Hub’ 구축을 추진
 - 2015년 당초 계획액 26억원은 계획변경을 통하여 171억원으로 증액변경하여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문화창조벤처단자’를 구축한 것은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
- 당초 계획액 26억원에서 약 7배인 171억원으로 기금계획 변경을 하였으므로, 기금 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0~101.

2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재정비 필요 (관광정책관)

가. 현 황

-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공모전 개최 등을 지원하고 창조관광업체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
 - 2015년도 계획액 154억원을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교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
 - 창조관광기업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측정 불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의 요소는 온라인 활용만이 강조됨
 - 투자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에 대해 창조관광기업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2~104.

3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준 마련 및 계획적인 사업 추진 필요 (국제관광정책관)

가. 현 황

-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쇼핑센터와 호텔, 레스토랑, 문화공연장 등에서 동시에 할인행사를 하는 쇼핑관광축제임
 - 2015년도 계획액 8억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여업체 선정기준 마련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참여기준이 없어 세일폭이 작은 업체도 정부의 홍보활동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5~106.

4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시범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재설정 및 사업추진 재검토 (콘텐츠정책관)

가. 현 황

-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사업은 외국영화의 국내 촬영을 유치·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관광연계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 2015년 계획액 10억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필요
 - ‘해외영화 국내촬영 건수 및 국내촬영에 따른 지원금 집행액’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 사업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지속적인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
 - 사업의 성과는 불확실한 영화의 흥행여부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인 재정 투입여부 재검토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7~108.

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의 보건복지부와 연계 필요 (예술정책관)

가. 현 황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은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확대 지원 및 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2015년도 예산현액 206억 8,500만원 중 205억 300만원이 집행되고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500만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청 절차가 복잡하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시간제보육지원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9~110.

6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여 스토리산업을 지원하고 형평성 있는 상금 지급 필요 (콘텐츠정책관)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야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야기 유통 플랫폼 구축」, 「스토리마켓」 등을 추진
 - 2015년 예산은 59억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내실 있는 저작권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
- 스토리 공모대전은 문화콘텐츠 분야 타 공모전에 비해 높은 상금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수상작 성과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11~113.

7

스포츠산업융자의 다양한 종목 자원과 적정예산 편성 필요 (체육정책관)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시행
 - 2015년 계획액은 180억원이며, 이 중 130억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다 다양한 종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2015년 융자액 130억원 중 골프연습장 시설설치 등 골프종목 융자가 54억원(41.5%)으로 골프종목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음
- 융자계획액 180억원 중 130억원만 집행되었으므로, 향후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14~115.

8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는 예비비 집행 필요 (문화정책관)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광복 70주년 경축 전야제와 ‘기념 평화예술제(DMZ)’를 개최
 - 예산 20억원 및 예비비 1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억원 중 29억 2,5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 상 예비비 집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
 -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는 예측할 수 없었던 행사가 아니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부족이라고도 볼 수 없음
 - 또한,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했으며,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116.

9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사업추진 필요 (예술정책관)

가. 현 황

-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사업은 아리랑을 주제로 한 브랜드 개발, 시그널 개발, 해외홍보를 통해 국가이미지 개선 및 국민대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 2015년도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19억원, 전용액 5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억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감액사업에 대해 전용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함
 - 예산안 심사 시 1회성 공연 등 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취지에서 6억원 감액
 - 동 사업은 전용을 통해 5억원을 증액하여 뮤지컬 아리랑의 제작비용 및 1회 공연 관객 2,000명 무료초대를 지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117.

10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구축사업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 (저작권정책관)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전송사용료 정산·분배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로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운영
 - 2015년 예산액 5억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회계연도와 계약기간의 불일치 해소 필요
 - 사업지연으로 2014년도 예산 9억 3,000만원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위탁계약에 집행되었고, 2015년 예산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계약에 집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118.

11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한 HD드라마타운사업 보조금관리 철저 (미디어정책관)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HD드라마타운 건립」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초기투자가 어려운 대형스튜디오 중심의 첨단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을 지원
 - 2015년도 예산 272억 5,200만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전액 교부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 473억 2,400만원 중 107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보조사업 추진시 2회계연도를 초과한 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고 환수하고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
 - 2016년으로 이월된 금액 366억 2,300만원 중 2억 7,200만원은 2013년에 교부된 예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19~120.

12

종합형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체육정책관)

가. 현 황

- 「종합형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통해 스포츠 비참여자 유도 등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 2015년도 예산은 87억 5,000만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성과가 부진한 클럽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이 요구됨
 - 안정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럽을 선정하고, 클럽 평가시 회원 수 배점을 강화하는 등 자체수입 안정화 노력이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21~123.

III

문화재청

【주요 현안 분석】

1

문화재보호기금 운용개선 필요 (문화재정책국)

가. 현 황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의하여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2009년에 설치
 - 2015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액은 1,420억원이며, 결산액은 1,555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화재보호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와 차별적인 사업을 운영할 필요
- 문화재보호기금과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운영에 관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아닌 책임운영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규정
- 문화재보호기금은 재원이 다양하지 않고 정부 출연금에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기금의 재원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기금수입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전입금의 과다는 기금운영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조정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32~135.

2 문화재청 소관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철저 필요 (운영지원과)

가. 현 황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자치단체·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40개 보조사업 추진
- 2015년 보조금 정산반환금 징수결정액은 268억 8,400만원이며, 이 중 130억 3,100만원 미수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사업 정산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문화재청의 보조사업 중 약 25% 정도가 3월 이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
 - 보조사업의 정산 지연은 결산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됨
- 연례적인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등 정산반환금 미수납 관행을 개선할 필요
 -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관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의 미수납액은 2013년 75억원, 2014년 86억원, 2015년 115억원으로 매년 증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36~138.

【개별 사업 분석】

1 무형문화재 보호사업 성과 제고 필요 (문화재정책국)

가. 현 황

-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유자·전수교육조교에 전승지원금과 무형유산 행사지원, 전수교육관 건립 등을 지원
 - 2015년도 예산은 261억 7,500만원이며, 이 중 26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건립 지원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할 필요
- 보유자 등의 평균나이 고령화에 따른 대책과 취약종목 선정기준 재정립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39~141.

2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문화재정책국)

가. 현 황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불법 국외 반출 예방을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여객부두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하고 반출품(동산)에 대해 비문화재 확인업무를 실시
 - 2015년 예산은 9억 6,400만원으로 이 중 9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합리적인 인력배분기준을 마련할 필요
 - 최근 5년간 가장 감정건수가 많았던 김포공항은 타 기관에 비해 감정인원이 적게 운영되고, 무안공항의 경우 감정실적 중 91.3%를 차지하는 도자기에 대한 전문인력 없이 운영
- 화상감정시스템과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42~144.

3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집행요건에 맞는 예비비 집행 필요 (문화재활용국)

가. 현 황

- 문화재청은 광복 70주년 기념 문화행사 예산으로 당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1억원을 신청하여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집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해 예비비 집행 필요
 -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예비비 신청은 예측할 수 없었던 행사가 아니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부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145.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공공외교 사업의 수행 방식 개편 필요 (문화외교국)

1-1. 공공외교 수행 체계 개선 필요

가. 현 황

- 공공외교 수행 주체로 외교부 이외에 다양한 민간 주체, 관련 부처, 재외공관, 산하 기관 등이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교부와 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조정하고, 부처별 특색에 맞는 공공외교 사업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할 필요

1-2.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에서 친한단체 활동지원 및 통일공공외교 등을 수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이므로, 해외 친한단체 활동 후원 시에는 해외경상이전 등 타 비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필요
- 통일공공외교 사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실적이 미흡하므로 사후관리 강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8~12.

2

재외공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획조정실)

2-1. 재외공관 차량 교체 시 법령 준수 필요

가. 현 황

- 외교부는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사업에서 2015년 총 73개 공관의 89대 차량을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함
 - 예산현액 42억 7,200만원 중 42억 2,1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제6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계연도 내에 차량을 매각하고 매각액을 본부에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차량 교환·처분 시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요구 서류를 갖추어 사업 수행 필요

2-2. 재외공관 행정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미흡

가. 현 황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사업에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인건비 지급, 교육훈련, 전지의료검진 및 저지대요양 여비 지급 등을 시행함
 - 예산현액 1,039억 100만원 중 994억 6,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환차손 우려로 인건비를 소극적으로 집행하여 인건비 인상률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계획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당초 13.5%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9.1%만 인상됨
- 전지의료검진 및 저지대요양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제고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13~18.

3

정상 및 총리외교의 예산 집행 개선 필요 (의전장실)

가. 현 황

- 외교부는 대통령 및 총리의 국제회의 등 참석 및 방문, 외빈 방한 시의 의전을 위해 「정상 및 총리외교」에 215억 2,400만원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해 2015년에 예비비 48억 8,8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예산 과소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총리순방을 위한 전세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으나, 이·전용 및 예비비로 전세기를 임차함
 - 향후 총리순방 시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획되지 않은 전세기 이용 지양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19~20.

【개별 사업 분석】

1

아세안문화원 건립 부진 등 (남아시아태평양국)

가. 현 황

- 아세안문화원 건립을 위해 8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9,200만원만을 집행하여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세안문화원 건립은 총사업비 변경(100억원→178억원) 과정에서 사업이 크게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내부 검토 과정을 면밀히 할 필요
- 예산 배정 전 설계공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공모가 국회 심의와 상이함
- 아세안문화원의 운영방식을 비롯한 장·단기 로드맵 구축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21~23.

2 전략사업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가. 현 황

-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정상회담 및 고위급 차원의 약속사업과 국제기구를 통한 긴급구호지원을 위해 전략사업비 250억원을 편성하고 113억 6,900만원 집행함
 - 동 사업은 전액 수시배정 사업으로, 필요 시 수시배정 절차를 통해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행가능한 수준에 비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2014년 및 2015년 집행률이 각각 50%와 45%에 불과함
- 전략사업비 내의 긴급구호지원은 타 사업인 「해외긴급구호지원(ODA)」사업과 중복이 발생하므로, 전략사업비에는 프로젝트 형식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별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24~27.

3 수행방식 미흡으로 우간다 지원사업(ODA) 취소 (한국국제협력단)

가. 현 황

- 한국국제협력단은 우간다에 종합석유화학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내기업의 수주 실패 및 수원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이 취소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ODA 사업 추진 시에는 수원국의 PCP 접수 및 사업형성조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동 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PCP 접수나 사업형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하였으므로, 향후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만 예산 편성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28~29.

4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환 필요 (재외동포재단)

가. 현 황

-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재외동포 및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지원 사업을 위해 총 15개 단체, 16건 사업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추진 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체 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단체에 반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상 단체 선정 시 공모절차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30~31.

II

통일부

【주요 현안 분석】

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성과 개선 필요

1-1.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제도 성과 개선 필요(남북하나재단)

가. 현 황

- 남북하나재단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을 위해 「직업역량강화」에 6억 2,5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 내의 「전문직종 특화사업」은 귀금속 공예 등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 취업자가 없는 등 성과가 부진하므로 교육내용 개편 필요
- 동 사업 내의 「취업지원 아카데미」의 경우 수업 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가 참여하여 사업 성과가 저조하므로 위탁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필요(하나원)

가. 현 황

- 제2하나원에서는 심화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중국어 취업준비, 용접기능사 등 6개 자격증 과정과 2개 비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며 4억 5,200만원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2하나원 심화교육과정의 신청자 대비 수료자 비중이 75%에 불과하고, 조사에 따른 실제 취업인원 수도 저조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

1-3. 지역 하나센터 사업 예산 집행 방식 개선 필요(남북하나재단)

가. 현 황

- 하나재단은 지역 하나센터의 지역 취업지원사업을 위한 취업지원 인력 고용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하여 5억 2,700만원을 집행함
 - 2015년 29개 하나센터 중 26개의 센터에서 지역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 취업지원사업 예산이 3월 이후 하나센터에 교부되어, 취업지원 인력 고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단절이 생기므로 예산을 조기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39~44.

2

경협·교역보험 제도 개선 필요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경협보험은 북한지역 투자 후, 비상위험으로 인한 투자자금 회수 불능 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기업 당 가입한도는 70억원으로 되어 있음
- 교역보험은 북한기업과 교역을 하는 국내기업 등이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유동자산에 손실에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협·교역보험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음
 - 경협보험의 낮은 보장한도, 교역보험 가입 전무에 따른 보장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옴
-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통일부와 입주업체간의 의견차이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험 개편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45~46.

3

통일준비위원회의 과도한 홍보사업 지양 필요 등

3-1. 과도한 홍보사업 진행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개선 필요(통일준비위원회)

가. 현 황

-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 홍보 및 국민들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홈페이지·정책홍보에 4억 6,3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통일준비위원회는 당초 신문, 라디오 및 포털광고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계획에 없었던 TV 광고 4억 4,600만원 등 총 4억 6,300만원을 집행함
- 과도한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여론조사 결과 통일준비위원회 인식 정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홍보 효과가 낮다고 보임

3-2. 통일준비위원회 참석률 제고 노력 필요(통일준비위원회)

- 통일준비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월 1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근거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회의 운영 예산으로 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억 3,600만원만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4년 설립 이후 2016년 2월까지 개최한 외교안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회의 참여율이 50% 이하인 경우가 12건 중 9건으로 회의 참여율이 저조함
- 향후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선정 시 참여 의지 및 회의 참석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선정 후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45~49.

【개별 사업 분석】

1

세계평화회의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정책실)

가. 현 황

- 통일부는 광복 70주년 계기로 2015년 10월 29일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예비비 9억 9,000만원을 배정받아 7억 1,6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관부처 확정, 행사 위탁 계약 등 진행이 지연되어 사전 준비가 미흡해짐에 따라 계획한 대상자의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간담회 등도 개최하지 않는 등 실적이 부진함
-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편성하여야 함
 - 동 행사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하고, 필요한 규모보다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하는 등 요건과 부합하지 않게 예비비를 편성·집행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50~51.

2

「이산가족지원」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통일정책실)

가. 현 황

- 통일부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추진 및 기념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15년의 경우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1억원 보조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당초 계획한 자부담비율은 60%이나, 실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집행한 자부담비율은 1.7%에 그쳐 차이가 크며, 이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감독을 강화할 필요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52~53.

3

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 (교류협력국)

가. 현 황

- 통일부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관리를 위해 매년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2015년에는 당초 전략물자 사전판정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5년 4월에 세목조정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위탁사업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2015년 초 사전판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함
- 향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강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54.

4

「인적왕래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류협력국)

가. 현 황

- 통일부는 남북한 주민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원하며, 남북 주민간 접촉 유도 및 교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인적왕래 지원」사업을 수행함
 - 2015년 계획현액 28억원 전액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북한 간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인적왕래 건수 및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기금 집행이 부진함
-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인적왕래 지원 사업의 집행을 제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55~56.

5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체계적 진행 필요 (교류협력국)

가. 현 황

- 통일부는 국제네트워크 구축, 남북 전문가교류 지원, 통합인도지원 체계구축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17억원을 편성하고 6억 3,000만원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문가교류 지원은 남북 전문가 간 대규모 교류가 없었으며, 통합인도지원 체계구축은 시스템 설계가 계획보다 축소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향후 합리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대북 인도적 지원 DB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향후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업체와 별도의 위탁계약 체결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57~58.

6

6.25전쟁 남북피해기념관(가칭) 운영방안 모색 필요 등
(6.25전쟁남북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가. 현 황

-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남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6.25전쟁 남북피해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예산 20억원 중 12억 2,800만원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총사업비가 423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정된 건립기간에 맞추어 추진 필요
- 동 기념관의 운영 방식 및 운영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59~61.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별 사업 분석】

1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건비 집행 필요 (기획조정관)

가. 현 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인건비가 부족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사업비에서 1억 300만원을 전용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은 일반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일반사업비로부터의 전용은 총액인건비제도에 부합하지 아니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68~69.

2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위원활동지원국)

가. 현 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년 자문위원의 역량 지원 및 청년 세대의 통일공감 확산을 위해 「청년위원 역량지원」사업을 수행하고, 4억 297만원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에서 개최한 ‘통일준비 한마음 봉화 대축제’ 행사는 행사 계획·집행 시 청년위원의 역할이 모호하며, 프로그램 내용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 필요
- 「대학생 통일동아리 지원」 등은 통일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이므로 조정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pp.70~71.

제8장

국방위원회

I

국방부

【주요 현안 분석】

1

국방부의 부적절한 인력 운용 및 인건비 증가

1-1. 책정된 인력규모 및 정원 내 병력 운용의 필요성(군구조개혁추진관실·보건복지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2015년 61만 1,000여명의 군인을 운용하였음
 - 군인 인건비 예산현액은 9조 2,445억 1,200만원이나, 부사관 인건비 부족 및 병 추가입영 등으로 인하여 예산보다 많은 9조 2,714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부는 부수병력을 책정된 규모보다 과다하게 운용하였음
 -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은 영관급 장교 부수병력을 책정인원 대비 각각 2.7배, 4.2배, 2.0배 운용하였음
 - － 정원 내에서 병력을 운용하면서 부수병력을 과다 운용하는 것은 전투를 임무로 하는 편제병력의 과소한 운용 및 이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국방부는 병력을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분야는 민간영역을 활용하겠다는 민간개방 기본계획과 달리 복지회관에 병을 정원보다 24.0% 과다하게 운용하였음

1-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부합하는 한시적 기구 운용 필요(기획관리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2015년 연말 기준 국방인사정보화 TF 등 17개의 한시적 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부는 긴급한 군사·행정 수요가 크지 않음에도 한시적 기구를 설치·운영하였음
 - “예비역정책발전 TF”, “국방인사정보화 TF” 등은 국방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긴급한 군사·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기구로 보기 어려움
- 국방부는 단기간 운영 후 폐지하는 한시적 기구의 본질과 달리 “예비역정책발전 TF” 등을 6년이 넘게 운영하였음

1-3.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보건복지관실)

가. 현 황

- 2015년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규모는 1조 3,430억 9,500만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군인연금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재정부담 증가, 국방비 잠식 등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1995년 5,002억 1,000만원이던 보전금 규모는 연 평균 5.1%씩 증가하여 2015년 1조 3,430억 9,500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 연 평균 4.8%씩 증가하여 2045년에는 5조 4,5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국방부는 연령정년·계급정년 등으로 직업안정성이 낮은 군인의 특징과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보상적 성격을 갖는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84~90.

2

간부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간부 주거시설 확보계획 및 관리의 개선방안(시설기획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전 간부에게 관사 및 전세대부(78,562세대), 간부숙소(10만 228실) 등 주거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 연말 기준 69,638세대의 관사와 95,018실의 간부숙소를 보유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간부 주거시설 확보계획 수립 시 수요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재외무관, 연락장교 등에게는 체재비 또는 주택임차료가 지급되고 있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전 간부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임
- 국방부는 간부 주거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전체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2-2. 전세대부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시설기획관실)

가. 현 황

- 2015년 국방부는 1,991세대 원금대부, 2,674세대 이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금 재원 부족으로 1,102세대 원금대부, 1,619세대 이자지원을 실시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세대부계정의 재원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재원 부족으로 여유자금을 거의 운영하지 못하여 2015년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1억 300만원에 불과함
-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전세대부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91~96.

3

집행계획 변경제도의 과도한 활용 개선 필요 (계획예산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내역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내역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집행계획 변경제도를 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계획을 변경한 금액은 총 2,988억 2,800만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못하여 집행계획 변경제도가 과도하게 활용된 측면이 있음
 -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은 결산액의 5.1%(1,030억 8,900만원)를 집행계획 변경하였고,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은 결산액의 3.1%(895억 900만원)를 집행계획 변경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97~98.

4

다국적군 파병사업의 개선 필요 (국제정책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보호 등을 위하여 다국적군 등의 명목으로 460명을 파병하고 있음
 - 국방부는 2015년 다국적군 파병 예산현액 258억 7,600만원 중 237억 1,2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해부대의 파병으로 인하여 국내 해군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015년 11월 이순신급 구축함(DDH-Ⅱ) 6척 중 청해부대 파병, 해군 사관학교 순양훈련, 창정비 등으로 비상사태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함정은 1척에 불과하였음
-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국 중부사령부와 지부티 연합합동임무대 개입파병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99~101.

【개별 사업 분석】

1

**국방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보화기획관실)****가. 현 황**

- 국방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 10억 원 중 3억 7,100만 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부는 예산편성시 계획한 사업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예산편성시 계획하지 않은 “국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설계 및 종합발전계획”, “정보유통체계 통합분석 개념연구”, “전장관리체계 정보관리 개념연구”를 추진함
-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수립 없이 하위체계 구축 예산을 편성·집행하였고, 사전 준비 미흡 등으로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02~104.

2

군 골프장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관실)**가. 현 황**

- 국방부는 군인의 체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33개의 군 골프장을 운영함
 - 2015년 「군 골프장 운영」 사업에 733억 1,800만원, 「군 골프장 확보」 사업에 127억 6,700만 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군 골프장의 현역 군인 이용률이 23.4%로 낮은 수준임
- 이용자 1인당 지출액(28,000원~52,000원)에 비해 회원의 이용요금(13,000원~17,000원)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회원 이용요금의 추가적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05~106.

3 영외자 급식비 과세 필요 (군수관리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영외거주하는 군인에게 1일 4,784원의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5년 영외자 급식비로 총 2,075억 1,9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외자 급식비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은 월 10만원 초과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외자 급식비에도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107.

4 「국유재산법」에 반하는 국유재산 관리전환 (시설기획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옛 기무사 수송대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유상관리전환하였음
 -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는 일반회계간 관리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무상 관리전환한 후 다시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로 유상관리전환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부가 일반회계 재산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무상 관리전환한 것은 유상 관리전환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17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7조의2에서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전환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옛 기무사 수송대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리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특별회계로의 관리전환은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08~109.

5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체결한 정보사 자산취득 계약의 문제점 (시설기획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예하부대를 2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통합된 정보사령부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전자제품 등의 자산 취득을 위해 2억 2,2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부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정보사 이전 자산취득」은 이행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방부는 사업에 배정된 금액(5억 1,900만원) 보다 많은 15억 2,200만원 규모의 목재 가구, 전자제품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였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10~111.

6

군 장려금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인사기획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우수한 단기복무 장교 확보를 위하여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91억 5,3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단기복무 장교 지원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군 장려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단기복무 장교 지원자는 2011년 2만 3,458명에서 2015년 3만 1,211명으로 증가한 반면, 단기복무 장교 선발인원은 2011년 7,903명에서 2015년 6,151명으로 감소하였음
 - － 단기복무 장교 선발 경쟁률은 2011년 3.0:1에서 2015년 5.1:1까지 상승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112.

7

시설관리용역 수의계약 과다 시정 필요 (시설기획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건축물의 청소·시설관리·조경 등을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622억 6,4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관리용역 계약 중 66.9%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군사시설물 중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시설관리용역의 수의계약 중 과반수가 재향군인회 등 군 관련단체와 체결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13~114.

8

국회에서 증액된 시설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필요 (시설기획관실)

가. 현 황

- 국회는 2015년 시설사업 중 7개 내역사업에 355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방부는 이 중 459억 4,8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6사단 관사신축」 사업과 「해병대 연평부대 본청 신축」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지연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22억 5,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국방부는 양구군과의 협조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15~116.

9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제2 군자녀 기숙형고교 설립사업 재검토
(시설기획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9억 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법인 한민학원의 수익재산 확보 등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서 동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학교법인에게 충분한 수익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법인 한민학원은 수익재산 가액이 45억 5,000만원에 불과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이 학교설립계획을 미승인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117.

10

일용품 현금지급제도의 개선 (군수관리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세수비누·치약 등 일용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현액 288억 100만원 중 285억 6,5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군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용품에 대한 복지기금 수익금 감면 등 부족한 일용품 현금지급액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일용품 현금지급액은 월 5,010원이나, 실제 일용품 구매에 필요한 금액은 월 6,509원 수준으로 조사됨
- 군 마트 접근성이 떨어지는 GP·GOP 등 격오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용품을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18~119.

11

교육용 탄약 확보의 적정성 제고 (군수관리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사격훈련을 위하여 교육용 탄약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 3,582억 7,100만원 중 3,529억 4,0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부는 탄약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및 최저생산요구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120mm 도비방지탄 2,857발 확보를 위하여 40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업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전액 미집행됨
- 국방부는 탄약 비축 산정기준 변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120mm 날개안정 철광예광탄 연습탄 확보를 위해 3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탄약 비축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탄의 수요가 감소하여 전액 미집행됨
- 교육용 탄약 재고를 고려하여 탄약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군 5.56mm 보통탄은 2015년 초 330만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 물량 374만발 보다 많은 934만발을 확보하여 2015년 말 829만발을 보유하게 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20~121.

12

소프트웨어 자산인식 오류문제 개선 (정보화기획관실)

가. 현 황

-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자산가치는 2015년 연초 915억 1,900만원이었으며, 연중 35억 1,700만원을 취득하고 641억 2,100만원이 감가상각되어, 연말 자산가치는 309억 1,400만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부는 2015년 개발 완료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154억 9,100만원과 상용 소프트웨어 취득비용 38억 2,500만원의 합인 193억 1,600만원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35억 1,700만원만 인식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가치를 과소평가하였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122.

13

국방전직교육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보건복지관실)

가. 현 황

- 국방부는 전역 예정 군인의 재취업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실시함
 - 일반회계 32억 500만원, 군인복지기금 30억 2,700만원 등 62억 3,2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전직교육원의 계획대비 교육 및 취업지원 실적 등의 성과가 미흡함
 - 기업과 군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구인구직만남행사는 10,000명의 참석인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참석인원은 5,476명이며 이 중 241명만이 취업에 성공하였음
 - 그 밖에 주문식 교육, 진로지도, 유망창업업체 현장탐방, 권역별 취·창업 설명회, 군 전직지원 초청간담회, 진로교육, 중기 전직기본교육의 계획 대비 실적은 각각 13.7%, 34.7%, 43.5%, 65.0%, 69.5%, 83.1%, 86.5%로 성과가 저조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23~124.

II

방위사업청

【주요 현안 분석】

1

방위력개선사업의 연부액 현실화 필요 (공통)

1-1. 한국형기동헬기 사업의 연부액 지급계획 부적절(한국형헬기사업단)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군이 운용중인 헬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를 위하여 2012년 6월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체계개발을 완료하였고, 2012~2023년간 총사업비 6조 521억원을 투자하여 한국형 기동헬기 양산 추진
 - 2015년에는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사업 예산현액 3,630억 9,600만원 중 3,368억 3,1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미흡
 - 국회는 방위사업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시 「한국형기동헬기」 사업의 연부액이 부족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연부액을 현실화할 것을 시정요구
 - － 방위사업청은 2015년 12월 말 동 사업의 수정계약을 통하여 연부액을 510억원 증액하였으나, 2016년 연부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여 연부액 지급일정을 현실화하라는 국회 지적사항을 이행 완료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미흡
- 방위사업청의 연부액 지급계획은 업체에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납품 일정과 연부액 편성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 필요
 - 계약서 상 한국형기동헬기는 2017년 말까지 납품 완료 예정이나, 방위사업청은 납품 종료 이후인 2018년 예산에 3,769억원(전체 계약액 1조 7,137억원의 약 22%)을 계획

1-2. 전투근무지원정 연부액 과소편성으로 인한 차년도 예산 압박 및 업체 부담 심화 (함정 사업부)

가. 현 황

- 내용연수가 도래한 다양한 형태의 전투근무지원정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정」 사업 수행
 - 2015년 예산액 556억 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 100만원, 이·전용액 39억 1,1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661억 1,600만원 중 639억 4,3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구매대상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연부율을 설정하고, 영세 선박업체에 대한 잔금 지급 및 노후 전투근무지원정 교체를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
 - 2015년에 계약한 계류지원정, 항무지원정에 대한 초년도 연부율이 1~2%, 차년도 잔금 지급비율이 98~99%에 달하는 등 업체가 비현실적인 연부액을 감수하는 상황
 - 초년도의 낮은 연부액 설정은 곧 차년도의 예산 부담으로 직결되어, 차년도 신규사업의 초기 연부액을 또다시 적게 편성하는 악순환 유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32~136.

2

절충교역 현황 및 개선방안 (획득기획국)

2-1. 절충교역 제도의 전략적 활용 필요

가. 현 황

- 절충교역(Offset Trade)은 국외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 및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의미
 - 2015년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가치는 총 10.51억 달러(USD)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절충교역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민수(民需) 분야 수출가치를 총 수출가치 중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2015년 절충교역의 전체 수출가치 중 민수품 수출가치 비율이 75.3%로 급증하여 ‘기술 획득(2억 달러)’과 ‘장비 등 획득(1.21억 달러)’을 압도

2-2. 절충교역 이행관리 출장 개선 필요

가. 현 황

- 「절충교역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25조에 따라 절충교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실시(2015년 총 8건)
 - 해당 출장비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총 절충교역 가치에 포함된 형태로 실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 필요
 - 해당 출장비에 해당하는 가치가 총 절충교역 가치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절충교역 가치가 줄어들 가능
 - 출장비 산정 기준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상 여비 기준 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37~141.

3

국외근무(주미 국제계약지원단,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국외사업 현장감독관(PMO) 운영 내실화 필요(공통)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개별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27명에 대한 운영예산을 편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MO 운영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운영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 2015년 총 9개 사업에서 국외 PMO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개 사업(광개토-III Batch-II, 공중급유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에서 PMO 미파견
 - 2015년 하반기 청 종합감사에서 PMO가 근무하는 국외사업관리실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통한 보고 부실 및 휴가관리 부적절 등 지적

3-2.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파견제도 개선 필요(국제계약부)

가. 현 황

- 「계약관리」 사업에서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수송업무 현지 협상 지원 등을 위한 「주미 국제계약지원단(9명)」 운영
 - 예산액 12억 6,800만원 중 12억 2,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는 국외구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외국정부’에 파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자 9명 중 6명은 워싱턴 D.C. 소재 방위사업청 소유의 건물에서 근무하므로 개선 필요
- 파견대상을 군인으로 제한하지 말고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보유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42~146.

4

연평도 포격에 대응한 긴급소요 사업의 획득 지연 (지휘정찰사업부)

4-1. 전술비행선 소요 삭제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2011~2015년간 213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서북도서 감시를 위한 「전술비행선」 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15억 8,300만원이었으나 5,3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긴급소요 사업 선정 및 추진 시 신중한 접근 필요
 -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긴급소요로 제기된 「전술비행선」 사업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계약업체의 계약 포기 등 지속적인 사업 지연으로 2016년 2월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소요를 삭제

4-2.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 사업의 전력화 지연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2014~2017년까지 182억원을 투입하여 신세기함(해양정보함)의 정찰용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비행기)를 도입하는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사업」을 추진
 - 2015년에는 예산액 77억 9,7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4억 7,900만원에서 타 사업으로 45억 1,500만원을 조정하고 남은 예산현액 37억 6,100만원 중 8,5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0년 10월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긴급소요로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무기체계 미확보
 - 감사원 감사 및 입찰 참여업체 구매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으로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및 전력화시기 연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47~151.

【개별 사업 분석】

1

저장탄약신뢰성평가(ASRP) 계획 대비 평가실적 저조 (국방기술품질원)

가. 현 황

- 「저장탄약신뢰성평가(ASRP: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는 저장탄약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계속사용, 정비, 폐기 등을 판단하는 업무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2015년에는 ASRP 예산액 51억 1,000만원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방기술품질원의 탄약 신뢰성평가 시험능력 보강 필요
 - 일반탄약 중 군 자체시험 대상을 제외한 평가대상은 총 8,013로트이나, 실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 가능한 평가대상은 확산탄 등을 제외한 5,709로트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52~154.

2

시험연구비 통제 강화 필요 (공통)

가. 현 황

- 시험연구비(210-13목)는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국내·외여비, 연구개발비 등 10개 경비를 통합한 성격의 비목
 - 2015년 방위사업청 소관 세출예산 11조 140억원 중 시험연구비는 총 99개 세부사업에 109억 900만원 규모로 편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험연구비 규모 및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 법령 개정 및 예산 설명 출장비 집행, 다른 사업의 예산 부족액 대체, 일반적인 국외출장 시행 등 시험연구비의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경비는 분리하여 편성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55~156.

3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 추진 지연 및 총사업비 증액 소요 발생
(항공기사업부)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2013~2021년간 F-15K 전투기 등 항공기 12종의 위성항법장치인 GPS의 전파교란(jamming)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 36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5억 9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92억원 중 1억 4,700만원만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 확정 이후 작전운용성능(ROC) 수정, 자발적 클리닉 감사 실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3년 연속(2013~2015년) 집행을 저조
 - 2013년 예산액의 99.6%, 2014년 예산현액의 91.9%, 2015년 예산현액의 91.8% 이월
- F-15K 전투기 체계업체인 미 보잉사의 사업비 추가 증액요구 발생
 - F-15K 성능개량과 관련된 타 사업과 통합 발주하는 등 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총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57~158.

4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지연에 따른 타 사업의 연쇄적 지연 (지휘정찰사업부)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2015~2023년간 5조 3,795억원을 투입하여 현 운용 중인 전술통신체계(SPIDER)를 대체하는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을 추진
 - 2015년 연구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243억 500만원 중 242억 9,200만원 집행, 양산 사업은 예산액 400억원 중 396억 9,1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전투무선체계) 개발 지연에 따라 연계되는 타 사업의 집행실적 또한 저조
 - 차기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 지상전술C4I 2차 성능개량
- 개발이 정상 종료될 경우, 신속한 양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59~160.

5

**2014년에 종료된 지하시설파괴폭탄 사업의 조정·증액 집행 부적정
(유도무기사업부)**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2007~2014년간 699억원을 투자하여 개전 초기 지하에 위치한 핵심전략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지하시설파괴폭탄을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로 확보 추진
 - 2014년 1월 주장비 도입 완료 후 2015년 2월까지 수리부속 등 도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FMS 추가 구매계약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2014년 별도의 예산액 없이 2013년에 이월된 2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미 정부에 이미 송금한 금액 중 잔여액(약 200만 달러)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4년 7월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
- 사업은 2014년에 종료되었으나, 납품 지연에 따라 2015년 타 사업 예산에서 운송료 등 2,600만원을 조정하여 집행
 - 사업추진 과정 간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급적 해당 사업기간과 부대비용 집행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61~162.

6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 소요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기동화력사업부)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병력 위주의 현 경계체계를 ‘병력+과학화경계시스템’이 통합된 경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을 추진
 - 2015년 신규사업으로 최초 예산액은 1억원이었으나, 7억 9,200만원의 전용(증)을 통하여 7억 1,800만원(예산액 대비 718%)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설계비 부족으로 본예산의 7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타 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 하였으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163.

7

부대개편 사업 추진계획 내실화 필요 (기동화력사업부)

가. 현 황

- 부대개편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0개 사단을 미래 사단구조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는 개별 세 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부터 「부대개편 1차」 사업으로 통합
 - 통합된 사업 규모는 2015년 예산액 기준 122억 4,7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간부숙소 등의 추가 요구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는 등 최초 계획이 부실하였고, 개별 사업 집행률 또한 저조
 - 부대개편 사업의 전체 규모와 세부계획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중도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64~167.

8

방산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비목 변경 등 집행방식 개선 필요(방산기술통제관)

가. 현 황

- 방위사업청은 「기타 행정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산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방산 중소기업의 통합보안시스템(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
 - 2015년 5,000만원을 계획하여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임차료(210-07목)를 지급하고 산업기술보호협회가 통합보안장비를 이용하는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
 - 임차료는 방위사업청이 직접 해당 장비를 임차할 때 집행하는 비목이므로, 임차료가 아닌 보조금(320목)으로 변경할 필요
- 2015년 예산으로 2016년의 임차료까지 보전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 위배
 - 사업기간(해당 회계연도)과 협약기간을 일치시켜 집행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68~169.

III

병무청

【주요 현안 분석】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충역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방안

1-1. 보충역 소집적체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사회복무국)

가. 현 황

- 병무청은 보충역의 합리적인 인원 배정 등을 통해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 예산 117억 1,900만원 중 114억 9,6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병무청은 심화되고 있는 보충역 소집적체 현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현역병 입영요건을 강화한 결과, 보충역 처분율이 2014년 5.4%에서 2015년 9.0%까지 증가하였음
 - 소집되지 못한 보충역의 수는 2016년 2만명에서 2020년 4만 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2.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폐지 관련 신중한 논의 필요(사회복무국)

가. 현 황

- 병무청은 2만 3,256명의 산업지원인력을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 3억 7,3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업지원인력제도 폐지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와 병무청은 향후 발생할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지원인력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산업계와 학계는 이에 대하여 반대함
- 산업지원인력제도 폐지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76~179.

【개별 사업 분석】

1

병역면탈 등 적발의 정확성 제고 필요 (병역자원국)

가. 현 황

- 국방부는 병역면탈행위의 적발 및 예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와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해 1억 4,6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특별사법경찰과 확인신체검사의 적발 정확성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적발 사건(종결사건) 중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은 2013년 82.2%, 2014년 54.1%, 2015년 46.7%로 하락하고 있으며,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위가 상향된 사람의 비율은 2013년 14.3%, 2014년 9.5%, 2015년 9.1%로 하락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p.180~181.

2

인도·인접제도의 필요성 재검토 (입영동원국)

가. 현 황

- 현역병 인도(引渡)·인접(引接)제도는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병적관리 권한 및 책임을 입영부대로 인계하는 행정절차임
 - 병무청은 인도·인접을 위해 2015년 1,062회 출장을 실시하였고, 1억 4,200만원을 집행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인도·인접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함
 - 병역비리의 감소와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 및 병적 관련 문서의 전자적 이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인접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182.

3

현역병 입영 후 귀가 비율 증가의 개선 필요 (입영동원국)

가. 현 황

-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사업을 수행함
 - 현역병 입영자 11만 9,111명 중 7,140명이 귀가처분을 받아 11만 1,971명만이 최종 입영하였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입영 후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일관성 있는 입영 후 귀가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입영자 중 신체·심리 상 문제로 귀가처분을 받은 자의 비율은 2013년 3.5%, 2014년 3.4%에서 2015년 6.0%로 급증함
 - － 병무청은 입영 부대에서 지휘부담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문제에도 귀가처분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과도한 입영 후 귀가처분은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군 신체검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일관성 있는 귀가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p.183.

제9장

안전행정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재정 보완대책 및 재정건전성 제고정책의 개선과제 (공통)

1-1. 자치구 재정압박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

가. 현 황

- 2013~2014년 지방재정 보완대책의 지방재정 세입 확충효과는 3조 3,523억원
 - － 세입증가의 53.4%(1조 7,899억원)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군은 42.6%(1조 4,291억원), 자치구는 4.0%(1,333억원)로 배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정압박에 처해있는 자치구에 지방세입 증가의 4%만이 귀착될 것으로 전망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및 산정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1-2.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정책의 보완과제

가. 현 황

- 정부는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등을 추진할 계획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군 조정교부금을 개선할 예정이지만, 시·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 배분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한계
- 법인분 지방소득세 공동세화 추진은 지방세의 기본원리인 응익(應益)의 원칙(benefit principle)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필요

1-3.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가. 현 황

-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자치단체 재정위기 발생 시,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여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정위기단체 제도시행(2011년) 이후 주의단체 지정이 임의적이고 지정 건수도 적어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 실효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
 - 243개 자치단체 중 4개 단체가 주의단체로 지정될 상황임에도 4년 동안 지정되지 않아서 재정위기단체 지정의 실효성이 미흡
- 주의단체 지정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주의'단체로 지정되도록 개선 필요

1-4. 순세계잉여금의 회계처리 및 재정공시제도의 개선필요

가. 현 황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자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려서 결산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재정공시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자체 재정현황과 재정건전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과소편성이나 불용액의 과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재정활동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1-5. 비효율적인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제도의 개선필요

가. 현 황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중 평균 2~3차례에 걸쳐서 당초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을 편성
 - 추경증액 규모는 2011년 15.3조원, 2013년 20.1조원, 2015년 26.7조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의 추경증액 규모는 26.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추경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추경편성 요건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추경편성은 필수 세출소요와 재원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빈번한 추경편성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재원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7~22.

2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전자정부국)

2-1. 전자정부 대국민 창구의 통합적 운영 필요

가. 현 황

- 중앙행정기관들은 각기 정책정보 제공, 민원신청 등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운영중
 - 정책정보 제공 포털: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책브리핑, 경제혁신포털 등 7개
 - 민원신청 및 제안 포털: 민원24,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7개
 - 복지·일자리 정보제공 및 신청 포털: 워크넷, 창업넷 등 3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격과 유형이 비슷한 정부 포털이 난립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전자정부 대국민 창구로서의 역할이 미흡
-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신청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을 가능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전자정부 민원업무 신청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2. 행정자치부 시스템 위주의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개선 필요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민원24(민원발급)」, 「대한민국정부포털(정책정보)」, 「알려드림e(수혜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대한민국행정포털」을 2016년까지 구축할 계획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구축은 행정자치부의 3개 시스템만의 통합으로서 복지·노동·교육과 같은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통합적 운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타 부처가 운영중인 복지로(보건복지부), 워크넷(고용노동부), 기업마당(중소기업청), 네이스(교육부), 홈텍스(국세청) 등과 구체적인 통합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2-3.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의 집행상의 문제점

가. 현 황

- 정부는 20여 개 신고전화운영 기관의 전화번호를 119, 112, 110으로 단순화하고, 54개 상황실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2015년 예산으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연도 중 예비비 46억 7,600만원을 편성·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안전처는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집행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은 BPR/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
- 당초 예비비의 명세서와는 다르게 ‘긴급신고전화 공동관리센터 신규 설계용역’에 집행

2-4.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추진과 전자정부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와 관련된 직접사업비 이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집행
 - 2015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관리비 내역은 사업운영비 19억 2,500만원, 교육비 3,600만원, 용역비 13억 1,800만원, 비정규직 보수 8억 1,600만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정자치부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 등에 관리비를 집행
 - ‘정부3.0 체험마당’ 행사의 기관별 분담금 3억원을 지출,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자정부 수출통계 관리개선으로 각각 1,700만원과 3,000만원을 집행
-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사업계획을 예산서에 명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5.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의 법령상 근거 필요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3억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9억원 등을 집행
 - 행정자치부의 위탁사업이지만, 지방사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일정 정도 투입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 중 일부는 전문기관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출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자체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비율 산정의 뚜렷한 근거가 없음
- 지자체 전자정부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전문기관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

2-6. 공무원 활용성이 미흡한 모바일 전자정부의 개선 필요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확충 및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구축」 사업을 추진
 - 출연금으로 집행되며, 2015년 집행액은 22억 100만원이고, 실집행액은 17억 6,6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바로일터)의 공무원 활용성 미흡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설치한 단말기의 수가 현장행정용 9,728대, 내부행정용 4,690대 등 총 14,418대에 불과
- 공무원전용 메신저인 바로톡은 공무원 활용성이 미흡하고 보안성 강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방향을 재설정할 필요
 - 바로톡의 사용자수는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20,133명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23~38.

3

정부 3.0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창조정부조직실)

3-1. 정부 3.0 대국민 인식도 제고 미흡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정부 3.0 변화관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부 3.0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
 - 2015년 정부 3.0 추진 홍보비 집행액은 총 4억 4,672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년여 동안 추진된 정부 3.0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 3.0 추진이 기존에 추진되어 온 행정혁신 추진과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2015 정부 3.0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 3.0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8월 조사에는 64.9%, 12월 조사에서는 52.8%
 - 국민들은 정부 3.0의 3대 전략 중 ‘투명한 정부 실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

3-2. 중앙행정기관 원문공개율 저조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수행하는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7억 5,000만원, 집행액은 7억 4,0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8개 중앙행정기관의 등록건수 대비 원문공개율이 평균 43.2%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수준으로는 다소 미흡
-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뚜렷한 근거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동일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개하고 있지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보훈처 등은 비공개로 처리

3-3. 정부 3.0 컨설팅단과 국민디자인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정부 3.0 변화관리 지원」사업의 내역으로 ‘정부 3.0 컨설팅·평가단 운영’ 1억 3,200만원, ‘국민디자인과제 연구용역’ 4억 9,3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3.0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실효성이 낮은 집합식 집중컨설팅을 추진
 - 대규모 동원식 교육을 수행하여 컨설팅이라기 보다는 행사성 홍보사업에 가까웠음
-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였지만, 활동기간과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서 제안된 사항이 ‘홈페이지 개발 및 앱서비스 개발 제안’ 등 대부분 홍보개선 및 추가기능 개선 제안이 많았음

3-4. 국가중점개방데이터 개방의 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가중점개방데이터 11개 분야를 개방
 - 2015년 예산액은 198억 5,600만원이고 집행액은 196억 7,4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부터 개방하기 시작한 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경우 2016년 4월 말 현재까지 민간활용실적이 부진
 - 조세, 관세 등 민간활용성과 연계성이 높은 데이터가 개방에서 제외되었고 미래유망산업과의 연계성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음
- 행정자치부는 데이터개방의 민간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간 시너지와 미래 신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체계적인 개방계획을 수립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39~53.

4

지방교부세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지방재정세제실)

4-1.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배분기준의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
 - 2015년에는 150억원을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이 「국가시책 특별교부세」로 지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평가항목과 중복
-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국가시책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도를 가급적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지급기준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

4-2. 특별교부세 연도말 집중집행의 문제점

가. 현 황

- 행정자치부의 지자체의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와 국가장려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현안특별교부세와 국가시책특별교부세를 운영 중
 - 2015년에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로 3,950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987억원을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정자치부는 지역현안은 전체 재원의 64.7%, 국가시책은 72.8%를 연도말(11~12월)에 교부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였음
-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 지원에 대하여 사업선정과 타당성 검토 및 사후 평가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 희망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국가사업임에도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교부세로 추진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54~60.

5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공통)

가. 현 황

-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요인과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환경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환경부는 위해성평가 및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일부 업무를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업무 성격상 환경보건과 관련된 역학조사대응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국민생명보호,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
 - 보건복지부가 환경보건 업무를 수행하면 즉시 의료기관과 협조할 수 있어 시간적 효율성이 환경부가 환경보건 업무를 할 때보다 개선될 수 있음
 - 환경부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역학조사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 13곳 중 대부분이 의료기관이어서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어려움
- 국민생명보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환경성질환·원인미상 질환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환경보건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부처간 업무·조직의 이관에 관한 조정 사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61~63.

【개별 사업 분석】

1 법·제도 개선 위주의 개도국 대상 공공행정컨설팅의 추진 필요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개발도상국의 공공행정개선을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공공행정컨설팅」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현액은 2억 7,700만원, 집행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에 각각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과 이러닝 도입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도국(혹은 수원국)의 행정조직의 조직진단, 공무원역량 강화,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구축과 같은 분야에 컨설팅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64~65.

2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업의 일부 내역의 성과 미흡 (지방행정실)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 2015년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8억 2,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7억 6,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5억 8,200만원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개 국민운동단체가 정부 보조금으로 추진한 일부 사업은 회원위주의 집단 특강 방식으로 진행하여 사업의 성과가 미흡
 - 특강위주의 사업은 교육개최 횟수와 참가자수는 많을 수 있지만 교육 참가자에 대한 사후 실천과 평가결과 반영은 미흡하여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66~67.

3

「지역발전활성화」사업 일부 내역의 성과 제고필요 (지방행정실)

가. 현 황

- 행정자치부는 지역발전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활성화 정책을 도모하는 「지역발전활성화」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현액은 5억 6,700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3,4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정자치부가 「지역발전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일부 행사 사업들은 내용면에서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
 - ‘지역희망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는 향토자원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사
- 지자체 공모사업이면서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골목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68~69.

4

초과승인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지방행정연수원)

가. 현 황

-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인재의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연수원 수입대체경비」사업을 추진
 - 예산현액은 70억 7,900만원, 집행액은 67억 1,9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정자치부는 예산을 매년 과소편성하여 연도 중 초과지출 승인이 연례적으로 발생
 - 2013년 이후 교육과정 수요 증가로 초과지출 승인액은 계속 증가, 예산액은 계속 감소
-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승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70~71.

II

인사혁신처

【주요 현안 분석】

1

지속가능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인재개발국)

가. 현 황

- 인사혁신처는 국가시험관리를 위해 「국가시험시행」사업을 추진
 - 5·7·9급 공채 및 민간경력자 5·7급,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등을 추진
 - 2015년 예산현액은 104억 9,700만원, 집행액은 103억 6,200만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일·가정 양립과 고용률 70% 로드맵’(13. 6월) 달성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2014년부터 도입
 - 2015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353명을 채용, 30대 이상이 303명(85.8%), 여성채용인원이 274명(77.6%)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합직무 개발과 성과평가의 개선 등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
 - 2015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담당업무가 민원성 수행 업무가 비교적 많았음
 - 채용 중앙부처는 경찰청(교통 과태료 징수업무 등 30명), 관세청(출국여행자 휴대품 통관업무 등 25명),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등 25명) 등이 많았음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직무에 채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 적합직무를 개발하여 실제 해당 직무를 전담하게 할 필요
 - 직무수행시간에 비례적으로 적용받는 현행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승진 및 성과평가 체계를 직무의 난이도와 전문성을 토대로 적용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79~82.

2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인사혁신국)

가. 현황

-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에 대한 우수 민간 인재의 영입을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현액은 8억 8,300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 3,000만원
 -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후보자의 선발 및 추천과 개방형 직위 재지정 등의 권고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설치·운영되며, 2014년 7월 출범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은 전원 민간전문가이며, 주요 기능은 개방형직위 공모(서류 전형, 심층면접 등)와 후보자 복수(2~3배수) 추천을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이후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민간임용 비율이 평균 26.3% 수준에 머물러 민간임용 실적이 미흡
-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비롯한 제도보완 필요
 - 현행 규정상 개방형 직위의 지정은 소속 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내 이해관계를 배제한 독립적인 개방형직위의 지정과 공모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 개방형 직위 지정과 충원을 소속 부처와 독립적으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83~85.

3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통합관리 필요 (인사혁신처)

가. 현 황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하여 국익 등을 반영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ODA)」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158억 6,200만원
 - 2015년에는 OECD, IBRD 등 26개 국제기구의 65개 직위에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를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85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음
- 16개 중앙부처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자체 국제 부담금 예산 등을 통해 2016년 3월 현재 55개 직위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개 중앙부처는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한 인건비성 국제부담금을 해당 부처의 사업예산에 편성, 이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어긋남
 -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공무원임용규칙」상 신청 방법, 복무관리, 성과평가 등 여러 통제 절차를 회피하게 되어 성과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인사혁신처 고용휴직의 통합관리 필요
- IDB, ILO 등 일부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직위 중 일부는 수행업무가 직무파견의 수행업무와 서로 유사하여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의 수행업무를 엄밀히 분석하여 직무파견과 유사할 경우 직위를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86~89.

【개별 사업 분석】

1

위탁교육과정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인재개발국)

가. 현 황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공무원교육훈련」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현액은 479억 7,800만원, 집행액은 459억 1,6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의 내역으로 추진된 대학원 위탁교육, 국내대학 위탁교육, 외국어 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등은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
 -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위탁교육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세종시 및 충청권 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강화와 교육기관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90~91.

2

초과승인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인재개발국)

가. 현 황

- 인사혁신처는 출제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하는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 10억 6,500만원, 이·전용 등(초과지출 승인)인한 예산현액은 20억원, 집행액 19억 8,6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여 연도 중 초과지출 승인이 연례적으로 발생
 - 초과지출승인액: 2013년 1억 300만원, 2014년 8억 4,700만원, 2015년 10억 6,500만원
 -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승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92~93.

3

예비비 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필요 (기획조정관)

가. 현 황

- 인사혁신처는 정책연구를 위해 「정책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1억 8,000만원, 예비비는 4억 5,000만원, 예산현액은 6억 3,000만원, 집행액은 4억 5,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200만원
 - 총 17건의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였고 이중 12건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사혁신처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연구용역 과제를 예비비로 집행하여 예비비 편성원칙에 어긋났음
 - 연구용역과제가 ‘지수개발’, ‘평가모델 연구’, ‘미래백서 발간’ 등으로 대부분 시급성이 떨어지는 제도연구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였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94~95.

4

기금수익 충당금의 범위와 규모의 법령상 근거마련 필요 (공무원연금공단)

가. 현 황

-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부터 여유자금운용·주택사업·시설운영사업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수익의 일부를 공무원연금의 수지차 적자보전금에 충당하고 있음
 - 2015년 기금수익 충당금은 1,283억원이고 2016년은 672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무원연금 기금수익의 일부분을 적자보전을 위한 충당금으로 전입시켜야 하는 조건을 관계법령에 규정할 필요
- 기금수익 충당금의 범위와 규모를 규정하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96~97.

III

경찰청

【주요 현안 분석】

1

무인단속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획조정관, 교통국)

1-1. 과태료 결손시효불납액 과다의 개선방안

가. 현 황

-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및 세입 시효(5년)경과 결손시효불납액 과다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결손시효불납액은 총 1,946억 5,4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습적 과태료 체납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교통질서 확립 필요

1-2. 속도위반 무인단속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가. 현 황

- 속도위반 무인단속장비 구매 수량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증가
 - 2015년 무인단속장비 415대 구매, 과태료 징수결정액 1조 6,097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통경찰관에 의한 현장단속 확대 필요
 - 교통법규위반단속의 80%이상이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실시

1-3.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가. 현 황

- 무인단속교통장비 1식(카메라부, 제어부, 철기둥)으로 구매·운영
 - 2015년 예산 994억 9,700만원 중 866억 6,000만원 집행
 - － 2015년 과속단속장비 현황(과속 2,403대, 다기능 2,812대, 구간 141대 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무인단속장비의 카메라부 등 핵심부분 자산관리 강화 필요
-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통신보안장비는 정보시스템이므로 정보화사업으로 추진 필요

1-4. 체납차량 현장적발 시스템 운영의 개선방안

가. 현 황

- 체납차량 현장적발 시스템 운영에 3억 3,300만원 집행
 -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목적
 - － 7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전북)에 현장적발 차량 배치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체납차량 현장적발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추진 필요
 - 단속대상이 아닌 차량의 촬영·검색에 대한 운영 원칙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06~115.

2

도로 차선 시인성(視認性)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교통국, 도로교통공단)

가. 현 황

- 2013년부터 경찰청 소관 예산에 도로차선 관리 경비 미 반영
- 도로차선 반사성능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인성 부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로차선의 반사성능 설치 시 기준 시점 재검토 필요
- 교통사고가 잦은 곳 등 반사성능 강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16~119.

3

경찰인력 운용의 문제점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가. 현 황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 명 경찰인력 증원 추진
 - 2016년 1월 현재 경찰공무원 정원 113,077명, 현원 114,701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본청 및 지방청 경감이상 인력증원 비율 격차 감소 필요
-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대책 필요
 - 불용액 본청 2,568억 4,000만원, 지방경찰청 869억 4,800만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20~123.

4 지역치안 개선사업 통합적 기준 필요 (생활안전국)

가. 현 황

- 2015년 주요 지역치안인프라 구축 경비 집행 현황
 - 기동순찰대(24억 100만원), 방범용 CCTV(27억 1,400만원), 순찰차량(235억 1,0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치안인프라가 편중되지 않도록 통합적 기준 마련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24~127.

5 범죄수사분석시스템 통합 운영 필요 등 (수사국, 과학수사관리관)

가. 현 황

- 수사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수사분석시스템 신규 추진(2015년 예산액 9억 2,000만원)
- 범죄증거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도입(2015년 예산 29억 2,3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찰수사관련 전산사업을 2011년부터 통합하고 있으므로 별개 수사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개선 필요
- 범죄증거 입증에 중요한 범죄감식장비 도입에 관한 사전 심의 절차 강화
 - 범죄감식 및 증거 확보에 직접 사용되는 범죄감식 장비의 중요성 고려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28~130.

6

경찰장비현대화 사업 운영 개선과제 (정보화장비정책관)

6-1. 분산 편성되고 있는 피복비의 통합 필요

가. 현 황

- 「피복관리」사업 외에 다른 7개의 사업 피복비 편성
 - 경찰청 총 피복비 712억 2,600만원

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총 피복비 증가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에 분산 편성된 피복비를 「피복관리」사업의 피복비로 통합편성 필요
 - 「피복관리」사업의 피복비 551억 5,900만원, 기타 사업의 피복비 164억 2,900만원

6-2. 희망품목 신청에 의한 피복비 집행의 개선방안

가. 현 황

- 경찰관 피복·장구류 등을 신청 받아 보급하는 ‘희망품목신청·보급’ 사업 운영
 - 2015년 희망품목사업비 315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희망품목사업의 근거는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시행규칙」에 있으나 희망품목 지급기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규정 마련 필요
- 희망품목 신청에 필요한 배정 포인트의 이월사용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31~134.

【개별 사업분석】

1

광역교통정보수집 사업 시정조치 점검 및 향후과제 (교통국)

가. 현 황

-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UTIS)사업 국회 시정 요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 2015년 예산액 156억 8,800만원, 집행액 55억 6,5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UTIS사업은 민간의 교통정보산업 활성화로 민간과 중복 또는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확대 재추진이 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 필요
- 대규모 교통장비 개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35~137.

2

관광경찰대 운영 기준 명확화 필요 (외사국)

가. 현 황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수사검문을 위해 관광경찰대 운영(3개 부대, 160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광경찰대 운영 근거 필요
- 2015년 관광경찰대 피복비 집행은 복제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복류 지급품목 등 관리규정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38~141.

3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토지매입비 집행의 문제점 (기획조정관)

가. 현 황

- 청사시설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토지매입비 자체전용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유재산관리 일원화 취지를 고려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토지 매입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42~143.

IV

국민안전처

【주요 현안 분석】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연차별 사업 계획 수정 고려 필요 (재난관리실)

가. 현 황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대형재난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
- 2015년에는 평창·강릉·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 예산현액 470억원 중 102억원을 집행하고 24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25억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고 이월 발생
 - 2017년까지 동 사업을 완료겠다는 초기 목표 수정 필요
- 총 사업비 규모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시범사업 실시 결과, 상용망과의 연계 등 사업비 추가 소요 가능성이 제기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52~153.

2

함정 유류비 및 공공요금 사용 문제 (해양장비기술국, 해양경비 안전국)

2-1. 함정 유류비 미지급금 발생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함정유류구입 사업은 경비함정 운항에 필요한 유류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대금은 월별로 지급
 - 2015년 예산액은 1,016억원이며 이 중 953억원을 집행하고 63억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5년간 매년 유류비 미지급이 발생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미지급금을 결제하는 상황이 반복 되고 있음
 - 2015년에는 지급해야할 유류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
- 예산 편성 시 유류 사용량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각 함정의 유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유류구입비 절감방법 모색 필요

2-2.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이용 연례적 반복 개선 필요

가. 현 황

- 지방관서 기본경비는 지방해양경비 안전본부(5개) 및 해양경비 안전서(17개) 등 지방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공요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무분별한 이·전용 발생
 - 공공요금 부족은 함정정박시 육상전기 사용량 증가 때문
- 함정 정박시 육상전기 사용량을 고려하여 공공요금 적정 편성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54~156.

【개별 사업 분석】

1

**사유재산 피해복구예산 과다 편성 및 부적절한 전용 집행 개선 필요
(재난복구정책관실)****가. 현 황**

- 사유재산 피해복구 예산은 재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
 - 이전에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2011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 2015년 예산액 300억원 중 3억 8,6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에서 국민안전처 세종청사이전 사업으로의 전용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57~158.

2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전신문고 집행 개선 및 기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안전정책실)****가. 현 황**

- 안전신문고 시스템은 생활 주변 안전 취약 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목적으로 구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전신문고 유지 관리 비용을 서로 다른 두 사업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 안전신문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59~160.

3

재난관리 전문인력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재난관리실)

가. 현 황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방재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61~162.

4

방재실험시설 구축 사업의 지출원인행위 없는 자산취득비 이월 시정 필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가. 현 황

- 방재실험시설 구축 사업은 재해원인규명을 위한 실험시설을 설치하고 실험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 － 예산현액 225억원 중 162억원을 집행, 49억원 이월, 14억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실험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국민안전처는 가능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이월할 경우에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유의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63~164.

5

수색구조 역량강화사업에서 예비비 이월 및 비목편성 오류 시정 필요 (해양경비안전국)**가. 현 황**

- 수색구조 역량강화사업은 해상안전관리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수색구조 합동훈련, 해상구조장비 도입 등을 수행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비비를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인명구조 필수적 대응 장비 확보를 목적으로 예비비 배정
 - 연도 내 시급한 집행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요구하고, 배정받은 예비비는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비목편성 오류에 따른 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편성시 주의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65~166.

6

연안구조장비 도입 사업의 집행을 제고 필요 (경비안전국)**가. 현 황**

- 연안구조장비 도입 사업은 연안 구조정 등 연안해안 구조 장비 확보를 통해 해상 재난 구조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 이월 방지 필요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매 장비의 단가 및 수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67~168.

7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방제정 건조 사업 예산 편성 필요 (해양오염 방제국)

가. 현 황

- 방제정 건조 사업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방제 전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2015년에는 대규모 이월 발생
 - 2015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22.7%에 불과. 예산현액의 72.5%에 해당하는 27억원이 이월
-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예산 반영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69~171.

8

추경예산이 편성된 종합훈련탑 신축 및 소방장비 구입 예산 집행실적 저조 (중앙소방본부)

가. 현 황

- 2015년 중앙소방본부 소관 사업에 총 145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 종합훈련탑 신축 공사 70억원, 다목적제독차 구입으로 75억원 편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
 - 145억원 중 3,300만원 집행(0.47%), 122억원 이월, 22억원 불용
- 추경편성의 목적 및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이월 및 불용 사태 방지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72~173.

9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마련 필요 (중앙소방본부)

가. 현 황

- 강원도 소방본부는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활동 후 복귀 도중 추락한 소방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헬기 도입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
 - 신규도입 헬기로 AW-139(아구스타웨스트랜드, 이탈리아) 기종을 179억원에 계약(2015. 11. 4)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헬기 도입 시 계약금액, 기능 적합도 및 향후 추가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소방헬기로서의 안전성과 기능 적합도를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국산 소방헬기 도입 적극 고려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74~175.

10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술 이전 성과 제고 필요
(안전총괄기획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가. 현 황

-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예측, 피해저감 등 안전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 예산현액 567억 9,500만원 중 488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6,4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체 28건의 기술 공개 및 이전 실적 중 기술 이전은 2건(7%)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성과로 보기 어려움
 - 최근의 수요 변화와 기술 동향 조사를 통한 재난안전기술개발 방향의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고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부는 기술 이전 활동에 의무적으로 편성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76~177.

11

풍수해보험사업 온실부문 가입률 제고 필요 (재난관리실)

가. 현 황

- 풍수해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예산현액 195억 500만원 중 117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77억 5,1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은 온실의 가입 실적 저조(전년대비 37.5% 감소)
- 온실의 풍수해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여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78~180.

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선거장비 보관경비를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 (선거국)

가. 현 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효율적인 선거사무관리를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관리」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10억 4,500만원, 예산현액은 15억 8,000만원, 집행액은 15억 1,400만원, 불용액은 6,6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에 사용되는 선거장비의 보관경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는데, 이를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단위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각종 선거장비의 보관·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선거가 있는 해외 선거관련 사업예산에 편성·집행
 - 2015년은 「국회의원선거관리」로 3억 8,000만원, 2014년은 지방선거관리 사업으로 5억 9,400만원을 집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도말 잔여예산을 당초계획에 없고 비목성격에 맞지 않으며,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음
 - 선거장비 보관경비 이외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5,000만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투표지 분류기 점검용역’에 5,000만원 등을 지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87~188.

2

재보궐선거관리의 연례적인 예비비 편성 지양 필요 (선거국)

가. 현 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교육감 선거 등의 재보궐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재보궐선거관리」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1억원, 이·전용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증액으로 예산현액은 49억 7,100만원, 집행액은 49억 5,700만원, 불용액은 1,4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의 본예산을 과소편성함으로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비비를 편성·집행
 - 본예산은 매년 9,700만원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편성액은 2013년 63억 5,200만원, 2014년 174억 2,500만원, 2015년 48억 1,000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의 예비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용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지침에 저촉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의 예비비 중 인건비(일용임금), 보전금(포상금등), 민간이전(연금지급금) 목의 예산 4,500만원을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목으로 전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으로 투표참여홍보단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과 중복되며, 성과가 미흡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89~191.

3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 필요(선거국)

가. 현 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82억 8,400만원, 예산현액은 81억 5,300만원, 집행액은 81억 6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그동안 재외선거관 파견, 재외국민 대상 계도·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수 대비 투표율이 부진하여 사업의 성과가 미흡
 -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4월)의 투표율(추정재외선거권자수 대비 투표자수)은 2.5%,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의 투표율은 3.2%
 - 재외공관수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58개였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69개로 늘어났음에도 추정재외선거권자수 대비 투표율은 0.7%p 증가
 - 등록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은 제19대는 45.7%, 제20대는 41.4%로 하락
- 추정재외선거권자와 등록 선거인수가 많은 아시아, 미주 지역의 투표율이 구주, 중동, 아프리카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주와 미주지역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92~193.

4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령상 근거마련 필요 (선거국)

가.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 및 민간 위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선거관리」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6억 2,500만원, 예산현액은 5억 7,300만원, 집행액은 5억 5,2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민간 위탁선거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특별정려금(特別精勵金)을 지급
 - 2015년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동안 위탁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 3억 3,600만원을 지급
 - 「선거관리위원회법」상 특별정려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위탁선거”에 대해서는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비의 세목을 조정하여 당초 계획에 없었고, 사업의 목적과 비목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집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비의 세목을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 프로그램개발’ 사업(1,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추진
 - 동 사업은 당초계획에 없었으며,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보다는 연구개발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94~196.

【개별 사업 분석】

1

터치스크린 투표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재검토 필요 (선거국)

가. 현 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의 전산화를 위해 「투개표선진화」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6억 8,200만원, 예산현액은 9억 2,100만원, 집행액은 8억 6,3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터치스크린 투표장비의 활용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전자투표의 공직선거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투표장비의 유지보수사업을 재검토할 필요
 - 2015년 터치스크린 투표지원 내역에서 선거인수 10,000명을 초과하는 선거는 2건이며, 총 71건 중 58건은 선거인수가 1,000명 이하인 소규모 선거에 활용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97~198.

2

홍보비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홍보국)

가. 현 황

-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 상시홍보 활동을 위해 「공명선거기반조성」사업을 추진
 - 2016년 예산액은 14억 8,100만원, 예산현액은 14억 5,900만원, 집행액은 14억 5,8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에 지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홍보 사업 이외에 사무실 운영 및 잡비(신문구독료, 도서구입, 프린터 토너 구매 등)에 지출하거나 소속 직원 퇴직준비교육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였으며, 소속 직원 워크샵(연찬회) 숙박비 등에도 지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199~200.

3

예비금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중앙선관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금」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4억 6,000만원, 예산현액은 4억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 5,0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앙선관위는 예비금의 대부분을 직원 격려금, 업무추진 활동비 및 각종 행사 개최 비용 등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하여 예비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예비금의 대부분을 소속 직원들의 축·조의금, 격려금, 업무추진 활동비, 간담회나 각종 행사 개최비용 등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
- 예비금 중 특정업무경비를 특정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도 지출
 - 공보과, 선거연수원, 총무과 등 수사·감사·예산·조사 등과 관련없는 부서에게도 특정업무경비를 재배정하여 집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201~202.

4

A-WEB 운영지원의 내실화 필요 (기획조정실)

가. 현 황

- 중앙선관위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활동지원 등을 위해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액은 16억 600만원, 예산현액은 16억 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억 9,900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WEB은 세계 10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임에도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부담하고 있어서 향후 회원국간 재정분담체계의 개선이 필요
 -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경비 중 선관위 지원금의 비중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pp.203~205.

제10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촌정책국)

1-1. 귀농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교육·상담·영농체험·주거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수행
 - 2015년 예산액은 144억 6,900만원이며, 전년이월액 65억원을 포함한 209억 6,900만원을 지자체 등에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귀농귀촌 가구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귀농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역귀농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
 - 2015년에 총 32만 9,368 가구가 귀농 또는 귀촌 (전년대비 6.2% 증가)
 - 귀농: 11,959가구, 귀촌: 317,409가구

1-2. 귀농귀촌교육 수료생의 정착률 추적 조사 필요

가. 현 황

- 「귀농귀촌교육」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귀촌교육을 지원
 - 2015년 예산액 29억 2,900만원 중 28억 3,8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귀농귀촌교육 수료생의 귀농귀촌 정착률은 9.1%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귀농귀촌교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귀농귀촌 교육생 수는 큰 변동이 없음

1-3. 지자체 준비 부족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연

가. 현 황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을 통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2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촌 적응을 돕고 농업 창업과정에 대한 실습 및 교육을 제공
 - 2015년 예산액은 40억원이며, 전년이월액 65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5억원을 5개 지자체로 교부
 - 지자체 실집행액은 45억 3,100만원이며, 59억 6,900만원을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지원대상 지자체를 2014년말에 미리 선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 전액 이월
 - 지자체로 교부되는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상황과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

1-4.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조속한 실시 필요

가. 현 황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귀농어·귀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15년 7월에 시행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5월말까지 귀농귀촌 현황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2016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계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0~17.

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촌정책국)

2-1. 어촌·산촌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수행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시·군·구가 신청한 신규사업의 경우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낙후도와 기존 지원내용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요구를 기재부에 제출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농촌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어촌과 산촌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농어촌에서 어촌의 인구수 또는 가구수는 약 5%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어촌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수 기준으로는 1.4%, 예산 기준으로는 1.0%
 -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시·군·구가 신청하는 신규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선정하는 구조이며, 사업시행지침도 농촌 위주로 구성되어있음

2-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의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시·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하여 기초인프라 및 특화발전을 위한 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군·구가 신청하는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시설물 구축 이후의 운영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시설물의 운영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됨 (150개 지구를 조사한 결과 61.3%에 해당하는 92개 지구가 부진지구로 구분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8~22.

【개별 사업 분석】

1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의 예산 산출 내역과 상이한 집행 개선 필요 (식량정책관)

가. 현 황

-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쌀의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현대화를 지원
 - 2015년 예산액 151억 9,500만원 중 151억 7,600만원을 집행, 낙찰차액 1,900만원은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의 예산안 심사시 제출된 산출 내역과 상이한 물량과 단가로 사업지침이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곡종합처리장 대상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규모는 개소당 9억원(30억원 기준 30% 지원)이나 사업지침은 12억원으로 시행되었으며, 실제로는 평균 14.87억원을 지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3~24.

2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경제성 검토 강화 필요 (유통소비정책관)

가. 현 황

-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사업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201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2015년 예산액 9억원은 3개 지자체에 3억원씩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선정시 경제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매출액이 1억 4,500만원인 곳에 5억 2,500만원(국비 3억원, 지방비 2억 2,5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자부담 2억 2,500만원 별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5~26.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사업 개선방안 (축산정책국)

가. 현 황

-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을 수행
 - 2015년 예산 3억원은 전액 성남시에 보조금으로 교부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별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황과 유기동물 발생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필요
 - 2015년의 경우 유기동물 발생량 대비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이 이루어졌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7~28.

4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개설 증진 필요 (창조농식품정책관)

가. 현 황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전문매장 및 물류센터 결제자금 등을 지원
 - 2015년 예산으로 14.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3년 이후 동 사업을 통해 설치된 판매장이 전무하므로 정책 금리 인하, 융자 요건 조정 등 판매장 개설을 위한 노력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9~30.

5

품목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농업정책국)

가. 현 황

-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부터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의 운영비를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가입대상인 46개 농작물 중 경작 면적의 50% 이상이 가입한 농작물은 2개 품목(사과, 배)이며, 26.1%인 12개 품목은 1% 미만이 가입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대상이 되는 재해 유형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품목별 가입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31~32.

6

공동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사업 절차 개선 필요 (축산정책국)

가. 현 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에너지로 자원화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원으로 인한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매년 과다한 이월 및 불용이 발생
 - 2015년 360억원이 계획되었으나,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22억원 중 126억원이 집행되어 집행행률은 29.9%임
-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사업 절차 개선 등 원활한 설치를 위한 노력 필요
 -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과 연계 강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33~35.

7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투자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식품산업정책관실)

가. 현 황

- 식품기업·대학·연구소가 연계하는 연구개발 및 수출지향형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28억 200만원 중 327억 5,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업시설용지(119.9만㎡)의 13.2%인 15.8만㎡의 분양이 완료(2016년 6월 기준)
 - 본격적인 클러스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활성화 및 투자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36~37.

II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 분석】

1

해운·항만 부문 신성장동력 투자의 효율화 필요

1-1. 마리나 항만 이용 수요의 재추정 후 개발 계획 조정 필요 (항만국)

가. 현 황

- 해양스포츠 진흥과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에 6개 거점형 마리나 항만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 1개소에 대해서만 투자유치가 이루어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마리나 항만에 대한 민자유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비 마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할 필요
-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레저선박의 마리나항만 이용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
- 마리나 항만 시설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

1-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질적 사업 성과 제고 필요 (해운물류국)

가. 현 황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을 확대하고 국내 크루즈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
 - 2013년 7월에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2015년 1월에 크루즈·마리나를 미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시하였던 실천과제의 추진 실적이 미흡하므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46~52.

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2-1.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

가. 현 황

- 어류 양식시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양식업지원(융자)」 사업의 2015년 예산액 199억 4,800만원 중 181억 3,8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배합사료의 생산성이 생사료보다 낮으므로 배합사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할 필요
 - 넙치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배합사료는 사육 7개월 시기에 생사료로 사육한 경우의 체중 대비 92~9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배합사료의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배합사료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2-2.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시 자격요건 강화 필요

가. 현 황

- 양식용 배합사료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 사업을 수행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조건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시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
 - 2012년 이후 선정된 4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53~57.

3

예산 미편성·부정확한 추계 등을 개선하여 자체세입·수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 (기획조정실·운영지원과)

3-1. 연례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과목의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해양수산부의 2015년 세입·수입 중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등을 제외한 자체세입·수입 예산액은 4,840억원임
 - 자체세입·수입의 징수결정액은 7,87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62.6%이며, 수납액은 7,526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55.5% 수준임
 - 항공항만수입·과태료·과징금 세입 항목의 경우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매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
 -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3-2.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향상 노력 필요

가. 현 황

- 해양수산부 소관 자체세입·수입의 예산액 총액 대비 징수결정액 총액은 162.6%, 예산액 총액 대비 수납액 총액은 155.5%로 예산액이 과소 계상되어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 중 연례적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수납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일반회계 토지대여료·기타관유물대여료는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 일반회계 건물대여료와 교통시설특별회계 토지대여료는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58~61.

【개별 사업 분석】

1

**수요가 미흡한 원양어선현대화 용자사업의 지원조건 재검토 필요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가. 현 황**

-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또는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양어선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용자 지원
 - 2015년 예산액 234억 4,000만원은 전액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용자 수요가 미흡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조건의 변경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해양수산부는 중소 원양업체의 낮은 담보력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금리가 3%로 높아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양업체의 낮은 담보력과 경영여건이 호전될 여지가 낮은 상황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62.

2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 노력 필요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가. 현 황**

- 해양오염 방지 및 선박의 안전항로 확보 등을 위하여 전남 신안군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
 - 2015년 예산액 89억 4,000만원은 신안군으로 교부되었으나 전년이월액(19억 7,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9억 1,700만원 중 5억 9,200만원만 집행되고 2015년 교부액은 전액 이월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강화 등 대상지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을 우려하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63.

3

**재정 지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출 실적이 감소하는데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가. 현 황

-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수행
 - 2015년 본예산은 133억 800만원이며 추경으로 15억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48억 800만원이고 집행액은 146억 8,600만원, 불용액은 1억 2,200만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계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더불어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출 실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 K-Seafood Fair의 소비자 체험 및 홍보 위주의 행사 개최는 실질적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성 해외 홍보 행사는 지양할 필요
- 수출 유망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 등 수출시장 규모를 감안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64~67.

4

**해상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의 재발 방지 필요
(해운물류국)**

가. 현 황

- 선원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
 - 「해양수산연수원지원」 사업으로부터 3억원을 전용하여 「해상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해상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전용을 통하여 신규로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68.

5

낙도보조항로 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시후 그 결과를 사업자 선정에 반영 필요 (해운물류국)**가. 현 황**

-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되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운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시 반영할 필요
 - 2015년에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적격심사 항목에 포함하였으나 배점기준 상 비중이 낮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69~70.

6

항로표지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할 필요 (해사안전국)**가. 현 황**

- 선박 안전운항의 기반시설인 등대·등표·전파표지 등 항로표지시설의 증설·개량을 위한 「표지시설」 사업 수행
 - 2004년에 수립된 「제1차 항로표지개발 기본계획」과 2010년에 수립된 「제1차 항로표지 개발 기본계획 조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제2차 항로표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04년 이후 10년간 항로표지 설치 실적 중 1차 기본계획·중장기계획에 따른 것은 78.9%이며, 계획 외 설치가 더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체계적인 항로표지 설치가 미흡
- 2015년 항로표지 설치 실적도 2차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을 준수 하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71~72.

7

**해양사고 예방활동 예산의 해양사고 예방과 무관한 사업으로의 전용
부적절 (해사안전국)**

가. 현 황

- 세월호 사고 이후 신설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운영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는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을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 2015년 예산은 55억원이며 2억 8,200만원을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해상안전국제협력」 사업으로 전용하고 51억 6,600만원을 집행, 5,2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IMO 사무총장 당선 활동 지원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73~74.

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창구의 일원화 필요 (해운물류국)

가. 현 황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수행
 - 「해외진출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공고·지원기업 선정,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사업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하여 공고·지원기업 선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해양수산부와 무역협회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사업과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75.

III

농촌진흥청

【주요 현안 분석】

1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 향상 필요 등 (공통)

1-1.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실적은 낮아짐

가. 현 황

-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 2010년 4,605억원에서 2015년 6,131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5.6%보다 높은 수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 추세이나 2014년 특허출원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14년에 출원된 특허의 수는 760건으로 전년대비 12.2% 감소
 -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특허출원 수로 표현되는 특허출원 생산성은 2013년 1.6에서 2014년 1.3으로 감소

1-2.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예산으로 양산설비 구축 부적절

가. 현 황

- 농식품 분야 R&D 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사업에 포함된 「농업기술의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기술 사업화 성과물에 대한 대량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업체의 양산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농업기술의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내용을 연구개발 지원 위주로 변경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84~87.

2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촌지원국)

2-1. 시군별 특성화를 위한 지원이 특정 작물에 집중되는 현상 시정 필요

가. 현 황

- 지역농업을 2차·3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농촌체험 기술보급 등 사업을 추진
 -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에 포함된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 사업은 시군에서 새롭게 육성하기를 원하는 특화품목의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시군별 특화품목 육성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 사업과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이 특정 작물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시군별 특성화를 위해서는 중복 지원을 최소화할 필요
 - 딸기·채소·복숭아·포도 4개 작물의 경우 총 25개 시군에서 특화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벼·사과·오미자·토마토는 각각 3개 시군에서 특화 작물로 선정

2-2. 경제발전계정에서 제주 지역에 대한 수익모델 시범사업 지원 부적절

가. 현 황

- 다각적인 농외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에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사업을 수행
 - 2015년 예산은 60억원이며 2014년에 선발된 시군의 2차년도 사업비와 2015년에 신규로 선발된 시군의 1차년도 사업비로 집행
 - － 시군별 지원비는 최소 1억 8,000만원에서 최대 3억 2,000만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서 제주도의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지원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제주도에 대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수행할 필요
 -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시군 중에는 제주도가 포함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88~91.

【개별 사업 분석】

1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지역활력화 작목육성 사업의 중복 지원 해소 필요
(농촌지원국)****가. 현 황**

-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에 포함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2015년에 88개 시군에 155억 3,500만원을 지원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에 포함된 「지역활력화작목육성」은 2015년에 45개 시군의 65개 작목에 95억 7,700만원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 지역활력화작목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88개 시군 중에서 지역활력화작목육성 사업의 지원도 받은 시군은 33개이며, 이 중 4개 시군은 두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품목까지 동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92~93.

2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가금연구단지 이전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국립축산과학원)****가. 현 황**

-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닭·오리 등 가금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남 성환에 소재한 가금연구단지를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하는 「가금연구단지 이전」 사업을 추진
 - 2015년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예산액은 192억원이다. 2015년 집행액은 9억 3,000만원으로 집행률은 4.8%이며 182억 6,800만원을 이월하고 2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계획 미흡으로 가금연구단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가금류 연구기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94~95.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보급 목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연구정책국)

가. 현 황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을 통하여 운영비를 지원
 - 실용화재단은 특수미·잡곡·사료작물 등의 종자 공급을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에 중부권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운영중이며, 2015년에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
 - －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구축 사업에는 2017년까지 12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15년 예산은 5억원, 2016년 예산은 50억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종자종합처리센터 구축 규모는 실용화재단의 종자보급 목표를 초과하는 용량이며 실용화재단이 단기간에 종자보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가 2017년에 완공될 경우 두 센터의 처리 용량은 3,500톤에 이르게 되며, 이는 실용화재단의 2018년 종자보급 목표 대비 500톤(16.7%)을 초과 하는 용량
 - － 실용화재단이 2015년에 보급한 종자의 규모는 1,061톤으로 3년 내에 종자 보급량을 3배 가까이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96~97.

4

농가맛집 창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농촌지원국)

가. 현 황

- 농촌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을 수행
 - 「향토음식 자원화」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며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가맛집에 대한 지원은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특정 음식점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므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98.

5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 강화 및 타당성재조사 필요 (국립축산과학원)

가. 현 황

-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질병으로부터 동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전북 남원에 있는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을 경남 함양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 총사업비는 984억원이며 2015년 예산액은 156억 6,100만원임
 - － 전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83억 1,400만원 중 15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4,600만원을 이월하고 14억 3,7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촌진흥청의 가축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사업은 농협의 한우·젓소 개량 사업과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
-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비 21.5%의 총사업비 증액 소요가 있으므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의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99~100.

IV

산림청

【주요 현안 분석】

1

임도시설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림자원국)

가. 현 황

- 임도는 산림에 조림·숲가꾸기·임산물 반출·산불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한 도로
 - 임도시설 사업의 2015년 예산액은 1,486억 6,400만원이며 전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487억 5,100만원 중에서 1,482억 4,100만원을 집행
 -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개발계정에 편성된 「임도시설」 사업은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에 편성된 「임도시설」 사업은 민유림을 대상으로 임도의 설치·유지·관리를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0년에 수립한 「임도시설 기본계획」에서 2015년까지 22,351km의 임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정 임도밀도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2010년 12월에 수립한 「임도시설 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확보하여 8.5m/ha의 임도밀도를 달성할 계획
 - 산림청은 목표대비 임도시설 확보가 부진한 것을 반영하여 2015년말에 「임도시설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 임도시설 목표를 48,000km로 하향 조정하였음
 - － 산림청은 기본산림관리에 적정한 임도밀도를 8.5m/ha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임도의 총 길이는 늘어나고 있으나 km 당 구조개량·유지보수 예산은 줄어들고 있으므로 구조개량·유지보수 예산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 민유림에 임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으나, 민유림 임도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는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08~112.

【개별 사업 분석】

1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방제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 (산림보호국)

가. 현 황

- 소나무·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고사를 유발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서 수행
 - 2015년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과 「예찰방제단」 사업 예산의 일부를 포함한 659억 4,700만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나무재선충병은 전세계적으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방·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있으므로 예방·방제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2015년 산림청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과제 중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와 관련된 과제는 1건으로 2.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된 예산의 0.4%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113~114.

2

산림 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산림자원국)

가. 현 황

-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사업에 포함된 산림 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사업을 통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 완주군에 산림 바이오매스 홍보타운 구축을 추진중
 - 총 사업비 95억원 중 51.3%인 48억 7,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2015년 예산액 17억 5,000만원은 전액 전라북도로 교부되었으나, 전라북도는 이를 전액 이월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
 - 지자체로 교부되는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상황과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15~116.

3

세종시에 조성하는 국립중앙수목원과 중앙공원의 개장시기 조정 필요
(산림이용국)

가. 현 황

- 온대중부권역 자생식물의 보전·증식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녹지공간에 65ha 규모의 도심형 국립수목원 조성을 추진중
 - 2015년 예산액 74억 9,500만원 중 6%인 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70억 4,500만원은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사업의 지연에 따른 중앙공원과의 개장시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립중앙수목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2016년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준공 시기가 20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기본설계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장시기를 2019년으로 변경하였으나 현재는 2021년으로 재변경된 상태임
 - 국립중앙수목원은 2019년에 세종시에 개장할 예정인 중앙공원의 중심부에 구축되는 수목원이므로, 중앙공원이 완공된 이후에도 국립중앙수목원 구축이 진행될 경우 중앙공원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17~118.

제11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기업에 대한 R&D 지원 문제와 개선과제 (공통)

1-1.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증가

가. 현 황

- 기업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21개 R&D 사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지원현황 분석
 - 21개 사업의 2015년 예산은 총 1조 4,708억원, 이 중 기업 R&D 지원금은 9,272억원(63.0%)
 - －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 ÷ 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 기업 중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성장이 정체된 기업에게 R&D 지원이 지속될 우려
 - 21개 R&D 사업의 한계기업 지원 비중은 2013년 8.4%에서 2015년 10.4%로 증가
 - －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20% 이상인 사업: 「그래핀소재부품 기술개발」(20.0%), 「로봇산업 융합 핵심기술개발」(21.2%), 「해양융복합 소재기술개발」(28.6%)사업 등 3개 사업
- 한계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러 R&D 사업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고 있음
 - 2015년 165개 한계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1개 R&D 사업에 참여, 이 중 2개 이상의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35개(21.2%)

1-2. 산업 구조개선 관점에서 R&D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

가. 현 황

- 단위사업 주력산업융합핵심기술 사업 중 자동차·조선·기계·화학 산업 등을 지원하는 3개 R&D 사업의 2015년 예산은 2,838억원
 - 그린카등수송시스템 핵심기술개발(자동차·조선),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화학·금속), 제조기반산업 핵심기술개발(기계설비 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선·화학·기계 등의 산업 분야 R&D 사업에서 영업손실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 관점에서 R&D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

- 사업별 지원 기업 중 영업손실 기업: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핵심기술개발 사업(2011년 11.1%→2015년 28.6%), 제조기반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2011년 6.6%→2015년 23.0%) 산업소재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2011년 8.5%→2015년 18.0%)
- 그린카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2011년에는 업력 15년을 초과하는 기업 중 영업손실 기업이 6.3%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32.9%까지 증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1~19.

2 R&D 과제 기획 제도의 개선과제 (공통)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7개 사업에서 272개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2,634억 6,200만원)를 지정공모 형식으로 선정하여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기획 방식은 ‘기획위원회’ 또는 ‘PD(Program Director)’ 주도로 ①기술동향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②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한 후, ③신규과제를 공고하는 일련의 방식 진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신규 지정공모 과제(272개) 중 ‘기획위원회의 위원’이나 PD의 ‘전문가 자문단’이 그 과제의 수행에 참여한 과제의 비율이 45%(122개)로 나타나 과제 기획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기획위원회 위원이나 PD의 자문단이 수행한 과제(122개) 중 경쟁률이 1:1로 선정 단계에서도 경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42개 과제(34.4%)에 대해서는 과제 기획시 설정한 목표와 세부 기술내역 등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중간·단계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요구됨
- 전담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PD의 ‘전문가 자문단’에 대해 선정방식·인원 수·역할 등에 대한 규정·지침을 마련할 필요
- 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일반 자문단과 과제제안서(RFP) 작성을 지원한 자문단을 이원화하고, 과제제안서(RFP) 작성을 지원한 자문단의 해당 과제 수행을 제한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0~24.

3

산업 R&D 사업 특허의 질적 우수성 제고 필요 (공통)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의 미국특허등록은 2010~2014년 기간 중 총 464건
 - 피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특허 성과를 통해 특허의 질적 수준 평가
 - － 피인용 정보는 특허 공개 후 해당 특허를 인용하여 출원된 특허수로 측정, 피인용횟수가 많을수록 기술적 가치가 높은 특허로 평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특허성과 측면에서 R&D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 성과가 국제적 수준이나 국내 민간 기업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특허 464건 중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을 보이는 우수 특허는 12건(2.6%)에 불과
 - － 국내 민간 기업 등에 의한 비교대상 미국특허에서 우수특허 비중은 7.6%
 - － 일본·영국·독일 등 비교대상 국가별 미국특허 중 우수특허 보다 낮은 비중
-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특허 227건 중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도를 보이는 우수 특허는 4건으로, 특허성과 측면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개발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임
 - 우수특허를 1건 이상 창출한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2건, 「바이오의료기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건 등 2개 사업
 - 227건의 특허 중 46.7%인 106건의 특허는 피인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특허
- 산업통상자원부의 미국특허 464건 중 중 피인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특허가 181건인 39.0%
 - 비교 대상 미국특허에서는 피인용이 없는 특허가 24.3%, 한국출원인에 의한 미국특허에서는 25.2%
 - 특허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며 피인용이 없는 특허 비중이 높아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5~29.

4 기술료 세입 처리 방식의 일관성 부족 (공통)

가. 현 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사용·양도 등)하는 권리의 획득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운영
 - 2015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은 1,224억 8,700만원을 기술료로 수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산촉기금의 재원으로 세입처리하는 반면, 전력기금·방폐기금에서 발생한 세입은 해당 기금에서 자체 세입처리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료 세입처리 방식에 일관성이 부족
 - 2015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술료 254억 7,902만원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기술료 1,800만원을 자체 징수하여 사용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30~31.

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 (공통)

5-1.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 부진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어촌 서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중
 - 2015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인 농어촌 마을의 수를 당초 보다 12개 추가(35개소→47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가 선정된 12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연내에 LPG 소형저장탱크 공사를 완료 못함
 - 2015년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18억원 중 25%인 4억 5,000만원이 연내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됨

5-2. 계통한계가격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발전차액지원금의 과소 추계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우선 구매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금(발전차액지원금)으로 지원
 -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3,192억원이었으나,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77억원을 증액
 - 2015년 12월 기금운용계획을 재변경하여 부족한 발전차액지원금 223억원을 추가 증액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계통한계가격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기금계획변경을 과소하게 함으로써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재차 변경
 -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

5-3.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부진하여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실효성 미흡

가. 현 황

- 2015년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본예산은 700억원이었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750억원을 증액하여 1,450억원을 출연
 -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을 6,250억원(500억원*12.5배) 추가 보증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 보험을 3,125억원(250억원*12.5배) 추가 지원할 계획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경으로 확대된 수출신용보증을 신용등급이 불량한 수출초보기업과 수출급등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운용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일반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운용
 - 추경 이후 특례보증 실적은 목표 6,250억원 대비 13억원에 불과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32~39.

6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한 고용증대 노력 필요 등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6-1.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용감소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2015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308개사와 구축설비 공급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고용변화 설문조사
 - 구축기업 중 27.1%의 고용이 증가하고 4.8%에서만 고용감소,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 41.7%, 감소한 기업은 1.3%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고용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응답률이 98.7%에 달하는 것에 반해, 구축기업의 응답률은 34.7%에 불과하고, 2016년 3월 중 5일간의 전화설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

6-2. 해외이전 공장의 국내 회귀유도 등을 통해 고용증대 노력 필요

가. 현 황

- 해외 제조업 강국을 중심으로 해외이전 공장의 리쇼어링(reshoring)이 활발하게 추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여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나타나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를 상쇄하여 해외 이전 공장이 국내로 복귀하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음
 -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투자촉진」 사업 등과 연계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40~45.

7

소재부품 R&D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7-1. 소재·부품 분야 무역수지를 고려한 R&D 지원 방향 점검 필요

가. 현 황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5년 예산 2,863억원 중 소재분야에 1,933억원, 부품 분야에 856억원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품 분야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액이 소재 분야 보다 많은 것을 고려하여, 소재·부품 분야별 R&D 재원배분 방향을 점검할 필요
 - 대일본 무역수지는 2011년 소재분야 118.8억 달러 적자, 부품분야의 109억 달러 적자에서 2015년 소재분야 66.5억 달러 적자, 부품분야 75억 달러 적자로 변화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소재분야 R&D 지원 비중은 2011년 61.0%에서 2015년 69.3%로 증가하고, 부품분야 R&D 비중은 2011년 39.0%에서 2015년 30.7%로 감소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 부품 등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취약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상기 부품의 대일본 무역수지는 2011년 27.7억 달러 적자 → 2015년 30.8억 달러 적자

7-2. 소재·부품 R&D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소재부품기술개발과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사업의 2015년 예산은 3,201억원
 - 2011~2015년도 654개 종료과제 중 247개 과제에서 1건 이상의 사업화 성과 발생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필요
 - 2011~2015년 기간 중 사업화 성과가 발생한 과제는 2014년 3개 과제
-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매출액을 증대시킬 필요
 - 2015년 종료과제의 정부지원금 247억원 대비 사업화 매출액은 130억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46~53.

8

기술개발기반 구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8-1. 장기수요 조사에 근거한 장비 구입 필요

가. 현 황

- 산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 2015년 예산은 1,548억원
 - 2013~2015년 기간 중 20개 내역사업에서 224개 장비 구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비 구입 결정은 장기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필요
 - 장비 구축 후 1~2년 내에 전년대비 장비 활용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20~25%
 - 장비 가동률과 장비이용 수익금으로 측정한 활용도
- 장비활용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연차별 사업비 배분에 반영할 필요
 - 사업계획의 장비활용 예상치 보다 낮은 활용을 보이는 장비가 있지만, 활용실적 평가 결과를 연차별 사업비 배분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8-2.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장비구입 예산 미집행

가. 현 황

-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15년 신규 사업이며 2015년 예산은 25억원
 - 기능성소재의 실증화 지원을 위한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과 기능성 소재의 사업화에 필요한 R&D를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융복합소재 실증화지원센터 장비 구입비 15억 6,000만원은 센터 설계 완료 후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센터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8월 이후 집행될 예정
- 신축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 설계와 장비 구축 예산을 순차적으로 편성, 설계 지연에 따라 장비 구축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54~59.

9

기금재원 감소를 고려한 산촉기금 지출 절감방안 마련 필요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기술료가 국가 재정에 편입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목적인 산업기술 R&D로의 재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설치
 - 2015년 산촉기금 산업기술혁신계정은 기술료수입 1,26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등으로 조달한 1,672억원을 재원으로, 955억원을 산업기술 R&D 사업 등을 위해 출연, 400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 기금운영비로는 10억원 가량을 사용
- 산촉기금의 기술료 수입 2015년 실적은 1,237억원으로, 혁신계정 수입의 74%
 - 향후 기술료 수입은 2016년 1,130억원·2017년 1,129억원·2018년 1,344억원으로, 2017년까지 단기적으로 하락한 이후 2018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금의 주된 재원인 기술료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채상환 규모를 고려하면, 산업기술 R&D 및 사업화 사업에 집중하고 문화조성 사업 등은 축소할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율 50% 인하, 혁신성과 과제의 중소·중견기업 징수요율 경감(30%) 등의 규정개정(2012년 7월)으로 2014년부터 기술료 수입이 감소
 - 기금의 국채상환을 위해 매년 400억원 이상이 전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료 수입이 감소하면 기금의 출연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음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기금 설립의 핵심적인 취지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나 사업화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기금 재원을 문화조성 사업 등에 배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60~63.

10

여성 R&D인력 지원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10-1. 여성 R&D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이공계 학사 이상 신규 여성 연구인력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2015년 4억원으로 32명의 신진 여성연구원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석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자가 취업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2015년 65억 6,500만원으로 396명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신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자 선발시 여성 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여성 인력 30% 채용쿼터제를 실시

10-2. 경력복귀 여성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저조한 취업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력단절 여성 연구인력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기업 R&D 행정지원 전문가과정’ 등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율과 취업률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경력단절 여성 연구인력에 대해 실시한 2015년 교육과정 4개의 평균 수료율과 취업률은 각각 59.7%와 5%로 저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64~68.

11

가스안전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11-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

가. 현 황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검사 수수료 등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사업비·경상운영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정부의 출연금으로 보전 받는 ‘수지차보전 기관’임
 - 2015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의 출연금 예산은 481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규모 시설에 대한 수수료 인상과 수익성이 높은 신규 사업의 개발 등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출은 2011년 1,070억원에서 2015년 1,386억원으로 316억원 증가한 반면, 자체 수입은 2011년 802억원에서 2015년 998억원으로 196억원(연평균 5.6%)만 증가
 - 자체수입 증가규모가 지출 증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출연금(2011년 251억원→2015년 481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에 부담을 야기

11-2. 과소 추계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의 수요를 재점검할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안전에 취약한 서민층의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
 - 2015년 예산 139억 9,000만원 중 139억 7,800만원이 실제 집행되고 1,200만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체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중기 재정소요를 면밀히 재추정할 필요
 - 서울시·광주시·세종시에서 2015년에 지원한 가구수가 2014년 말 향후 6년(2015~2020년) 동안 교체지원 대상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69~73.

12

석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12-1.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연탄 가구에 대해 직접 지원할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를 연탄 생산업자 등에게 보조해주고 있음
 - 2015년 예산은 1,275억 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탄 최고판매가격 제도의 혜택이 화훼농가·식당 등 상업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변경할 필요

12-2. 석탄 차액보전금과 탄광근로자의 자녀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무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이로 인한 석탄광업자의 손실을 석탄가격보조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음
 - 석탄가격보조금은 ①차액보전금, ②근로자자녀학자금, ③산업재해보상보험료, ④갱도 굴진비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석탄가격보조금 예산 777억 9,100만원은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0년 폐지한 석탄의 최고 판매가격과 생산원가와의 차이를 직접 보전해주는 ‘석탄 생산안정지원금’을 2013년 ‘차액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재개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석탄보조금의 축소·폐지라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
- 현행은 석탄회관의 임대수입(2015년 37억 6,700만원) 중 10억원만 학자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수입 중 학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금액을 확대할 필요

12-3. 대한석탄공사의 경영효율화와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자 운용과 금융기관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에게 출자를 통해 지원
 - 2015년 에너지자원특별회계의 「대한석탄공사 출자」 사업 예산으로 403억 5,000만원을 지원
- 대한석탄공사는 2015년 말 기준 자산은 7,303억원, 부채는 1조 5,989억원(금융부채 1조 5,419억원)으로 8,686억원 자본잠식 상태
 - 석탄은 102만톤을 생산하였으나, 영업손실이 330억원, 지급이자 355억원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626억원이 발생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한석탄공사는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인력 감축의 효과가 도급 인력의 증가로 인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대한석탄공사는 인력을 2010년 2,007명에서 2014년 1,354명으로 32.5%(653명) 감축하였으나, 석탄생산량은 2010년 113만톤에서 2014년 102만톤으로 9.8%(11만톤) 감소하는데 그침
- 대한석탄공사의 부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12-4.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의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은 수입 무역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무연탄 생산량 중 일정량을 발전사업자(영동화력, 동해화력, 서천화력)에게 의무 사용하도록 할 당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 중(2015년 예산은 19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력구조 개편에 따른 시장실패의 보완을 위해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국내 석탄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부족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74~85.

13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인하 필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중
 - 2015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계획(2조 1,783억원) 대비 98%인 2조 1,440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2조 3,980억원으로 과다하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이므로 법정부담금 인하를 고려할 필요
 - 2015년 기금의 법정부담금은 2조 1,440억원 수납되었으나, 사업비는 1조 9,106억원에 불과하여 기금수지 흑자가 발생
 -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은 2,865억원 증가((‘13)1조8,275억원→(‘15)2조1,440억원)하였으나, 기금의 사업비는 지난 3년간 1,730억원 증가((‘13)1조7,376억원→(‘15)1조9,106억원)에 그침
 - 2015년말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규모는 공자기금 누적 예탁금 1조 6,1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7,880억원을 합한 2조 3,980억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출 규모의 확대보다는 당초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 발생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공익적 사업에만 집행되도록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 수지가 흑자로 나타나 여유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수입인 법정 부담금 인하가 아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여 해결할 계획
 - 2016년 중기재정계획(2016~2020)에서 2017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를 법정부담금 수입 예상액과 동일하게 2조 1,930억원으로 전망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17년 지출한도는 1조 7,152억원에 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미흡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86~88.

14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14-1.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계정 분리 및 계정간 차입금의 상환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용과 ②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받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재원으로 방폐기금을 운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단일계정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부적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여유재원을 전입하여 사용하여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선납받아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4-2. 방사성 폐기물 운반 비용을 기금의 수입·지출에 산입할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처리 및 처분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세입으로 납입받고 있음
 - 2015년에는 계획 959억원 대비 20.8%인 199억 6,200만원이 수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5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109억 2,300만원의 운반비용을 납입 받았으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수입·지출 외로 자체 운용하고 있어 재원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존재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89~96.

1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15-1. 미세먼지·원자력안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사업을 확대할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타지원」 사업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 중
 - 원자력발전소 주변 5개의 민간환경감시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2015년 예산 29억 1,100만원을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주변지역의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은 미 실시
- 원자력발전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민간환경감시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2006년 34억원→2015년 29억원)의 증액 필요

15-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부족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을 평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하여야 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발전소 주변지역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미흡 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금의 증액과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의 취지가 약화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97~104.

16

무역보험기금 수출신용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무역투자실)

16-1. 신용보증기금과 중복성이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船積前) 수출신용 보증'을 축소할 필요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船積前)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 중
 - 2015년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2조 6,547억원을 인수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무역보험기금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 중복성이 있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업무를 축소할 필요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인수실적은 2조 6,547억원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체 인수실적 166조 9,097억원의 1.6%에 불과하나, 1,109억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 - 반면 단기보험의 경우 25억원의 손실, 중장기보험의 경우 4,547억원의 흑자가 발생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사고율은 5.5%이 신용보증기금의 2015년 사고율 3.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고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16-2.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금융기관 법정출연금을 신설할 필요

가. 현 황

- 2015년 무역보험기금의 「민간출연금」 계획액은 400억원이었으나, 실적은 외환은행으로부터 100억원만 징수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무역보험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만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이 대출금액의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정화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05~110.

【개별 사업 분석】

1

융복합소재센터 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과 전라남도 고흥에 융복합소재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
 - 센터 구축 사업비가 2015년 7억 5,000만원(부산 5억 5천만원·고흥 2억원) 편성되었으나, 2016년 3월말까지 전액 미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융복합소재센터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 융복합소재센터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 장비 도입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111.

2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익시설과 수익시설로 구성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인천과 경상남도 마산에서 시행
 - 공익시설 건설을 위한 2015년 예산은 264억 3,000만원으로 실집행은 170억원(64.3%)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이 저조하며, 민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 공익시설의 경우 인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지연과 민간투자 유치 협의 지연, 경남 로봇랜드 민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12~113.

3

의료기기 지원 사업의 구매실적 개선 필요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가. 현 황

-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 업체와 대형 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2015년 집행액은 65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 참여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 확대 필요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료과제 11개 중 2016년 4월까지 참여병원과 납품계약이 성사된 과제는 4개(36.4%)
- 정부지원금 대비 의료기기 납품실적 개선 필요
 - 종료과제 중 참여병원과 납품계약이 성사된 4개 과제에서 발생한 구매약정 병원의 구매계약액은 834억 7,950만원, 이 중 삼성메디슨과 삼성의료원이 체결한 구매액 832억 9,400만원을 제외한 3개 과제 구매액은 1억 8,550만원
 - － 11개 과제의 구매약정 병원을 포함한 국내외 병원 전체 납품실적은 1,162억 7,300만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14~115.

4

민·군 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국방 R&D 효율화 필요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추진, 2015년 집행액은 133억 6,2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이나 군이 이미 보유 중인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전·활용할 필요
 - 민군기술개발 예산 96억 3,500만원(72.1%), 민군기술이전 예산 20억 7,700만원(15.6%)
- 군이 보유한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민간 연구를 확대할 필요
 - 군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에 대한 지원 비중이 2015년 4.5%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16~117.

5

**바이오화학 분야 상용화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가. 현 황

- 바이오화학 분야 원료·소재 개발과 생산시설의 실증에 필요한 R&D 지원을 「바이오화학 산업화촉진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 2015년 집행액은 158억 1,000만원
 - 양산시설의 실증을 위한 데모플랜트 건설 과제에 지원된 예산은 117억 8,1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바이오화학 데모플랜트 건설은 상용화 목적의 양산시설 검증을 위한 사업이지만, 사업 참여기업은 다른 상용화 실증 사업에 비해 적은 규모로 사업비를 분담
 - 총연구비 중 민간분담금은 과제별로 45~60%, 민간분담금 중 현금분담금은 약 20%
- 바이오화학 제품의 대규모 생산을 위한 데모플랜트 건설은 영리목적의 제품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사업 종료 후 소유권이 사업기관으로 이관되는 문제
 - 민간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응한 적정 기술료 징수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18~122.

6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수수료 수익의 사업비 재투자 확대 필요 등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가. 현 황

- 「디자인산업진흥」사업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디자인 산업 정책개발·홍보 및 전시회 개최·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집행액은 113억원
 - 내역사업 K-DESIGN 진흥은 디자인전시 및 홍보,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등을 추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K-DESIGN 진흥 사업은 수수료 수익의 사업비 재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
 -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은 2015년 정부지원금 9,500만원으로 사업 추진, 참가기업의 심사 및 전시비 등으로 수수료 수익 13억 9,700만원 발생, 이중 사업비 재투자는 7억 4,300만원
-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현황을 점검할 필요
 - 디자인기업과 제조기업이 디자인 용역 결과물을 통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지 점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23~125.

7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실적 개선 필요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애인·노약자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 사업으로 2015년 105억원의 예산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종료과제의 사업화 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화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종료과제 23건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48억 5,300만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출연받았으나, 매출이 발생한 과제 수는 9건에 불과하고 매출액은 출연액의 37.8%에 불과한 94억 400만원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26~127.

8

**연말 쇼핑행사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문제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K-Sale Day) 지원을 위해 「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에 예비비 41억 8,000만원을 편성
 - 전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박람회개최 등으로 구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 쇼핑행사에 대한 홍보비용을 개별법상 근거 없이 예비비를 통해 100% 비율로 지원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 사업계획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사후평가 절차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28~129.

9

기술금융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조달을 위해 「기술금융지원」 사업으로 기술평가비용을 지원
 - 2015년에는 중소기업 506개를 대상으로 투자용 기술평가 수수료를 150만원씩 7억 5,900만원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기업에 대한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015년 지원기업 506개 중 2016년 5월말까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은 3개에 불과
- 지원 기업의 업력이 상승(2007년 4.84년에서 2015년 6.58년)하고 있으므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제한 필요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술평가 수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민간의 기술평가 수수료 부담을 늘려나갈 필요
 - 대출을 위해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30~132.

10

**에너지 분야 R&D 전담기관의 운영비는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가. 현 황**

- 2015년 에너지분야의 기획평가비 예산은 에너지분야 연구개발(R&D) 예산 7,271억 1,600만원의 2.9%인 212억 1,4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과 특허동향조사·평가위원수당 등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순수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
 -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 지원사업(2015년 예산 12억원)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운영비의 일부만 지원하여, 기관운영비의 대부분(139억 9,400만원)이 기획평가비에서 집행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33~134.

11

해외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여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가. 현 황**

- 「에너지국제협력」사업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대해 해외 에너지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해외 에너지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용을 지원
 - 2015년 예산 30억 5,000만원이 출연되어, 30억 3,000만원이 실제 집행되었고 2,000만원이 불용됨
 - －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예산은 14억원으로 11개의 과제를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10건)에 대해 해외기관이 연구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 공동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 공동 연구비 부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 세미나 비용을 축소하고 위탁 연구비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35~137.

12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의 중복 지원을 개선할 필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지원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동절기 4개월(12월부터 후년 3월까지)간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수행중
 - 2015년 예산 1,058억원 중 885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172억 8,500만원을 불용
-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사업에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동절기 연료비로 월 90,800원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133명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았으므로, 두 사업간의 중복 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38~139.

13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의 계약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지원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사업을 수행 중
 - 2015년도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8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 2천만원 초과한 계약(7건)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40~141.

14

「해상풍력기반구축사업」의 집행 실적 저조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건축 기자재의 원활한 운반·공급을 위한 지원항만(군산항)을 개발하는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사업을 수행중
 - 2015년 예산 13억 9,100만원 중 4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8,700만원이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사업이 축소·지연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원항만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42~143.

15

「가스냉방 설치비 지원」 사업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이 아닌 도시가스를 활용하여 냉난방하는 기기의 설계비와 설치비를 지원
 -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60억원이었으나, 12월 28일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70억원을 증액하여 130억원을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으로 연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가스냉방보조금을 증액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144.

16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가. 현 황

-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2015년 예산 70억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실증 연구하는 사업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해 사업 분야와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2014년 대용량 압축공기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과제(CAES)는 한국중부발전이 과제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여 취소되고, 리튬이온전지 분야는 대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의 고효율 배터리에 관한 핵심 기술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45~146.

17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의 실적 부진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자의 배터리 구입 및 전기버스 충전 시설 구축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수행 중
 - 2015년 예산은 72억 5,000만원이고, 제주도가 69억 5,000만원, 민간보조사업자가 139억원 부담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므로 제주도·보조사업자와 협조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2016년 6월 기준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전기버스는 49대 중 23대, 전기택시는 290대 중 1대, 전기렌터카는 227대 중 48대만 보급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47~148.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으로 중장기(결제기간이 2년 이상)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운영중
 - 2015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 보험을 11조 8,441억원 인수
 - 2015년 중장기보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2,362억원의 57.4%인 1,336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중장기보험의 인수 실적이 당초 계획 16조의 74%인 11조 8,400억원에 불과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2년 이후 해외프로젝트 지원 강화를 위해 32명의 인원(50→84명)을 증원하였음에도 인수실적은 2013년 15.3조 → 2014년 12.8조 → 2015년 11.8조로 감소 중
 - 특히 2015년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보험 인수실적은 추경에서 추가 출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목표(2조 1,000억원)에 그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49~150.

II

중소기업청

【주요 현안 분석】

1

중소기업청의 출연·보조 사업비 관리 개선 필요 (공통)

1-1. 중소기업청 R&D 사업비가 전문기관에 예치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

가. 현 황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중소기업 등에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 시중은행에 예치, 예치된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중소기업청 기타 재산 수입으로 수납(2015년 중소기업청 R&D 사업에서 수납된 기타 재산수입은 77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치금리가 국고채 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교부된 사업비 예치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정손실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문기관 예치금 평잔을 낮게 유지할 필요
 - 중소기업청 R&D 사업 예산과 전문기관 예치금의 평잔 규모를 비교해보면, 2011년 예치금 평잔이 R&D 사업 예산의 44.8% 규모에서 2015년 63.9%까지 해마다 증가

1-2. 비 R&D 사업은 예치금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비 R&D 전문기관 등은 금리나 중소기업 기여도 등 지표를 고려하여 예치상품을 선택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청의 비 R&D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대부분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금 상품 등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비 예치금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59~162.

2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경영판로국)

2-1. 추경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2015.7.27.)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사업 규모를 8,180억원 증액, 총 3조 8,89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자금 조기상환 업체에게 많은 자금이 지원되어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 발생
 - 추가경정 정책자금 8,180억원의 10.8%인 886억원이 2015년에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융자원금을 조기상환한 중소기업에 지원
- 추가경정 예산으로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된 정책자금이 조기에 회수
 - 2015년 정책자금 융자원금 회수액은 계획액 3조 5,380억원 대비 7,790억원 초과 수납
- 추가경정예산 집행 이후 과거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짐
 -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정책자금 융자 중 2010~2014년 중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건은 24.9%,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융자 중에는 30.6%

2-2.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

가. 현 황

- 2011~2015년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잠재적 부실기업 현황 분석
 - 잠재적 부실기업은 $\text{이자보상비율}(\text{영업이익} \div \text{이자비용})$ 이 1 미만 기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상기업 중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치 못하는 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후속 투자가 감소
 - 2014년 융자기업 중 융자를 받은 후 이자비용으로 영업이익을 감당치 못하는 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13.8%, 이들 중소기업 중 38.1%는 융자 후 유형자산 감소

-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상기업보다 장기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잠재적 부실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금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
 - 2015년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 중 5년 이상의 장기 융자는 1,413건 중 42.3%인 598건

2-3. 상위 신용평가 등급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발생 문제 개선 필요

가. 현 황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용평가 모형에 따라 중소기업을 평가하여 대출과 금리를 산출
 - 신용평가 결과는 CR1에서 CR6까지의 13등급으로 구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용평가 상위등급 중소기업이 하위등급 중소기업 보다 부실채권이 더 많이 발생하는 신용평가 등급과 부실채권 발생률의 역전현상 발생
 - 2012~2015년 융자건 중 상위 3개 등급의 부실채권 발생률은 CR1 등급 4.9%·CR2+등급 2.9%·CR2 등급 2.6%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필요

2-4.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지원대상 선별 필요

가. 현 황

- 2015년부터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운영, 2015년 지원액은 300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구조개선 전용자금이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별 기준을 정비할 필요
 -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2015년 융자 167건 중 융자 당해연도에 6건(3.6%)의 부실채권 발생 - 6건의 부실채권 중 5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서 발생
 -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도록 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63~173.

3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 (소상공인정책국)

3-1.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실적 제고 필요

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2015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에 100억원, 재창업 패키지에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지원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2015년 12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각각 38억원(38%)과 10억 5,000만원(53.8%)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신규로 시행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과 재창업 패키지 사업은 사업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당초 지원예정이었던 1만명에 미달한 3,701명에 대해서만 지원, 재창업 패키지 사업은 당초 지원예정이었던 1,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589명에 대해서만 지원

3-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 2015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수료자 총 3,701명 중 2,034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를 위한 추천서를 발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희망리턴 패키지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간의 연계 성과를 점검하고, 희망리턴 패키지 수료자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추천서 발급인원 중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인원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1,467명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74~177.

4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창업벤처국)

4-1.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 제고 필요

가. 현 황

- 2015년 신규로 조성된 벤처펀드는 총 2조 6,260억원으로, 이 중에서 모태펀드 출자금은 23.8% 수준인 6,237억원
 - 중소기업청 신규 예산을 통해 조성된 모태자펀드의 연말 잔액은 2012년 770억원에서 2015년 7,96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가 저조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축소할 필요
 - 매년 조성되는 벤처펀드 출자액 중 모태펀드 출자금 비중이 2014년을 제외하고 벤처펀드 결성잔액에서 모태펀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 전체 벤처펀드에서 모태펀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
 - 회수시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투자규모 확대는 민간투자를 구축할 우려

4-2. M&A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2015년 회수유형별 회수비중은 장외매각 또는 상환이 52.3%, IPO가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M&A에 의한 투자금 회수는 1.5%로 저조한 수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 기술평가 및 기술보호 강화와 대기업 경제력 남용 방지 등 M&A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행태의 보수화를 촉진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78~182.

5

중복 가능성이 있는 창업지원 사업의 통합추진 필요 (창업벤처국)

5-1. 창업아카데미와 창업선도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원화 필요

가. 현 황

- 「창업아카데미」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 1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 651억 6,000만원이 모두 집행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창업선도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아카데미 사업이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추진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점 인정형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분야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창업자에게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구성이 유사

5-2.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와 창업보육센터 통합 운영 필요

가. 현 황

- 두 사업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교육·멘토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사업 예산 80억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 118억 4,000만원은 모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입주기업당 매출·고용 등 실적 하락으로 과포화 상태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사업을 창업보육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83~188.

6

중소지식 서비스기업 육성 사업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편성 부적절
(창업벤처국)

가. 현 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15년 수입은 공자기금 예수금 1조 6,0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639억원 등을 합친 2조 2,290억원임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은 차입 재원인 공자기금 예수금을 바탕으로 집행 되었고,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은 일반회계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을 재원으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여 지식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중소지식 서비스기업 육성」 사업에 2015년 402억 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대상자인 '지식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업 규모상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한미 FTA 피해대책으로 관세액을 출연받아 조성된 동 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유사한 성격의 타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기금 재원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미흡
 - 타 회계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다른 창업 지원사업들과 달리 주요 지원업종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89~192.

7

중소기업 R&D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생산기술국)

7-1. 기획평가관리비 중 위탁사업비 과다 문제

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9개 R&D 사업의 2015년 결산 집행액은 총 8,528억원이며, 이 중 기획평가관리비는 326억원
 - 기획평가관리비는 R&D 사업을 과제 단위에서 기획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청 R&D 사업은 사업관리 업무의 위탁으로 운영성 경비 등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위탁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관리구조 개선이 필요
 - 기획평가관리비 중 17.0%가 외부에 위탁하여 집행, 위탁기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집행액 중 직접비 비중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특징

7-2.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R&D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5년 예산은 1,520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과제를 주관하고 중소기업은 과제 참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화 성과가 저조
 - 2014년 1,925개 종료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769개(39.9%)
 - 중소기업 주관과제 149개 중 사업화 성공 과제는 106개(71.1%)

7-3.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으로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60%(일반기업), 70%(창업기업)의 비용을 지원
 - 2015년 예산은 16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행액은 137억 9,000만원(83.4%)이고, 집행잔액 27억 5,000만원이 발생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실행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감액할 필요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개발계획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사업기한을 당초 2015년 12월까지에서 2016년 2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총 14개월)하였으나, 실행 부진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였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93~198.

8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일원화 필요 (생산기술국)

가. 현 황

-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
 - 2015년 민관 합동재원 542억원(정부 394억원, 민간 148억원), 중소기업 자체투자 500억원, 산업은행 융자 500억원으로 약 1,5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산업은행 융자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
- 중소기업청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혁신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2015년 출연 예산 80억원 모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청의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간의 차별화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두 사업은 지원대상(중소기업)·지원조건(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50%)·지원내용(대부분 ‘기초’와 ‘중간1’ 단계) 등에서 유사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99~201.

【개별 사업 분석】

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총 예산에서 정부수입 비율 과다 문제 (중소기업정책국)

가. 현 황

- 협력재단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보조금과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이 부담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등 기부수입으로 구성
 - 2015년 재단의 총 예산규모는 1,691억원이고, 2016년 총 예산규모는 2,248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총 예산에서 정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민간 투자재원의 출연을 확대해나가는 등 정부의 재정 투입보다는 대기업 등 민간 재원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대기업 등이 부담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재단의 총 예산에서 정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12억원(9.0%)에서 2016년 426억원(19%)까지 증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02~203.

2

벤처기업 채용지원 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등 (창업벤처국)

가. 현 황

-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벤처기업 채용과 벤처기업 신입사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벤처기업 일자리지원」 사업을 시행(2015년 예산 17억 7,000만원 모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 사업을 통해 취업한 벤처기업 신입사원들의 고용유지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
-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은 재검토하거나, 기업 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04~205.

3

창업대학원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재검토 필요 (창업벤처국)

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창업대학원」 사업으로 창업대학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2015년 예산은 9억원이 편성되어 모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창업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 당초 2004년 사업 시행시 5년간의 지원 이후 창업대학원의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이 10년간 계속되었으며, 2014년 새로운 창업대학원 5곳이 선정
 - 지원이 종료된 5개 창업대학원이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 자립기반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학당 지원금이 평균 1.8억원으로 소규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06~207.

4

창업인턴제 사업은 실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예산 편성 필요 (창업벤처국)

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인턴을 선발하여 기업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턴 수료 후 사업화 평가를 거쳐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인턴제」를 시행
 - 2015년 예산 50억원 중, 2016년 3월말까지 실집행액은 37%인 18억 5,000만원에 불과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턴 선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인턴의 근무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사업화 자금은 인턴 근무가 종료된 뒤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단년도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 예산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성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08~209.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판로국)

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조성과 기금을 활용한 공제사업 운영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가입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해 2015년 13억 8,800만원의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조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사업을 실시하기보다는 가입자간 형평성·기금의 자의적 사용 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에 대한 수익 배분에 집중할 필요
- 중소기업 대표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
 - 별다른 요건 없이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재량으로 핵심인력을 지정할 수 있고,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10~212.

6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지원 사업의 추계강화와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방안 마련 필요 (경영판로국)

가. 현 황

- 지역신보가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재보증, 중소기업청은 재보증으로 인한 중앙회의 손실분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을 통해 보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영현황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12년도 결산 시 국회는 중소기업청에 금융기관 법정출연료 상향조정을 시정요구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13~215.

7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의 성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 (경영판로국)

가. 현 황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해 전략수립 컨설팅과 마케팅을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을 시행
 - 2015년 편성된 50억원의 예산 중 집행행액은 31.6%인 15억 8,100만원에 그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행행이 부진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 사업 수혜기업의 대중국 수출 실적이 우리나라 전체 대중국 수출실적보다 저조
 - 2014년 시범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들의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중국 수출실적은 2014년보다 평균 12.2% 감소(우리나라 전체 대중국 수출 감소율은 5.62%)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16~217.

8

연구용역비 집행상 문제점 (중견기업정책국)

가. 현 황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은 2015년 기본경비로 3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 연구용역 3건의 예산은 모두 각각 1,900만원씩으로, 중견기업연구원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수행하였고, 1,890만원씩 집행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특정 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같은 금액으로 여러 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국가 계약의 일반경쟁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18~219.

III

특허청

【주요 현안 분석】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특허·디자인 심사국)

1-1. 특허 선행기술조사 위탁용역의 경쟁을 강화할 필요

가. 현 황

- 특허청은 특허심사관의 심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 중
 - 2015년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사업 예산 316억 8,600만원을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쟁을 통한 조사품질 제고 및 지식서비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
 - 일본은 2004년 선행기술조사의 전문기관의 운영방식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반면, 우리나라는 1996년 한국특허정보원·2005년 웹스·2008년 아이피솔루션 지정 이후 신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모든 전문기관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방식을 개선하여 가격경쟁을 도입할 필요
- 위탁 물량 배분시 특정 전문기관의 조사원에게 선행기술조사 건수가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2015년 선행기술 전문기관별 조사원 1인당 연평균 조사 건 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260.4건, 아이피솔루션의 경우 205.6건, 웹스의 경우 195.4건으로 최대 65건의 차이가 발생

1-2. 특허 심사관의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

가. 현 황

- 특허청은 2015년 말 기준 정원 1,600명 중 현원 1,589명을 운영하고 있고, 정원의 102명의 전문임기제 중 78명을 채용
 - 2015년 인건비 예산 1,207억 7,900만원 중 1,145억 4,000만원(94.8%)을 집행하고 62억 3,9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특허청은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 운영기관이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잔액(2,880억원) 등 특허수수료 수입 증대로 인한 여유자금을 인력확충에 활용할 필요
- 특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특허심사관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할 필요
 - 2015년 말 기준 특허 심사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정원(843명) 대비 현원(812명)이 31명 부족

1-3. 디자인권 심사시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행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2015년 「디자인국제출원 심사기반조성」 사업의 예산 3억 3,300만원 중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디자인 조사분석」사업으로 1억 2,900만원, 「디자인 물품분류」사업으로 8,200만원을 조정하여 사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서 번역·분류 외부 용역 예산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디자인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행조사에 대한 위탁 물량의 확대 뿐만 아니라 특허청 내부 디자인 검색 데이터베이스 확충에도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27~237.

2

특허 활용을 위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산업재산정책국)

2-1. 은행의 지식재산(IP) 담보 대출 활성화 필요

가. 현 황

- 은행과 ‘지식재산(IP) 담보대출’ 금융상품을 신설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기술신용보증기금·발명진흥회 등에 의뢰하는 비용을 지원
 - 2015년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6억 6,2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협약과 달리 ‘지식재산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는 은행에 대해 조속한 상품 출시를 독려할 필요
- 은행이 외부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은행 스스로 자체 평가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2-2.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수익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현 황

- 2010년 해외 특허공세에 대응하고 거래·평가 등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출자하여 ‘지식재산관리회사((주)ID: 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
 - 2015년 「창의자본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식재산관리회사((주)ID)의 특허 매입비 50억원을 출연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식재산관리회사((주)ID)는 연례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능조정과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경영 정상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2015년 54억 7,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설립후 6년간 누적 순손실이 417억 3,000만원
- 지식재산전문회사((주)ID)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38~244.

3 국유 및 공유 특허의 활용도 제고 필요 (산업재산정책국)

가. 현 황

-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
 - 2015년 국유특허의 실시료로 6억 3,000만원의 세입을 수납하였고, 국유특허 등록·처분 보상금으로 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외 국유특허 등록료로 5,0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유특허 활용 실적이 18.8%로 저조하므로, 우수한 특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업성이 낮은 해외 국유특허를 정리할 필요
 - 해외 국유특허의 경우 누적 등록건수는 3년간 2012년 82건에서 2015년 129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전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공유특허)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거래 정보사이트(IP-Market)’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허는 서울특별시의 167건에 불과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45~248.

【개별 사업 분석】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 (산업재산정책국)

가. 현 황

-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기초연구비·기관 운영비를 보조
 - 2015년 예산 54억 4,400만원 중 54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5년 기관의 인건비(31억 4,500만원)의 대부분(31억 4,300만원)을 동 사업의 보조금에서 충당하였으므로 보조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일반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경쟁예산과 안정예산의 균형적 조화를 위해 인건비와 연구비 등 기관 운영비의 최대 70% 수준을 출연금으로 지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49~252.

2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산업재산정책국)

가. 현 황

-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인 반도체 설계 재산에 대한 창출·활용·보호를 지원
 - 2015년 예산 13억 7,900만원 중 13억 6,0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00년도부터 반도체 설계재산 산업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기준 상용반도체 설계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이 20개에 불과하여 지원 효과가 미흡
 -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KIPEX)는 지식거래 정보시스템(IP-Market)과 연계하여 운용하면 예산의 절감이 가능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53~254.

3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실적 저조 (산업재산정책국)

가. 현 황

-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시
 - 2015년 예산 2억 8,000만원 중 2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규 취득하는 기업 수가 2014년 132개에서 2015년 71개 업체로 감소하였고, 2년의 인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2013년 인증 기업 91개 업체 중 재가입한 기업도 52개 업체(57%)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55~256.

4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다각화 필요 (산업재산정책국)

가. 현 황

-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은 국제표준 관련 기술 분야의 R&D 과제와 미래부·산업부의 국제 표준안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기업·연구소 등이 표준특허의 확보·관리·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2015년 예산 22억 7,500만원 중 22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업 전반의 표준특허 창출역량의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의 다각화와 지원 대상 기관이 보유한 표준 특허의 창출 역량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필요
 - 2015년 신규과제의 경우 전자통신연구원은 신청한 10개 과제 중 8개 과제(80%)가 선정되었고, 그 밖의 기관·업체의 경우 신청한 27개 과제 중 12개 과제(44%)만 선정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57~259.

5

**특허상담센터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 성과 제고 필요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가. 현 황

-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 강화」 사업은 공익변리사를 채용하여 중소기업·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 등을 제공
 - 2015년 예산 15억 5,000만원 중 15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익변리사의 잦은 채용과 퇴사로 사업의 성과가 악화되지 않도록 인력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익변리사의 심판·심결 취소소송의 직접 대리건수를 높일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60~262.

6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강좌지원」 사업과 「지식재산 학점은행」 사업간의 연계 강화 필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가. 현 황

-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2015년 30억원)과 ‘지식재산교육 강좌’(2015년 11억 600만원)의 인건비·강의개발비 등을 지원
-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사업은 통해 온라인 학습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사업을 수행
 - 2015년 예산 18억 9,500만원 중 18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학의 지속적·체계적 지식재산교육이 가능하도록 선도대학·강좌지원 사업과 학점은행제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63~264.

7

**특허청 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발명 캠프의 재검토 필요
(국제지식재산연수원)****가. 현 황**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교육운영」 사업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교육을 수행
 - 2015년 예산은 16억 500만원으로, 이 중 15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
- 「지식재산 교육운영」 사업비 중 1,596만원을 특허청 직원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캠프 개최비로 사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허청 직원 자녀만을 위한 발명캠프를 실시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265.

8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예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공통)**가. 현 황**

- 2015년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실집행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 (연평균 0.1%~1.0%)하여 발생한 이자 1,948만원을 보조금 정산시 반납
 - 2015년 6개 사업에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4개 기관(보조사업자)에게 334억 1,800만 원의 민간보조금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의 자금운용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모든 보조사업자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같이 연평균 1%의 금리로 보조금을 예치할 경우 이자수입이 현행(1,948만원)보다 6,294만원 증가(8,241만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266~267.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개선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의료기술의 증가, 수익보전 등을 위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행위 증가로 비급여 의료비가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3.4%에서 2014년 17.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 실행 필요
-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의료비 관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 필요
 - 국민의료비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의료비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 설치 필요
- 표준화한 비급여 의료비 코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전체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의무화 방안 마련 필요
- 개정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의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필요
- 개정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 가격 공개 항목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52개 항목보다 확대 필요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의료비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필요
- 장기적으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함께 비급여 항목까지 건강보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2~17.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환경부)

2-1.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가. 현 황

- 2000년대 초반 CMIT, MIT, PHMG, PGH 등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된 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의 법적 미비로 관리되지 않았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발방지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제도 개선 필요
 -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시, 관리 사각지대 해소 필요, 유해화학물질(특히, 살생물질) 함유제품의 제조 시 사전허가제도 도입 등 검토

2-2. 원인미상 질환의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

가. 현 황

- 가습기 살균제 원인규명은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4월 의료인으로부터 역학조사를 의뢰받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를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2012년 2월 동물 흡입성 독성실험 완료 후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임을 최종 발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학조사 절차가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지 않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규명 지연
- 원인미상 질환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하게 원인 규명하도록 역할 강화 필요
 -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의료인이 요청하는 역학조사 신청 창구와 역학조사 수행 주관기관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 필요, 원인미상 질병발생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보완 필요, 원인미상 질병 대응 지침 마련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8~24.

3

필수의료과목 및 지방병원의 의사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가. 현 황

-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에 비해 낮은 수준
 - 의과대학 정원은 2007년부터 9년 동안 3,058명으로 정체되어 있고, 전공의를 지원한 의사 수(전공의/레지던트)는 2006년 3,416명에서 2009년 3,62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3,190명으로 감소 추세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방은 의사충원이 어렵고 일부 지역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 조차 공급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시설비·인건비·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나 이와 같은 지원에도 일부 과목 및 지방에서는 인력충원이 잘 안되고 있음
- 의사 인건비는 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의 의사 인건비는 수도권보다 더 높아 지방병원의 경영은 악화되고 있음
 -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인건비는 2008~2014년 동안 연평균 5.2%씩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 3.2%보다 2.0%p 높음
 - 의사 인건비의 높은 증가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육성 정책으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사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를 통해 의사 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입학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의사 수 확대가 어렵다면 산부인과, 외과 등 비선호 전공과목의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인원만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여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25~29.

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 등 비효율성 해소 필요
(건강보험정책국)

가. 현 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설립됨
 - 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급여 관리 및 비용 지급, 건강증진사업,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을 소관하고,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
 - 두 기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며, 보험급여비와 심평원 부담금을 제외한 공단의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1조 2,988억원이고 심평원은 3,785억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단과 심평원은 동일한 자료의 중복 관리, 정보공유 미흡, 각각 소관 연구소 운영, 기관 업무범위와 부합하지 않는 홍보비 집행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두 기관이 동일한 자료를 각각 보유·관리함에 따라 전산구축비와 보완시스템 비용 등이 중복으로 지출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결정되고 보장성 강화 항목 및 일정이 수립되는 만큼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정추계 및 분석과정에서 두 기관 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공단 소속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 소속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주제들이 유사하고 연관성이 높으므로 연계연구,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심평원에서 정부정책과제를 홍보하는 것은 기관의 업무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두 기관을 별도 기관으로 운영함에 따른 중복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심사평가 전문기관이 있음으로 인한 전문성과 중립성 등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30~33.

5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강보험정책국)

5-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

가. 현 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①보수 외 소득 여부에 따른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②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역진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직장·지역 간 형평성, 국민의 수용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2. 누적적립금을 고려한 보험료율 산정 필요

가. 현 황

- 2015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는 4.2조원 흑자, 누적재정수지는 17조원임
 - 2011~2015년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기록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보험료율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그해 소요된 비용의 50%까지 적립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생긴 규정으로, 업무처리 효율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단축(6개월→1.5개월)되었으므로 적립금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5-3.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 확대 필요

가. 현 황

- 2015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72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678개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림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건강보험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고나 조사 의뢰가 있거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에서 선정되거나,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한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현지조사 의료기관 수는 연 700개소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약 1%에 불과

5-4. 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 마련 필요(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가. 현 황

- 현재 우리나라는 외래와 입원 서비스 모두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일당정액제 적용
 -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가능한 실포괄수가제를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8년째 시범사업 중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안 및 전략 마련 필요
 - 복지부는 실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외에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없는 상황

5-5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ODA사업 추진 부적절

가. 현 황

- 보건복지부(총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주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협력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력기관) 공동으로 ODA 사업 실시
 - 2013~2015년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회 해외출장에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회 해외출장에 1억 3,2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각 기관의 업무범위를 벗어남
 - 「국민건강보험법」에 두 기관의 소관 업무로 ‘국제협력’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이나 심사평가업무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 복지증진 등을 위해 원조하는 ODA 사업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5-6.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지원금은 7.1조원으로 일반회계 5.6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1.5조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 정부지원금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예산지원방식을 변경할 필요.
 - 현행 정부지원금 산정방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연례적으로 과소지원되고 있음
 - 정부지원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포괄적으로 지원되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부합하여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없음

5-7.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효율화를 위한 각 기관의 분담금 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통합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기금, 고용·산재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회계로 운영
 - 2015년 기준 사회보험통합징수 총 예산은 2,892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1,815억원, 국민연금에서 786억원, 산재보험에서 150억원, 고용보험에서 140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억원 분담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할 필요
 - 현재는 각 기관의 출연금 분담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분담률이 일정한 기준없이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업무비율은 51.5%, 32.8%, 15.7%이고 출연금 분담 비율은 62.3%, 27.3%, 10.4%로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비율 대비 과다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과소부담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34~52.

6

메르스 대응 예산의 집행상 문제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6-1. 국가 안전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이 전문가 검토없이 결정(질병관리본부)

가. 현 황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항바이러스제인 리렌자 300만명분 구입비 555억원을 편성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항바이러스제 비축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나,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는 국가비축률에 대해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2015.7.12., 2015.7.13.)를 통해 비축률 상향(25→30%)이 발표된 이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를 개최(2015.9.9.)하여 항바이러스제 구매를 위한 심의를 실시
 - 보건복지부는 2010년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최종결과보고서에서 항바이러스 투약 정책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심층설문조사 결과 비축률 상승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0년에 보건복지부는 국가비축률은 인구대비 26%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전문가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 550억원(500만명분 추가 비축분)을 전액 불용한 사례가 있었음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 등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6-2.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 집행 저조(공공보건정책관)

가. 현 황

- 전국 254개소 보건소에 안전성이 강화된(운전석과 탑승석 분리 등) 구급차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으로 총 186억원의 예산을 편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예산정책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의 사전준비 미흡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집행률은 22.5%로 저조함
 - 2015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대부분 국고채발행(추가경정예산안 소요재원 11.8조원 중 9.6조원)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부는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6-3. 메르스 관련 지원장비 세부지침 마련 필요(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자원관리과)

가. 현 황

- 감염병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하여 치료병원 각 29개소에 13억원, 노출자 진료병원 각 21개소에 5억원 등 총 482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 478억 4,3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고지원 장비를 감염병 환자 진료에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 미흡
 - 국고지원 장비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익적 활용 위해 세부지침 마련 필요

6-4.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질병관리본부)

가. 현 황

-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사업의 2015년 예산은 294억원이고 26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24억 5,000만원 불용
 - 22개 병원에 116개의 1인실 음압병상을 신규 확충 예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지방자치단체에 26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에 교부하였지만, 실제 병원이 집행한 금액은 전혀 없었음
 - 병원에 대한 시공설명회가 2016년 2월에 개최되는 등, 2015년에 설치하기 위한 노력 부족
- 추경사업에 지원된 신규 국가지정격리병원 12개소 중 민간병원이 7개소로 58%에 달하고 있어, 민간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감염병관리기관 업무수행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 필요
- 과거 시도별 호흡기성 감염병 발생환자 수 추이를 고려했을 때, 환자 수 발생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 비해 서울·인천 등 도시에 음압병상이 더 많이 설치(예정)되어, 병상의 지역별 배분에 불균형 발생
 - 개정된 법에 따라 향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할 경우, 기존 음압병상의 지역별 불균형 상황 및 지역별 환자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53~65.

7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건산업정책국)

7-1.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육성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해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와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도 예산은 55억 6,300만원으로 이 중 55억 1,800만원(집행률 99.2%)이 집행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지자체 보조금,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의료안내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여 예산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7-2. 홍보비 위주의 지원으로 지방의 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성과 미흡

가. 현 황

-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2015년 동안 총 13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등 8개 지역에 지원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홍보비 위주로 지원하여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해외환자 수도 감소하는 등 사업성과가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고, 일부 지역은 선도의료기술이 매년 변경되는 등 각 지방의 경쟁력있는 의료기술에 대해 지원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와 같이 단발성 예산 지원으로는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지자체별로 특정 분야를 브랜드화하여 집중 지원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7-3. 해외환자 보호 미흡

가. 현 황

- 우리나라 찾는 해외환자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환자 치료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
 - 2015년 해외환자수 29만 7천명(2014년 26만 7천명)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80건 접수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의료불법브로커 단속을 1차례만 실시하는 등 해외환자 보호 조치 미흡
 - 의료불법브로커로 인해 해외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지 못하는 문제
 - 2015년 5월 단속에서 14명을 적발, 9명을 수사의뢰하였으나 2016년 6월 말까지 불법브로커로 확인된 사람 없음

7-4.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관리 필요(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가. 현 황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 종목으로 신설되었으며 2013년부터 자격시험 시행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47명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배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운영이 ‘관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환자안전관리 등에 대해 취약할 우려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환자안전관리’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과목 추가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66~76.

8

보건복지부 인력 및 인건비 운영 개선 필요 (공통)

8-1. 전문직위제 운영 개선 필요

가. 현 황

- 전문직위제도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향상 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85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였으나, 2016년 42명만을 선발·운영하여 49.4%에 불과
 - 4년 동안 전문직위로 묶여 있어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마련 필요
- 전문직위가 4·5급 이하의 직원에 편중되어 있어 상위직급의 전문직위 확대 필요
 - 동일 전문직위군에 4년~8년 근무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승진할 수 있는 상위 직급의 전문직위가 있다면 직원들의 전문직위에 대한 기피현상 줄어들 것 예상

8-2. 의료업무 수당 지급 부적절

가. 현 황

- 보건복지부 본부는 약무직렬(월 7만원), 질병관리본부는 간호직렬(월 5만원)에 의료 업무 수당 지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검역소 제외)은 의료업 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동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면 받지 못하고, 약사가 하면 받게 됨(자격증수당처럼 사용)

8-3.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기타직보수(110-02)로 편성
 - 2015년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836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8억 9,700만원을 이·전용 하였고 785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11억 9,900만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건비(기타직보수)는 2012년 이후 예산편성 기준 인원보다 실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 수가 미달하여 매년 연례적인 이·전용과 불용액 발생
 - 의학전문대학원(2005년) 도입 및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추세를 보이므로, 직전연도의 실적 기준으로 예산 편성시 매년 이·전용 및 불용액 발생 예상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77~84.

9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가. 현황

- 환경보건 업무는 환경부가 주관기관으로서 위해성평가 및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
 -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생명보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와 관련있는 환경보건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
 - 환경보건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 필요
 - － 가슴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원인을 밝혀낸 것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가 환경보건 업무를 수행하면 즉시 의료기관과 협조할 수 있어 시간적 효율성 개선 가능
 - － 환경부 환경보건센터 13곳 중 대부분이 의료기관
 - － 환경성질환 연구를 위해 환자 모집 및 조사를 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
 -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도 주요 환경성질환에 대해 발생현황과 환경요인규명을 위해 전국적인 감시 및 추적 네트워크를 구축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85~87.

10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 (보육정책관)

10-1.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으로 본사업 차질 우려

가. 현 황

-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에 앞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시행
 - 당초 계획(2015.7~12)보다 연장(~2016.6)
 - 제주 서귀포, 경북 김천, 경기 가평 등 3개 지자체 → 경기 평택 추가 실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범사업 기간이 2015년 말에서 2016년 6월로 연장됨으로써 맞춤형 보육 본사업(2016년 7월 실시) 차질 우려
 -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 부족

10-2. 대표성 없는 시범지역 선정 개선 필요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개편하면서 종일반과 맞춤반 이용 아동의 비율을 80:20으로 예측
-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동 6,128명 중 5,553명(90.6%)이 종일반 선택(2015년 9월 기준)
 - 종일반 선택 비율은 가평 97.2%, 김천 92.4%, 서귀포 89.4%, 평택 78.7%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표성 없는 시범지역 선정으로 맞춤형 보육 준비 부족
 - 실제로 종일반 신청을 받은 결과, 종일반과 맞춤반 선택비율 73:27(2016년 6월 29일 기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88~93.

11 치매환자시설 및 가족 지원 미흡 등 (공통)

11-1.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 시설 확충 필요

가. 현 황

-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중 9.8%가 치매환자인 것으로 추정(64.8만명)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는 67만 6천여명
-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4년 1조 6,142억원
 - 1인당 치매진료비는 2006년 180만원에서 2014년 365만원으로 증가
- 2014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3만 5천명 중 치매환자는 23만 6천명
 -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2014년 2조 4,133억원
- 공립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서 돌보기를 꺼려하는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설립
 - 2015년 말 현재 공립요양병원 77개소/13,043개의 병상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환자 비율은 2015년 기준 64.5%에 이르고 있으나,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문병상이 크게 부족
 - 치매전문병동은 2015년 말 기준 공립요양병원 77개소 중 26개소(33.8%)에만 설치
 - 공립요양병원 전체 병상수 13,043개 중 치매전문병상은 1,691개
 - 보건복지부는 2013년 25개, 2014년 23개, 2015년 2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2015년 실행행률은 15.5%

11-2.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등 필요

가. 현 황

-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치매환자가족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치매노인을 돌봐주는 것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무한데, 치매가족 지원을 위해 동 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개선 등 필요
 - 대상범위가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등을 받은 치매노인으로 한정된 문제
 - 치매환자를 낳은 기관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재가형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등 도입 검토

11-3. 치매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 2014년 7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치매특별등급에 소요되는 요양급여비 중 공단부담금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89억원, 2015년 690억원 규모
-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안마련이 필요
 -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비용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5.5% 증가
 -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환자 46만 7,752명 중 치매환자 24만 1,932명
 - 2017년부터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계획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94~100.

12

아동학대 대책 관련 개선과제 (인구아동정책관)

12-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아동학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아동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
 - 아동학대 신고건수 2012년 10,943건에서 2015년 19,209건으로 75.5% 증가
 - 아동학대 판명건수 2012년 6,403건에서 2015년 11,709건으로 82.9% 증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학대의 정확한 실태 파악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아동학대 홍보 강화 및 사각지대 모니터링 확대 등 실시 필요
 - 2015년 직장신고의무자 168만여명 중 교육 이수자 42만 7,000여명(25.5%)
 - 미취학·장기결석 중인 초·중학생 2,892명을 전수조사 결과 아동학대 의심 328명, 아동학대 확인 35명

12-2.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쉼터 확대 필요

가. 현 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55개), 학대피해아동쉼터 46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 예산액 193억 5,200만원, 집행액 163억 6,700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2015년 예산액 58억 9,000만원, 집행액 38억 1,4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쉼터 확대 필요
 - 학대피해아동이 2013년 6,796건에서 2015년 11,709건으로 72.3% 늘어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1개소에서 56개소로 9.8% 증가.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2013년 36개소에서 2015년 57개소로 58.3% 증가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01~107.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 후 추계 및 집행관리 필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13-1. 생계급여 과소편성으로 인한 이·전용 등 개선 필요

가. 현 황

-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시행
 -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 급여별 수급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
 - 2015년 당초 예산액은 2조 6,987억원이고, 650억원을 이·전용하고, 이 중 2조 7,496억원을 실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급여 부족을 이유로 주거급여에서 850억원을 조정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조정계수 산입으로 생계급여 예산을 과소편성하였기 때문
 - 생계급여는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2011년과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이·전용 등이 발생

13-2.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 2015년 예산액은 추경 537억원을 포함한 4조 5,871억 1,100만원, 이 중 4조 5,871억 200만원 실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으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
 - 미지급금액(국고지원액 기준)은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 발생

13-3. 주거급여·교육급여 집행관리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가. 현 황

- 생계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거급여 사업의 실집행률은 68.0%으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
-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부로 이체한 예산의 실집행률이 51.5%로 특히 저조함에도 교육부는 신규수급자 증가를 이유로 불필요한 전용을 한 것은 문제임
 - 교육급여 사업의 전체 실집행률 66.9%
 - 생계급여에서 150억원을 전용하였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전용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08~115.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14-1.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

가. 현 황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입양아수는 7,495명, 그 중 국내입양아수는 4,679명으로 62.4%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에 대한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 국내입양은 거의 대부분 비장애아동 입양
 - 2015년 국내입양 683건 중 659건(96.5%)이 건강양호 아동에 대한 입양
 - 2015년 국외입양 374건 중 건강양호 아동입양은 73.5%인 275건
 -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 등급에 따라 551,000원 ~ 627,000원의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과 의료비(연간 260만원 한도) 등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필요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은 월 평균 16만 4,200원
 -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중 의료비가 66,000(40.2%)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18,900원/11.5%), 보호·간병비(13,600원/8.3%)도 큰 편
 - 의료비 지원이 비급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연간 260만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으로는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어려움

14-2. 국내입양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모색

가. 현 황

- 입양사후서비스는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및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입양가정 상담요원 배치 등이 포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입양사후서비스를 지원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후지원이 국외입양인 대상(83.5%)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입양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입양사후서비스 집행액은 40억 500만원인데, 이 중 33억 4,300만원이 국외입양인 대상

14-3.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전산화 조속 추진

가. 현 황

- 「입양특례법」은 입양인의 정보접근권을 명문화·구체화함으로써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입양정보 전산화 조속히 완료 필요
 - 중앙입양원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양정보 전산화 추진
 - 2013년부터 전산화를 시작하여 2015년말 현재 79,653건의 전산화(입양기록 약 23만여건의 34.6%)
 - 보건복지부는 2019년까지 데이터 전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16~121.

【개별 사업 분석】

1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건강정책국)****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동네의원 등록 고혈압·당뇨 환자 진찰료의 일부 경감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자가 별도 건강동행센터 이용하여 교육·상담 받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교육·상담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센터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소요 발생
-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 및 장기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22~126.

2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 필요(보건산업정책국)**가. 현 황**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全)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진행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27~128.

3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보건복지부 역할 강화 필요(질병관리본부)

가. 현 황

- 2016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는 내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관계부처 논의 및 대책수립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제외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미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29~130.

4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필요(보건의료정책관)

가. 현 황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적용대상 병원은 2004년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으며, 2005년은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6년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전체병원(330개→3,141개)으로 확대 필요
-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31~132.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정책관)

가. 현 황

-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음
 -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지 못한 상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재원 확보 계획을 포함해야 하지만,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를 포함하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33~134.

6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미흡(보건의료정책관)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운영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급여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미흡
 - 특히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35~136.

7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보건의료정책관)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간호사를 재교육·취업연계하여 간호인력을 확충하고자 「간호인력 취업 지원」을 추진
 - 20015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20억원이 전액 집행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목적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유·휴·이직·신규간호사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는 495명으로 당초 계획 720명 대비 68.8%에 불과하고, 교육에 참여한 495명 중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는 125명(25.3%)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p.137~138.

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검진항목 재평가실시 지연(건강정책국, 질병관리본부)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근거자료 마련을 위하여, 검진항목의 재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검진항목에 대해 2013년부터 5년 동안 재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15개 질환 중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이 실시되는 등 재평가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이 진단된 환자들이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 운영을 강화할 필요
- 건강검진 항목의 비용효과성 연구와 타당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 공개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p.139~141.

9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집행 개선 필요 (공공보건정책관)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하여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 사업(2015년 예산 141억원)을 추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생아집중치료실 신규 병상 설치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설치비 민간자본보조 총 105억원 중 개별 병원의 실집행액은 16억원에 불과(15.2%)
 - 2015년에 병상설치가 안되었지만, 2016년 운영비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불용가능성)
- 운영비 지원은 국가의 별도지원 방식이 아닌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안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42~144.

10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보건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4개의 펀드 운영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호·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부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집행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
 -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2015년 4월에 결성되어 2016년 5월말까지 투자처 발굴 중이나 해외진출 지원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이 지급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2016년 1월에 결성되어 2016.5월 현재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p.145~147.

11

특성화대학원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노인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가. 현 황

-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선정 지원
 -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3개 대학/14억원 중 13.2억원 집행),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2개 대학/10억원 중 9.9억원 집행), 친고령특성화대학원(2개 대학/6억원 중 5.8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친고령특성화대학원은 장학금이 일부 불용되었지만 실적보고서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보고
 - 경희대학교는 장학금 예산 9,000만원 중 3,789만원만 집행하여 5,621만원 불용, 차의과대학교도 예산 9,000만원 중 6,500만원 집행하여 2,500만원 불용하였으나 반납하지 않고 이월
- 모집정원 규모 차이가 예산편성시 고려되지 않고, 사업운영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운영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48~149.

12

치료재료 및 약제 급여여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개선 필요(건강보험정책국)

가. 현 황

- 한미 자유무역협정(2012.3.15.)에서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관련 사항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 검토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
 - 2015년 예산은 2억 2,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억 1,000만원만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약제 신청건이 2012년 이후 한건도 없었지만, 연례적으로 예산 과다편성하여 불용 발생
- 독립적 검토신청 요건 강화 및 독립적 검토자 재구성 필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방식을 현재의 1년 단위 외부용역 계약에서 안정적인 운영방식으로 전환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50~153.

13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사업의 일부지역 성과 저조 (공공보건정책관)

가. 현 황

-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첫해에 시설장비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차년도부터는 운영비 5억원을 지원
 - 2015년에 12개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 또는 시설장비비를 지원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 지원으로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병원이 용량이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p.154~155.

14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패널티 부여 필요 (공공보건정책관)

가. 현 황

-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하여 개선이 필요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p.156~157.

15

**예산 미배정에 따른 한의약 해외거점지원 사업 국회 증액예산 전액 불용
(한의약정책관)**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안은 5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10억원 증액하여 총 15억원으로 확정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 증액분(10억원)은 미배정되어 불용처리됨
 -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과 보건복지부의 집행은 국회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동 사업을 비롯하여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158.

16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집중 개선 필요 (보육정책관)

가. 현 황

- 2015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2,6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4%
 -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
 - 국공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2015년 예산액은 334억 4,600만원이고, 233억 7,1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2,629개소/서울 922개소(35.1%)로 서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집중
 - 2015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소 중 서울 어린이집은 6,598개소로 15.5%
 - 2015년 말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급받는 전체 아동 중 서울 지역 아동은 16.2%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59~160.

17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이용실적 제고 필요 (보육정책관)

가. 현 황

-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6~36개월 영유아)의 보호자가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
 - 2015년 126개 시군구에 시간차등형 보육을 지원하는 시간제보육반 237개소 지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간제보육반 1개소당 월 평균 113시간을 이용하였는데, 계획 대비 14.9% 수준
- 가장 이용실적이 좋은 서울과 가장 이용실적이 저조한 대전의 이용건수가 약 4배 차이로 지역간 편차 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61~164

18

노인돌봄서비스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노인정책관)

가. 현 황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방문·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여부에 따라 이용자수가 크게 달라지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방문·주간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인 무료인 서비스의 이용자수가 14,881명으로 유료인 서비스의 이용자수 7,660명보다 90% 이상 많음
- 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2015년 예산편성시 7,000명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원 인원은 901명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65~167.

19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부실 대책 필요 (노인정책관)

가. 현 황

- 2015년 기준 1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은 2,935개소이고, 1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은 2,148개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폐업률이 10인 이상 기관보다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2015년 기준 1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폐업률 15.2%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68~169.

20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사업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가. 현 황

-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란 만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것
 -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약 36만 여명 중 동 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12만 5,562명(약 34.5%)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원받는 아동 비율이 8.0%(세종특별자치시) ~ 65.3%(전라남도)로 차이가 크므로, 복지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기준 개선 필요
 - 현재는 시·군·구마다 똑같이 국비로 3억원씩 교부(서울은 자치구별 2억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70~171.

21

국민연금공단 보유 부동산 (사옥 및 리조트) 수익성 개선 필요 (연금정책국)

가. 현 황

- 2015년 보유사옥 임대수입은 계획액 168억 7,900만원, 수납액 157억 7,500만원.
국민연금복지타운 운영수입은 계획액 84억 300만원, 수납액 74억 3,6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옥의 2015년 평균 공실률은 14.7%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보유사옥 임대 수입은 16억원 가량 감소
-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 운영수입은 2015년 74억 3,6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88.5%이고, 국민연금복지타운 운영사업비로 129억 7,800만원 지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72~173.

22

기초연금 보조율 산정시 실수요 (기초연금수급률) 반영 필요 (연금정책국)

가. 현 황

- 노인의 소득보장 등을 위해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사업을 실시
 -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차등보조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노인인구비율과 기초연금수급률이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실수요와 다른 보조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수급률을 기준으로 보조율 산정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174.

23

장애아동가족지원 추계 부정확 개선 필요 (장애인정책국)

가. 현 황

- 장애아동가족지원이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발달재활서비스는 실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변경을 하고 이를 일부 미집행하였고,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그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75~176.

24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비용 추계 필요 (장애인정책국)

가. 현 황

- 2017년 하반기를 목표로 장애판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1차 시범사업 실시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제를 크게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필요인력과 소요예산을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하게 추계해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77~178.

25

추경으로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집행부진 (장애인정책국)

가. 현 황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자립 도모를 위해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
 - 2015년도 예산액은 추경 22억 7,000만원을 포함한 393억 3,300만원이고, 이 중 187억 1,200만원을 실집행
 - 추경에서 장애인의료시설에 12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10억 7,000만원 각각 증액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경에서 증액한 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추경예산 집행액은 0원으로 집행이 부진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79~180.

26

긴급복지 중복수급 등 개선 필요 (복지정책관)

가. 현 황

-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 1,313억 400만원 중 1,246억 4,400만원 실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대적으로 소득이 큰 계층이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으므로 집행 관리 필요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1~150%인 계층이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보다 긴급복지 지원을 더 많이 받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133명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81~182.

27

자활연수원의 자활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 (복지정책관)

가. 현 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활연수원 운영
 - 2015년 예산액은 46억 4,200만원이고, 46억 3,3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활사업 탈수급 개선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가족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응집력이 높아질수록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지가 증가하는데, 2015년 자활연수원 연수프로그램 중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은 38명(0.6%)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183.

28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관리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복지행정지원관)

가. 현 황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복지의 대상자 자격·지급·결산 등 관리
 - 행복 e-음 시스템은 다양한 사회복지급여 서비스의 대상자와 지원내역을 통합관리하는 복지업무 처리 지원 시스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의 부당수급 관리를 행복e-음시스템에서 각 구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라는 단일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184.

가. 현 황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조치 실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건수당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관리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적발건수 전체의 76.7%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건당 적발금액 117만 5,000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 185.

II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 사업 분석】

1 식약처 소관 교육의 교육비 본인부담 부과 검토 필요 (공통)

가. 현 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개 세부사업에서 116개의 교육 시행, 2015년 예산액은 41억 1,840만원이었으며, 집행액은 36억 7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실비 수준의 교육비 부과 검토 필요
 -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실험동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서, 법에 교육비 부과 근거 있음
- 한약재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조기지정 활성화 교육 등, 대상자가 해당 분야 업체 담당자일 경우,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본인부담 부과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94~196.

2 나트륨 저감화 사업 위탁사업비 추진방식 부적절(식품영양안전국)

가. 현 황

-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인 나트륨의 과잉 섭취를 줄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2015년 예산현액 31억 100만원, 29억 5,2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이미 상당기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당류 저감화’ 사업까지 확장하여 추진 필요
- 나트륨 저감화 사업중 상당부분이 위탁사업비(18억원)이며,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 직접 수행가능 사업의 위탁(지자체 공무원 전문역량강화 워크숍 등) 등 문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97~199.

3

고위험의료기기 인증업무 허가업무 역량 집중 필요 (의료기기안전국)

가. 현 황

- 의료기기 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군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역량의 집중을 위해, 저위험군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관리하는 저위험 의료기기 위탁인증제를 2015.7.29.부터 실시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업무 위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월평균 업무는 1,975건에서 70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도 업무처리기간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음
 - 고위험군 의료기기 심사인력은 2014년 56명, 2015년 51명, 2016년 48명으로 육아휴직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지원 등의 사유로 오히려 감소함
 - 업무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역량 집중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p.200~202.

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의약품안전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 현 황

-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약분야 민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실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수료율이 70%대 수준으로 교육성과를 제고할 필요
 - 교육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 불과(교육비의 10% 수준)하여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필요
 - －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육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p.203~204.

5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 필요
(식품영양안전국)**

가. 현 황

- 식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해 주방문화개선 사업을 실시
 - 2015년도 예산은 4억원으로 홍보, 캠페인, 우수사례 공모전 등에 2억원을 집행하였고, 개방형 주방으로 보수하는 식당 38곳에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8,573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6년은 시범사업 3년차이므로 2017년에는 영업자의 인식개선, 소비자 만족도, 실질적 매출액 증대 효과, 식중독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pp.205~206.

6

외부전문가 대상후보군 다양화 필요 (기획조정관)

가. 현 황

- 회의참석자 사례비로 4,409건(1,800여명)을 대상으로 6억 3,600만원 지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문이 특정 외부 인사에 편중하여 외부 전문가 대상후보군을 다양화하는 등 관리필요
 - 한국소비자연맹의 A는 46회 참석하여 6,858,300원, 한국식품산업협회의 B는 43회 참석하여 6,444,000원 지급받음
- 외부전문가 대상후보군을 다양화하여 회의 개최 목적에 맞는 전문 의견수렴 및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207~208.

7

수입식품 검사담당 공무원 피복비 지급 절차 마련 필요 (식품안전정책국)

가. 현 황

- 201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의 피복비 예산은 1억 20만원이었으며, 「수입축산물 검사」 사업으로 2,672만원, 「수입수산물 검사」 사업으로, 2,600만원으로 총 1억 5,2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실제 집행은 1억 4,552만원(집행률은 95.1%)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의 피복비 구입 및 관리 절차 마련 필요.
 - 구매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매년 구입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예산과 필요 인원수에 맞춰 제조업체와 단가를 계약하여 구입하고 있어, 제복(춘추복, 하복, 추동복, 방한복)마다 제조업체 및 제복의 질과 단가가 상이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209~210.

8

의약품정책과 성과 미흡 (바이오생약국, 의약품 정책과)

가. 현 황

- 2014년 8월 의약품정책과 신설되었으며, 2015년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7,100만원 중 5억 5,200만원 집행하고 1,900만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물품을 적극 발굴 필요
 - 과 신설 후 2015년 8월 11일 「의약품 범위 지정」 개정고시를 통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 세정제, 치태·설태 염색·착색제 등 3종의 물품군만 의약품으로 전환
- 제작된 홍보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립 미흡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211~212.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환경재정 운용의 안정성 제고 필요 (공통)

1-1.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취약 및 일반회계전입금 의존도 심화

가. 현 황

- 2015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5조 4,632억원으로 71.6%에 해당하는 3조 9,133억원은 일반회계전입금(일반회계전입금 및 추가전입금)에서, 28.4%인 1조 5,499억원은 법정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 저조로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용되고 있어,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분리·운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법정부담금 징수실적이 2013년 48.5%, 2014년 49.9%, 2015년 49.9%로 연례적으로 저조
 - 일반회계전입금비중이 2013년 67.8%에서 2015년에는 71.6%로, 그 규모도 2조 9,717억원에서 2015년에는 3조 9,133억원으로 증가
 - 이는 특별회계의 설치조건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부합하지 못함

1-2. 지출예산 과다산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가. 현 황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6개 사업으로 구성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2015년 예산현액은 1,599억원으로, 이 중 1,444억원이 집행되어 90.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부진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출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재정운용 필요
 - 2015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69%를 차지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은 각각 66%와 48.6%로 저조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및 일부 세부사업에 있어 동 회계 사업으로의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가. 현 황

-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96억원으로, 이 중 7,884억원이 집행되어 타 회계에 비하여 저조한 89.6%의 집행실적을 나타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발전특별회계 세부사업은 예산의 편성·집행·이월 등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44조에 따른 특례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개선방안 모색 필요
 - 2015년 동 회계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생태하천복원사업 63.8%,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60.5%,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6.2%, 자연생태공간 조성 56.8% 등으로 저조
-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일부사업은 동 회계 사업으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계별로 유역단위의 생태적 연결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복원대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대상 구간을 선택함으로써 유역단위의 복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0~17.

2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공통)

가. 현 황

- 2015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함한 1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97억원이며 이 중 851억원이 집행되어 65.6%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총사업비 및 공사입찰방식 협의지연, 사전계획 미흡 및 사전절차 미이행,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업부지 미확보와 같은 사업환경 관리미흡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총사업비 관리사업 각 단계별 사업과정 관리 강화 필요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및 제주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및 공사입찰방식 결정 지연으로 2015년 사업비 전액 이월
 -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댐건설 장기계획에 미반영 되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한 특례 인정 지연으로 2013년부터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2015년에도 예산액의 71%만 집행
 -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당초 선정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거부와 사업부지 내 유물발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5년 예산액의 55.9%만 집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8~21.

3

하수도사업 재정투자 방향 전환 필요 (상하수도국)

가. 현황

- 2015년 하수도사업 예산현액은 1조 8,830억원으로 이 중 1조 8,710억원이 집행되고 3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0억원은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하수도시설 노후화에 따라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도시지반 침하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노후하수도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중 확대 필요
 - 하수도 총 연장 126,606km의 38%에 해당하는 48,725km가 설치연수 20년 이상 경과
 - 일일 하수처리용량 500톤 이상 587개 하수처리장 중 43개에 있어 노후 하수관 침입수로 인해 계획유입수질 대비 50% 이하의 저농도 하수 유입
 - 2012~2015년간 하수관로 노후화에 의한 도시지반 침하는 235건이 발생하였는데, 2012년 10건에 대비하여 2015년에는 151건으로 급증
-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설치에 집중된 투자를 도시침수대응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으로 다양화시킬 필요
 - 2015년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은 2,424억원으로 전체 하수도사업 예산 1조 8,830억원의 12.8%에 불과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대응에 한계
 - － 하수도시설의 주요 기능은 오염된 하수의 적정 처리로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홍수 시 하천으로 빗물을 적시에 배출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22~24.

4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성 제고 필요 (물환경국)

4-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연 및 가동률 저조

가. 현 황

- 2015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 예산액은 600억원으로 이 중 595억원이 교부되어 542억원이 집행됨으로써 66.1%의 집행실적을 보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반대민원 속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설치된 시설의 가동률이 연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2013~2015년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이 64.5%, 57.0%, 66.1%로 저조
 - 2013~2015년간 설치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이 2013년 84.6%, 2014년 76%, 2015년 77.1%로 하락하고 있어 사후관리 필요성을 시사

4-2.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연 및 효과성 미흡

가. 현 황

- 2015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 예산액은 539억원으로 이 중 530억원이 교부되어 451억원이 집행됨으로써 60.1%의 집행실적을 나타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례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보다 일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집중되어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2013~2015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은 68.6%, 72.2%, 60.1%로 저조
 - 2015년 전국적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개 지역에 불과하고,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 51개 중 15개 시설만이 이들 관리지역에 위치

4-3.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연, 가동률 저조 등

가. 현 황

- 2015년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액은 2,050억원으로 이 중 1,784억원이 집행되고 266억원은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설치된 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관리 강화가 요구됨
 - 2013~2015년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은 78.9%, 67.3%, 73.1%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65개 사업 중 20개 사업의 집행률이 30% 이하이고 특히 10개 사업은 집행이 전무
 - 2015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75개인데, 이 중 29%에 해당하는 51개 시설의 가동률은 30% 미만이고 12개 시설은 가동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함
 - 175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방류수 수질개선을 초과하여 2회 이상 경고나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은 14개인데, 금성 농공단지, 합덕산업단지, 은산농공단지는 3회 그리고 보물 농공단지는 4회나 받아 상습적으로 수질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4-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시설 설치 지연

가. 현 황

- 2015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액은 211억원으로 이 중 211억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신규 사업은 사업지연과 포기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 노력 필요
 - 2015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역이 기존 낙동강 수계에서 기타 수계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를 위한 시행규칙 및 지침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협의 지연으로, 신규 사업 추진 지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25~36.

5

폐기물관리시설 추진실적 제고 및 투자효율 제고 필요 (자원순환국)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연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가동률 격차

가. 현 황

-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예산액은 329억원으로 이 중 326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3억원은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폐기물처리시설, 특히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음식물처리시설 가동률 격차가 커 이의 개선이 필요
 -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2015년 집행률은 각각 70.2%와 62.6%이고, 음식물처리시설의 2013~2015년간 집행률은 10% 미만
 - 부산시와 울산시의 음식물처리시설 가동률은 각각 55.9%와 35.2%인데, 제주시는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121.9%로 나타나 지역간 가동률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필요

5-2.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2015년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민자 포함 647억원이며 이 중 639억원이 집행되고 8억원은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연성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가동률, 생산수율, 판매단가에서 상대적으로 성형시설 보다 경제적인 비성형시설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되, 성형시설을 선호하는 지역은 이를 반영
-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가동률, 생산수율, 메탄함량 등에 있어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보다 효율적인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위주의 재정 투자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37~42.

6

미세먼지 저감방안 재정비 필요 (기후대기국, 환경정책실)

6-1. 경유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강화 필요

가. 현 황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과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의 2015년 예산 규모는 2,073억원
 -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의 62%와 85%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배출가스 저감수단간 경제성 격차가 있어 점진적으로 조기 폐차에 예산투입을 집중시킬 필요
 - 2011~2015년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의 계획 대비 실적 부진
 - 201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계획 2만 2,049대 대비 1만 6,254대 실제 보급, 엔진개조 계획대수 2,083대 대비 799대 실제 개조
 -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발생원 자체를 제거(폐차)하는 것이고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는 배출량의 일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조기폐차가 보다 경제적
-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및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의 통행세 감면 및 공채(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 감면범위 확대 등 경유자동차 대비 저공해자동차 구입에 따르는 상대적인 혜택 제공방안 검토 필요
 -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의 구매 축소를 위하여 에너지 상대가격(휘발유 100: 경유 85: LPG 50) 조정을 통한 경유가격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6-2. 사업장총량관리제 실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사업장총량제는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실제 이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할당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73억원으로 전액 집행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적정 배출허용량 할당으로 사업장총량제의 배출량저감 유도효과 제고와 사업장총량제 적용대상 이외 지역 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총량 규제수단 보완 필요
 - 2014년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실제 배출량 대비 할당량이 과다(1.5배) 설정되어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저감 유도효과 미흡
 - 사업장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동 기준은 대기오염원별 배출허용 농도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수단으로는 한계

6-3.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실적 저조

가. 현 황

-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 현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내 가동 또는 건설 중인 제철소에 한국기술을 적용한 집진설비를 구축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는 양국 협력사업
 - 2015~2016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1,000억원인데 2015년 예산액은 연간 사업비 중 한국 부담률 10%(중국기업 80%, 중국정부 10%)를 반영한 100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기업과 중국 기업 간 협력사업 계약실적이 부진한데, 지원대상 산업부문 및 투자지역 확대와 사업방식 전환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우리기술 홍보 부족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 미흡 그리고 특히 철강산업과 산동성에 한정된 투자 접근으로 한국과 중국 기업간 계약실적은 당초 예상액 1,000억원을 크게 밑도는 150억원 수준이고 정부의 지원금은 실시절계가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
 - 동 사업이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에 대한 적극적 홍보, 철강산업 이외의 산업부문과 산동성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영역 확대, 단년도 사업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사업 수행방식 변경 등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43~53.

7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7-1.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가. 현 황

-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판매가 금지되기까지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를 함유한 제품의 관리 사각 지대에서 제조·판매
 - 환경부의 경우 CMIT와 MIT는 기준화학물질이란 이유로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 PHMG와 PGH에 대해서 1996년과 2003년 유해성 심사를 수행하였으나 유해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정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대상 공산품에서 제외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지정·관리 대상에서 제외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유통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유해성 평가 그리고 이들 화학물질과 함유제품을 연계한 제품군 별 함유 유해화학물질 목록 마련 필요
 - 유해성이 검증된 유해화학물질이라도 새로운 용도의 제품에 사용될 시, 새로운 용도에 따른 유해성 평가와 제품의 유해성 평가의 재실시를 고려할 필요

7-2.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원인규명 프로세스 보완 필요

가. 현 황

-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학조사 절차가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지 않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규명이 지연
 -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외에 원인미상 질환에 대해 역학조사 수행 근거미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원인미상 질병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보완 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개정으로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추진근거는 마련하였지만 역학조사 실시 방법 및 규모와 관련 지침이 정비되지 않아 조속한 정비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54~59.

8

생물자원 전시·연구기관의 조속한 기능 정상화 및 연구역량 강화 필요 (자연보전국)

가. 현 황

-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생물자원 전시·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은 총 1,007억원으로 이 중 930억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 현원의 70%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체수행 연구비중이 낮아 연구역량 강화 필요
 - 연구과제 예산액 기준으로 2013년 76.8%, 2014년 75.9%, 2015년 61.2%를 외부수행 과제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연구과제 수 기준으로는 2013년 66.6%, 2014년 70.2%, 2015년 50.9%의 연구과제를 외부에 의해 수행
 - 2014년 개관한 국립생태원의 경우 2015년 외부수행과제 비율이 예산액 대비 9.5% 그리고 과제 수 대비 24.1%에 불과
- 2013년부터 시작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이 연례적으로 지연
 - 2013년 타당성 재조사 완료지연 그리고 2014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확정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전액 이월
 - 201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선정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른 대체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
- 국립생태원의 경우 기관의 대표적 연구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생태계변화 연구사업은 점봉산 육상중점생태연구지소 구축 지연과 이를 활용한 시범연구사업 지체로 시험연구비 11억원 중 5억원을 이월
 - 국제 글로벌 다양성 생태연구 플랫폼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지연으로 사업비의 51.1%만 집행되고, 생태계서비스 평가사업은 무리한 사업기획으로 전국단위 생태자원 목록 및 DB구축 등 내역사업을 자체적으로 불용시킴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60~62.

9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검토 필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가. 현 황

- 2015년 환경보건사업 예산현액은 115억원으로 이 중 102억원이 집행되고 7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원은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환경성 질환의 규명 및 이의 피해정도 등을 규명하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검토 필요
 - 환경성질환을 포함한 원인미상 질환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보듯 이러한 규명과 피해평가는 환경부보다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적합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63~64.

【개별 사업 분석】

1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제고 필요(상하수도국)

가. 현 황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 일일처리용량 5천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하수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수를 하수처리장 내 청소수나 세척수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액 273억원 중 251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의 재이용 실적이 부진하여 이의 개선대책 마련 필요
 - 2012~2014년간 생산량 대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이 12.2~13.5%로 저조
 - 2016년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의 재이용 목표량은 10억 9,023톤인데 2014년 실제 재이용량은 4억 4,401톤으로 연간 재이용율을 고려할 때 목표달성은 어려울 전망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65~66.

2

토양·지하수관리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상하수도국)

가. 현 황

- 토양환경보전대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토양지하수 관리사업의 2015년 예산현액은 360억원으로 356억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환경부의 역할이 환경조사에 치중되고 오염원인자의 정화 책임을 담보할 기제가 미흡하여 폐광산, 폐기물매립시설이나 노후 주유소 등 오염우려지역, 산업단지, 주한 미군기지 등에 있어 오염원인자의 오염된 토양·지하수 정화실적 미흡
 - 폐기물처리시설 등 오염우려지역 내 58개 정화대상시설 중 58개 시설 중 23개 시설 (39.7%)만이 정화가 완료되고, 산업단지 내 81개 정화대상 업체 중 52개 업체(64.2%)만 정화가 완료되었으며, 55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조사 결과 23개 구역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지만 정화사업 미진행
 - 부처 간 협력과 한·미 간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67~69.

3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대책사업 집행실적제고 필요 (상하수도국)

가. 현 황

- 동 사업은 구)장항제련소 제련과정에서 배출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입·정화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액 163억원은 전액 민간대행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에게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화설계 발주지연, 사업물량 및 사업내용 변경으로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매입구역 정화사업은 정화설계 발주지연으로 사업비 65억원 중 58억원 이월
 - 비매입구역(제련소 굴뚝반경 1.5~4km) 정화사업은 문화재 유구발견으로 정화물량이 축소되어 사업비 155억원 중 69억원은 불용되었고, 비매입구역(제련소 굴뚝반경 4~7km) 정화사업은 정화설계에서 합리적인 정화방안 수립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사업비 10억원 중 8억원은 이월되고 2억원은 불용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70~71.

4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전환 필요 (자원순환국)

가. 현 황

-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은 영농폐비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비닐처리공장이나 폐비닐중간처리시설의 수거·처리장비 확충, 처리공정 전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액 70억원으로 전액 민간대행사업자에게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폐비닐중간처리시설의 간이습식 공정전환사업은 수행기간이 일 년 이상 소요됨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과다한 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사업방식 전환 등을 통한 개선 필요
 - 2015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간이습식 공정개선사업의 지연으로 민간대행업자 집행실적이 54.6%로 저조
 - 기타 절차를 수행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4개월, 공정개선 공사 및 시운전에 10개월 등 간이습식 공정개선사업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72~74.

5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관리강화 필요 (환경보건국)

가. 현 황

-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사업은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현액은 168억원인데 이 중 147억원이 집행되고 14억원은 이월되었으며 7억원은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부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됨
 - 2013~2015년간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의 관리방안 수립 및 관리체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집행실적이 66.7%, 52.5%, 77.7%로 저조
 - 특히,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2014년 4개 연구과제 중 3개 연구과제 그리고 2015년 4개 연구과제 중 2개 연구과제의 사업비가 계약지연 등으로 이월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75~78.

II

고용노동부

【주요 현안 분석】

1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지원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공통)

1-1. 기업보조금의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2개 사업을 2015년 신규 도입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예산 196억원 중 4억원 집행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예산 50억원 중 2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활성화 방안 병행 필요
 -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의 2015년 집행률이 각각 2.0%, 4.0%

1-2. 생계비 지원사업의 비정규직 지원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과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추진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예산 300억원 중 276억원 집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예산 1,244억원 중 1,108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정규직 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소득기준과 금리수준 조정 필요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의 계획 대비 집행률 10.1% 등

1-3.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근로여건 개선지원의 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실태조사와 개선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서포터스 사업,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사업,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사업 추진
 - 비정규직 서포터스 사업의 2015년 예산 1억 9,300만원 중 1억 7,900만원 집행
 -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사업의 2015년 예산 5억 9,800만원 전액 집행
 -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사업의 2015년 예산 14억 900만원 중 13억 4,5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정규직 서포터스 사업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근로여건 개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방식 개편 필요
 - 사업장 당 비용을 보면 비정규직 서포터스 271만원,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사업 186만원 인 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15만원

1-4.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실직 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구직급여 사업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
 - 구직급여의 2015년 예산 4조 7,649억원 중 4조 3,823억원 집행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2015년 예산 5,904억원 중 5,899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높아 실직 시 생계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 2016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 보다 39.7%p 낮은 44.5%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87~99.

2

추경사업의 연내 추경효과 미흡 (공통)

2-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청년·중장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상담·직업훈련·알선의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 2015년 추경예산 3,374억원 중 2,562억원 집행되고 643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민간위탁기관 운영이 부적절하여 추경편성 효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2015년 당초 30만명을 지원하고 추경예산에서 36만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9만명 지원
 - 민간위탁기관에 적정 위탁규모 이상을 배정하여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2-2.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추경편성 취지 달성 미흡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2015년 추경예산 175억원 중 122억원 집행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2015년 추경예산 1,773억원 중 1,727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강소·중견기업 인턴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추경예산 효과 미흡
 - 2015년 강소·중견기업 인턴의 추경 목표 물량(1.5만명) 중 3,329명(22.2%) 지원

2-3.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의 청년 신규채용 성과 미흡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한 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을 2015년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
 - 2015년 예산 123억원 중 18억원이 집행되고 105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0.2%에 그쳤다는 점에서 청년 신규채용 성과가 미흡
 - 2015년 하반기 6,000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157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13명(0.2%)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쳤음

2-4.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사업의 성과부진 우려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추진
 - 2015년 추경예산 318억원 중 278억원이 집행되고 43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사업은 성과가 부진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므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드러났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필요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훈련과정 위주의 지원과 저임금 일자리 취업 지원의 문제점이 있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00~109.

3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문성·경쟁력 제고 필요 (고용서비스정책관)

3-1. 고용센터의 업무와 인력구조 개편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공공고용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국 94개 고용센터의 민간상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 추진
 - 2015년 예산 540억원 중 485억원이 집행되고 55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과 무관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업무와 인력구조 개편 필요.
 - 고용센터의 업무 중 직접적으로 고용서비스 기능에 해당되는 업무는 약 40% 정도이고 그 외의 업무가 과반 이상을 차지(김승택 외(2015),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한국노동연구원)

3-2. 고용복지+센터의 분산된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 추진
 - 동 사업 중 고용복지+센터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7년까지 100개 설치 계획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복지+센터는 당초 계획된 고용과 복지 연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이라는 목적 보다는 고용을 위주로 금융 등의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놓은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음
 - 고용복지+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을 전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실한 운영이 발생

3-3. 민간위탁 지원방식 개편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공공고용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민간위탁 사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청년취업진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원 수는 2015년 2,579명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업체에 지원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민간위탁사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2015년 370개 위탁업체 중 정부지원 인력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208개(56.2%)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10~116.

4 성과 부진으로 인한 폐지사업 과다 (공통)

4-1.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의 집행실적 부진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 청년이 근속 1년 마다 100만원(최대 3년)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을 2015년 신규 도입
 - 2015년 14억 9,600만원의 예산 중 6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고 4억 800만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 1년 만에 폐지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수요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사업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신규사업 설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조기에 폐지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의 중복 등으로 집행률이 28.6%로 낮았기 때문에 1년만 추진하고 폐지

4-2. 전직지원 장려금의 전직지원 성과 부진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인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퇴직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모작지원 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 20억원 중 8억원이 집행되고 12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 1년 만에 폐지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수요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사업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신규사업 설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조기에 폐지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015년 2,000명에 대해 20억원의 전직지원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14명에게 8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음

4-3.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부진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학벌·자격증 등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멘토로 선정하여 청년층에게 실무형 교육을 지원하고 동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2015년 예산 25억원 중 18억원이 집행되고 7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은 IT산업 분야에 한정된 교육 지원, 저임금 일자리 지원 등 사업성고가 부진하여 2014~2015년 간 추진되고 폐지
 -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 2년 만에 폐지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신규사업 설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조기에 폐지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4-4.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의 사업취지와 다른 운영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여성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지 주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사업 추진
 - 2015년 예산현액 10억 6,200만원 중 10억 6,000만원이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은 수요조사 등 사업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여 2014~2015년 간 육아연계형 유연근무 지원이라는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폐지되었음
 -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 2년 만에 폐지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신규사업 설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조기에 폐지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17~122.

5

청년 일자리사업의 고용성과 개선 필요(공통)

5-1. 청년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 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대표적인 4개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업률, 중도탈락률, 미취업률 분석
 - 2015년 집행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562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849억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지원 3,337억원,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 705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년 일자리사업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도 미취업 상태에 있는 비중이 높은 등 고용유지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13년 참여자 중 중도탈락자와 2015년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업의 비중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60.5%,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72.4%,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 46.3%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2013년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 중 중도탈락자 비중은 26.0%, 정규직 전환 후 1년 고용유지율은 38.5%에 불과

5-2. 재학생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운영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대학졸업 이후 실업자가 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대학재학 단계부터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 2015년 집행액: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278억원, 해외취업지원 362억원,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 948억원, 청년취업진로지원 69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가 대학지원방식으로 재학생 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졸자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지원방식 개편 필요
 -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학 자부담 비율, 자부담 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정 필요

5-3.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의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성과 제고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주도해서 만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에 따라 현장교사가 학교 대신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이를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 2,672억원 중 2,125억원이 집행되고 547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이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도제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 정비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은 졸업생과 대학생 지원 비중이 높아 고등학교 재학 단계에서의 선취업 후진학 지원 성과 미흡
 - － 2014~2015년 동안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람 12,597명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974명(7.7%)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23~134.

6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통)

6-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으로 구분 운영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재직자와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위기 시 고용조정으로 부터의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동 계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등의 정비 필요
 - 2015~2016년 일반회계사업(7개)이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으로 이 관되거나 일자리 사업(2개)이 신규 도입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수지 흑자는 2012년 6,445억원에서 2015년 647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24억원의 적자 전망

6-2. 실업급여계정의 법정적립금 배율 준수 필요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으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실업급여계정의 누적적립금 배율(0.7배)은 법정배율(1.5~2배)에 미달하여 고용위기 상황에 취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업급여계정 내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35~140.

【개별 사업 분석】

1

다양한 사업성과를 고려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계획 수립 필요 (직업능력정책국)**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기간·전략산업의 인력부족이나 수요증가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추진
 - 2015년 예산현액 3,338억원 중 3,337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수료자 취업률’ 외에 중도탈락률, 장기 고용유지율 등 다양한 사업성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지원대상자 기준으로 동 사업의 ‘수료자 취업률’은 64.3%인 반면 중도탈락률과 고용유지율을 감안한 ‘2014년 참여자 중 2015년말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은 27.6%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41~143.

2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검토 필요 (고령사회인력정책관)**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 추진
 - 2015년 예산 320억원 중 176억원이 집행되고 144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년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당초 계획에 비해 집행이 부진(2015년 55.1%)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인건비 감소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44~146.

3

한국폴리텍대학 신축사업의 대학정원 조정계획 마련 필요 (직업능력정책국)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사업 추진
 - 2015년 예산 1,498억원 중 1,487억원이 집행되고 11억원이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 신축 시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폴리텍대학의 정원 증가가 없도록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 설립기준」에 폴리텍 학생정원 총정량제를 두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47~148.

4

정책홍보 방송광고를 위한 예비비 편성 부적정 (노사협력정책관)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예방적 노사갈등관리, 노동조합 운영지도, 사업장의 노사상생 협력 등을 지원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은 31억원이며 예비비 54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85억원 중 84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노동개혁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2015년 9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5대 노동개혁법이 2015년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으므로 시급성 부족
 -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타 사업에서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 부족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49~150.

5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핵심연령층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로 지원정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 2015년 예산 408억원 중 407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물량이 확대되면서 남성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30~40대 여성의 지원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이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선택제 선택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양산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보완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51~154.

6

대구산재병원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필요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가. 현 황

- 대구산재병원의 운영비 지원은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15년 34억원 지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구병원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정확한 추계에 기초한 과도한 재정지원과 본부 운영비 충당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대구병원은 2013년 12억원, 2014년 22억원, 2015년 22억원 흑자 기록
 - 대구병원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산재병원 광고운영비를 대구병원 흑자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본부 운영비 중 가장 많은 비용(16억원) 분담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55~157.

7

산재예방요율제의 할인지표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가. 현 황

-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종에 대하여 사업주가 산재예방활동에 참여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임
 - 2014년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2015년에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은 25,137개 소이며, 보험료 감면총액은 125억 1,200만원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재예방요율제의 보험료율 할인지표가 일시적인 사업주교육 위주로 운영되어 산재예방효과가 적어 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실질적으로 갖추는 재해예방활동으로 규정·운영되어야 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58~160.

8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성과 저조 (직업능력정책국)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능력중심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이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보급하는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 예산 12억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의 경우 정부가 개발한 채용모델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타 사업과 유사한 문제가 있음
 - 보급형은 2015년 98개사 중 1개사가 채택하여 기업의 활용이 미흡
 -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의 맞춤형은 NCS 개발 및 활용사업의 컨설팅 지원과 사업내용(입사지원서 개발 등)이 유사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61~162.

9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의 고용유지 효과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노동시장정책관)****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과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 다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을 추진
 - 2015년 예산현액 1,484억원 중 1,434억원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최대 연 1,565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종료되는 1년 후의 고용유지율이 급감하였으므로 사업개선 필요
 - 2014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고용유지율은 1년 동안 68.2% 이상이었으나 1년 6개월 후에는 36.4%, 2년 후에는 27.8%로 급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63~164.

10

퇴직연금가입 사업주 부담금 지원사업의 전액불용 (근로기준정책관)**가. 현 황**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입 사업주부담금 지원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3년간 가입근로자(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5년 예산액은 22억원 이었으나 전액 불용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고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1인당 연 10만원의 사업주부담금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65~166.

III.

기상청

【주요 현안 분석】

1

기상관측장비 도입 및 설치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통)

가. 현 황

- 지상기상관측장비, 고층기상관측장비, 해양기상관측장비, 지진관측장비, 기상레이더, 항공기상관측장비 등 6가지 현업용 기상관측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사업의 2015년 예산현액은 509억원으로 이 중 42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65억원은 이월되고 23억원은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비 전용을 통한 신규 장비도입 및 설치가 추진되었으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 연도 중 국가태풍센터 연직바람관측장비 기반시설 실시설계 필요성으로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시설비에서 전용을 통해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고,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의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 전용으로 국가태풍센터 고층기상관측 비양시설 신축 추진
 - 조달공고 지연과 기획재정부와의 전용협의 지연으로 연직바람관측망 구입비, 연직바람관측장비 기반시설 시설비, 고층기상관측 비양시설 신축 사업비 전액 이월
- 지진관측장비나 공항기상레이더 등 기상장비의 도입·설치가 지연되고 조달업자와 기상청간 갈등이 빈발한 것은 이들 장비에 대한 검정기준, 표준규격, 검정체계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데서 상당 부분 기인
 - 지진관측장비와 공항기상레이더는 2013년 검사·검수과정에서 장비성능 문제가 발생하여 2013~2015년간 지속적으로 장비구입비, 설치비, 장비 임차료 이월과 불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
 - 현업 기상관측장비에 대해서는 검정기준이나 표준규격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진관측장비의 경우 검정기관 지정이나 제작업체(수입업체)의 검정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정비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73~175.

2

출연금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공통)

가. 현 황

- 2015년의 경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포함한 9개 연구개발사업이 출연금을 통하여 추진되었는데, 예산액 1,052억원은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PEC 기후센터의 설립근거가 미흡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도 순수 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적절성이 부족하여 법적 기반 정비와 일반예산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 현재 APEC 기후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범위 등을 명시한 법적 기반이 결여되어 출연금 지급 근거가 미흡
 - 동 센터가 추진하는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은 기술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사업이나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미래창조부의 심의를 받는 순수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되는 것이 부적절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2호는 동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상산업의 진흥에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초연구 과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
 - 2015년부터 기존 기상산업 진흥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과 더불어 (재) 기상기술개발원에서 관리하던 기상기술개발, 지진기술개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강화 등 기상업무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통합 관리
 - 기상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강화 등 기상업무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문기관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정비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76~178.

【개별 사업 분석】

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측기반국)

가. 현 황

- 동 사업은 2012~2015년간 162억원을 투입하여 기상장비를 탑재한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액 61억원 중 24억원은 집행되고 37억원은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상항공기 도입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운영 일정이 지체되고 관련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검사·검수관리가 필요
 - 기상항공기 도입업체인 (주)대주ENT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으로 미국 연방항공기상청의 추가적 부가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신규 등록신청 각하로 재개조를 위하여 미국으로 반송
 - － 기상청과 (주)대주ENT의 공정세부계획을 보면, 도입계약자는 기상장비 탑재를 완료한 후 부가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연방항공국이 발급한 부가형식 승인을 보면 기상연구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가 장비탑재 시 부가승인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79~180.

2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및 현업화 실적 제고 필요

가. 현 황

- 국립기상과학원은 자체 시험연구비를 활용하여 예보기술지원 및 활용연구를 포함하는 7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 예산현액은 200억 2,800만원으로 이 중 176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3~2015년간 국립기상과학원이 추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논문게재와 특허 출원·등록에 실적이 집중되어 사업화나 현업화 실적이 미흡
 - 2013~2015년간 616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개발사업 실적을 보면, 논문게재 198건, 특허 출원·등록 72건, 기술이전 및 사업화 6건, 현업화 62건
 - 현업화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집중 선택하고 예산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81~183.

3

위약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발생 최소화 필요 (기획재정관)

가. 현 황

- 2015년 위약금의 예산액은 1억 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8억 7,100만원이었으며, 기타 경상이전수입 예산액은 9억 5,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4억 2,1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액 대비 과도한 위약금 수납이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로 위약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예산액 대비 과도한 위약금 발생은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계약기간 동안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것을 의미하는데, 2013년에는 예산액의 2,972.3%, 2014년에는 2,973.3%, 2015년에는 764%가 수납
- 적정 예산편성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발생 규모 축소 필요
 - 예산액 대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급증은 예산 편성 시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 단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데, 2013년에는 예산액의 135.5%, 2014년에는 336.5%, 2015년에는 360.1%가 수납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84~185.

제14장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1****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주택토지실)****1-1. 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주택토지실)****가. 현 황**

- 2015년 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 시 분양보증 독점폐지에 대해 미논의
 - 2008년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분양보증의 독점을 폐지할 것을 발표
 - 2010년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주택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분양보증에 대한 독점 폐지를 2015년으로 연기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분양보증 독점폐지 재논의 시, 제도의 의의·운영취지·중소주택사업자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주택정책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분양보증을 제외한 건설보증은 이미 다수의 보증기관이 경쟁하고 있으며, 독점 폐지 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료가 반드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심사는 기업규모가 아니라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1-2. 분양보증과 금융성대출보증을 분리·운영할 필요**가. 현 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보증’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성대출보증’을 동일한 보증한도 내에서 운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성격이 다른 「분양보증」과 「금융성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금융성대출보증」의 한도를 축소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17.

2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택토지실)

2-1.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한 사업자 선정기준 재조정 필요

가. 현 황

-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
 -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6월 2차 공모부터 참가자격 요건 및 사업수행 실적 등 LH 공모기준을 개선
 - 기준을 개선한 후 공모가 이루어진 7개 사업지구에서도 시공능력순위 30위권 이내의 건설업체가 사업자로 선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개선된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2-2.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

가. 현 황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 지정된 공급촉진지구의 택지를 공공기관이 조성한 경우, 택지를 조성한 공공기관이 해당지구 내에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제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지를 조성한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8~22.

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토도시실)

3-1. 신규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진입도로가 설치된 일부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준공된 73개 산업단지 중 8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낮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분양률이 낮게 나타나는 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 시 미분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양수요를 엄밀히 검증하는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

3-2.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도로 준공시기 조정 필요

가. 현 황

-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준공시기가 불일치
 - 2015년에 준공된 15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2개는 산업단지 준공보다 1년 6개월 이상 조기에 준공되었으며, 2개는 1년 이상 늦게 준공
 - 2015년 준공 예정이었던 26개 사업 중 실제 준공된 사업은 1개에 불과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산업단지와 진입도로의 준공시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진입도로의 조기준공은 기반시설의 유희화를 초래하고, 지연준공은 산업단지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15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지연된 25개 진입도로는 산업단지의 조성현황 (① 조성사업이 이미 완료된 6개 산업단지, ② 2016년에 준공예정인 14개 산업단지, ③ 2017년 이후 준공될 5개 산업단지)별로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3-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내부도로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필요

가. 현 황

-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은 증가하였으나 도시지역에 필요한 첨단·융복합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부족
 -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는 공급과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첨단산업 발달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IT·BT 등에 대한 산업단지 수요는 증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외부 진입도로’ 건설을 지원하는 기존의 지원방식을 ‘내부도로’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면적 30만㎡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기준 하에서는 도시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3-4. 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 미흡

가. 현 황

- 6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추경예산은 1,151억원(추가 편성 350억원)
 - 빙그린·대구사이언스 국가산업단지에 182억원, 목포대양산업단지에 18억원, 대전하소·울산테크노·김해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각각 50억원 추가로 예산 편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행부진 등으로 342억원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여 추경 편성의 효과가 거의 없음
 - 빙그린·대구사이언스·김해테크노 산업단지는 ‘공사기간부족’(196억원 이월), 목포대양 산업단지는 ‘잡은 비로 인한 공정부진’(32억원 이월), 대전하소 산업단지는 ‘설계지연으로 인한 장기미계약분 불용’(89억원 불용), 울산테크노 산업단지는 ‘사면붕괴 보강지연’(22억원 이월) 등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23~31.

4

불법건축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이행강제금 감경조항 개선 필요(국토도시실)

가. 현 황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1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영리목적·상습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소규모(30㎡ 이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위반건축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이 신설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감경제도 도입 후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32~33.

5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건설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건설정책국)

가. 현 황

-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재해율이 중·대규모 현장의 재해율보다 높음
 -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재해율·사망만인율은 공사비 50억원 이상 현장의 약 2배
 -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수립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불확실한 ‘낙찰금액’에서 ‘공사예정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관리비는 공사 규모별로 충분한 금액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공사비 낙찰금액의 1~3%에 불과한 안전관리비의 산정비율을 상향하는 방법으로는 안전관리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34~35.

6

수자원 부문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상 문제점(수자원정책국)

6-1. 댐 추경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 부적절한 특례적용 · 경기부양효과 미흡

가. 현 황

- 추가경정예산으로 댐 사업에 1,80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
 - 충주댐 · 평화의댐 · 운문댐·섬진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586억원, 단양수중보 건설 및 주암댐 도수터널 사업 240억원, 기존 댐과 건설 중인 부항댐·한탄강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57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 258억원 중 2억원만 실집행
-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특례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예산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추가 편성된 150억원의 예산이 대부분 12월에 지급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었음

6-2. 수도 추경사업의 수공 부담분 미집행 · 집행실적 부진

가. 현 황

- 추가경정예산으로 수도 사업에 39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
 - 대청댐계통 광역 상수도 150억원, 구미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50억원,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 50억원, 광양 공업용수도의 노후된 관로 복선화 140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도 사업에 39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추가 부담분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으며,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대된 「대청 광역 상수도건설」사업과 「광양 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의 실적이 부진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36~41.

7

홍수·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개선사업 보완 필요 (수자원정책국)

7-1. 「댐 설계기준」에 위반하여 미설치된 비상방류설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

가. 현 황

- 「댐 설계기준」에서는 ‘비상방류설비’를 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도록 규정
 - 비상방류설비란 누수 등으로 인한 댐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고여 있는 물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수하기 위한 시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4개의 용수댐’ 중 적정규모의 비상방류설비를 갖춘 댐이 1개 밖에 없고, ‘15개의 다목적댐과 2개의 홍수조절댐’의 비상방류설비 적정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댐 설계기준」 위반 상황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
 -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용수댐 14개 중 비상방류설비를 갖춘 댐은 1개

7-2.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가. 현 황

- 직접적으로 댐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월류가 우려되는 댐 중 남강댐만 아직 치수능력증대사업 미착수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한 임시적 치수대책을 마련할 필요
 - 남강댐은 홍수조절을 위한 저수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 － 남강댐의 유역면적은 소양강댐과 비슷하나, 저수용량은 1/10에 불과
 -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화된 「댐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2000년 이후 설계홍수량(200년)을 초과하는 홍수가 5번이나 발생

7-3.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의 보강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는 댐체와 취수탑이 가장 중요
 - 지진 발생 시 ‘댐체’가 손상될 경우 댐이 붕괴되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수탑’이 지진으로 기능을 상실할 경우 대규모 용수공급 중단사태가 발생
 - 내진 안전성 평가결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모든 댐의 ‘댐체’는 내진안전성을 확보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취수탑에 대한 개선사업과, 선암댐 취수탑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
 - 17개의 취수탑 중 영천댐, 안계댐1·2, 사연댐, 대암댐, 연초댐, 운문댐1·2의 8개의 취수탑이 내진 안전성이 부족. 선암댐은 취수탑 도면이 없어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42~48.

8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통)

8-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월

가. 현 황

-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2~3개 사업의 이월액이 매년 예산액의 20%를 초과
 - 시행령에서는 ‘단위사업비 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이월은 20%의 범위에 미산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위사업비 예산액의 20%’라는 이월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
 -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인 예산배정결정을 지출원인행위로 봄에 따라 연례적으로 과도한 이월 발생

8-2. 예산배정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배정계획 변경 필요

가. 현 황

-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예산을 당겨서 배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은 세입부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액의 20~60%가 이월·불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예산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을 변경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49~53.

9

국토교통부 소관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통)

9-1.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산정기준 개선 필요

가. 현 황

- 시설부담금은 개발목적에 따라 산업입지·택지·물류 시설부담금으로 구분
 - 시설부담금이란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내에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물류 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토지·시설을 분양받는 자를 제외할 필요
 -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분양가에는 이미 공공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시설을 분양받는 자에게 물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비용부담
- 시설부담금 중 택지 시설부담금만 부과근거가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택지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 산업입지·택지·물류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9-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태 개선 필요

가. 현 황

- 국토교통부 소관 17개 부담금 중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은 사용용도가 제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 누적된 징수액-지출액 불균형을 개선하고, 향후에도 법정 사용용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
 - 2015년을 제외하고는 연례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계없는 사업에 지출.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법정 사용용도를 위반하여 지출한 누적금액은 총 2,536억원

9-3. 개발부담금 계획액의 산정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개발부담금의 2015년 계획액은 3,550억원이나, 실적은 48.7%에 불과한 1,730억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과다하게 편성된 개발부담금 계획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
 - 2015년 개발부담금 세입계획은 2014년 세입계획에 경상성장률 추정치 6.6% 적용하였으나, 실제 경상성장률은 2012년 7.7%에서 2015년 4.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 개발부담금 징수금액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9-4. 원주·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2015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금액과 징수율이 2014년에 비하여 급격히 하락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른 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원주·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54~60.

10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 (항공정책실)

가. 현 황

-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도서지역 접근성 향상, 지역관광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지원 등을 위해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단위사업
 - 단위사업 예산현액 95억 2,400만원 중 15억 1,100만원 집행, 74억 8,000만원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4년으로부터 이월된 예산만을 집행하고 2015년 예산인 설계용역비는 집행하지 못함
 -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11월 3일에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환경부의 철새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 연구 추가 요구 등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가 12월 18일에 이루어지는 등 사업 지연
- 2016년 사업 진행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의 턴키 공고가 모두 유찰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6개월간 ‘흑산공항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진행중이며, 턴키공사 발주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진행중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61~62.

11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실집행 및 추경집행 부진 (철도국)

11-1. 추경 대상 사업의 추경 증액분 미집행

가. 현 황

- 일반철도건설 프로그램 내 추경 대상 12개 사업의 추경예산은 3조 4,83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5,907억 원을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연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철도 건설 프로그램 내 추경 대상 12개 사업의 본예산액은 2조 8,414억 원으로, 철도시설공단 실집행액 2조 7,246억 원은 본예산액보다도 1,168억 원 적음
 - 추경으로 인한 증액 예산이 출연기관 단계에서 집행되지 못하여 추경집행의 효과가 경기활성화 효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11-2. 일부 세부사업의 실집행 미흡 및 연도말 출연금 집행의 문제점

가. 현 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교부한 출연금 4조 6,697억 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집행액은 3조 5,474억 원(추경예산액 4조 6,443억 원 대비 실집행률은 76.4%)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7개 세부사업 중 12개 세부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액 대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액 비율이 75% 미만
 - 일반철도 건설 프로그램의 출연금 실집행률이 2013년 93.2%, 2014년 97.6%인데 반해 2015년에는 75.7%로 크게 하락
- 실집행률이 75% 미만인 12개 세부사업의 4사분기 출연금 교부액 합계는 3,149억 원이며, 동 사업들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의 이월액은 총 6,432억 원으로, 4사분기에 교부한 출연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월별 실집행실적·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출연금을 편성·교부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63~68.

12

광역철도 건설지원사업의 실집행 및 추경집행 부진 등 (철도국)

가. 현 황

- 광역철도건설지원 프로그램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을 지원하는 것
 - 광역철도 건설지원 프로그램 내 9개 세부사업의 실집행액은 4,539억원으로, 추경예산액 5,509억원 대비 실집행률은 82.4%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단계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0%): 2015년 8월까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사업자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2015.9.~2016.2.)하고 있어, 예산으로 편성된 토지보상비 명목의 출연금 450억원을 전액 불용
 - 신분당선(광교-호매실)사업(0%): 2014년 11월 KDI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KDI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재검토가 진행중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 2015년 예산인 1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고, 2014년으로부터 이월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3억원만 집행
 -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A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B노선은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노선을 재기획하고 있으며,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 별내선 복선전철(실집행률 7.2%)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지방비 매칭이 미흡하게 나타남
 - 서울시 집행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50:50 비율로 투입하여야 하나 2015년에는 국비만 100억원 교부되었으며, 2016년 지방비 현액은 68억원으로 해당연도 매칭예산(47억원)을 21억원 초과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79억원의 지방비 미확보예산이 발생
- 광역철도 건설지원 추경대상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
 - 추경 대상 세부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진접선 복선전철사업은 모두 실집행 단계에서 추경을 통해 증액한 50억원보다 많은 이월액(별내선 710억원, 진접선 136억원)이 발생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69~72.

13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등 (도로국)

13-1.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경 증액분 집행 미흡 등

가. 현 황

- 고속도로 건설 단위사업의 국고와 도로공사 전체 예산액은 3조 6,744억원이며, 이 중 3조 1,693억원을 실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이-천안(실집행률 0%) 서평택-평택(실집행률 31.7%), 함양-울산(실집행률 67.7%), 상주-영덕(실집행률 73.7%)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015년 예산액 대비 실집행 저조
-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과거연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2011년 및 2012년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고 출자금과 도로공사의 매칭예산을 99% 이상 집행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실집행률이 92.6%, 91.2%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실집행률이 86.7%로 감소
- 추경 대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집행률은 81.5%로, 추경 증액분 집행이 부진한 측면
 - 추경 대상 10개 사업의 국고 출자금과 한국도로공사 자체 예산을 합한 총 예산은 2조 3,481억원으로, 이 중 1조 9,140억원이 실집행
 - 상주-영덕·함양-울산·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미집행액 3,053억원은 3개 사업의 추경증액분 1,500억원의 2배가 넘음

13-2. 2015년 완공사업의 국가 출자금 과다 집행

- 2015년에 공사가 완료된 5개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612억원
 - 2015년 완공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612억원 중 245억원은 국고 투입액이므로, 동액수만큼 국고 출자금이 과다 교부
 - 고속도로 준공 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완공 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73~79.

14

도로건설사업의 토지매입비 실집행 개선 필요 (도로국)

가. 현 황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대도 및 지역간선국도 건설사업 중 총 49개 세부사업에 계상된 토지매입비 예산을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집행
 - 49개 사업의 2015년 추경예산액은 5,481억원이며,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현액 7,845억원 중 7,738억원을 한국감정원에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단계에서는 토지매입비 집행률이 99.9%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액이 한국감정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음
 - 2015년 한국감정원으로 교부된 7,738억원과 전년도에 교부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 1,307억원을 합한 토지매입비 예산현액 9,045억원 중 5,294억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58.5%로 나타남
 - 토지매입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18개 사업에서는 타 사업으로부터 2,617억원의 이전용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된 토지매입비는 1,024억원에 불과
- 토지매입비 실집행실적은 국가결산과정에서 실집행 집계 대상 사업에서 벗어나 있어 집행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 정부는 보조금(민간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만 실집행액을 집계하고 타 비목에 대해서는 100% 실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의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과 같이 나타남
- 토지매입비 지급을 한국감정원에게 위탁하여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시 지급 절차가 부적정하므로 개선 필요
 - 일부 사업(위탁수수료 41억 2,200만원 중 35억 9,800만원)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에 위탁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면,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기 교부한 토지매입비 잔액 중에서 청구된 위탁수수료를 한국감정원이 직접 수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고금 지출 시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 토지매입비 잔액 등의 국고 수납시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7조 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80~83.

15

차선의 시인성(視認性, visibility)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 (도로국)

가. 현 황

- 도로 노면표시 중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의미
 - 차선의 도색 등 유지관리는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가, 지방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 시인성(視認性, visibility)이란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성질을 말하는데, 최근 차선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시인성이 낮은 경우가 있어,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선 시인성의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
 - 차선은 일반적으로 1~2년마다 재도색이 필요하나, 도로관리청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재도색 시기가 지난 차선을 방치하여 불량차선이 발생하는 경우
 - 차선도색 하자관리 시스템이 미흡: 차선도색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짧음
 - 차선도색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여, 투입 예산 대비 도색공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
 - 차선도색공사 발주시 ‘노면표시 설치’를 규정하는 업종이 없어 통상 ‘도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 차선의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 적정수준의 차선도색 예산을 확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차선도색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정기적 재도색, 고성능 도색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차선도색공사의 부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장비를 도입
 - 차선도색공사 발주시 시공능력이 반영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
 - － 과거 차선도색공사 실적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공사 발주 규모 대형화 등
 - 차선도색의 원료가 되는 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84~87.

16

임시공휴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 미흡 (도로국)

가. 현 황

-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두 번의 임시공휴일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구간과 국토교통부 소관 전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하루 동안 면제(각각 146억원, 186억원 통행료수입 감소)
 - 임시공휴일의 내수활성화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면제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수진작·관광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에는 특정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만 규정되어 있고, 특정 날짜의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음
 - 특정 날짜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라 통행료 면제를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 조항 역시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유료도로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임시공휴일 당일에만 ‘물가 수준·타 교통수단의 운임·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내수활성화’가 동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 운영 법인의 수입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국가 재정이 소요
 - 2016년 임시공휴일 통행료 감면분 중 43억원(2015년 50억원)이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동 금액만큼을 예산에서 민자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 미리 예산에 정한 바가 없이 국고 지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88~90.

【개별 사업 분석】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의무적 분리도급 준수 필요 (주택토지실)

가. 현 황

-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공공임대리츠가 발주한 6개 사업은 정보통신공사가 건설·전기공사와 분리되지 않고 일괄발주
 -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정보통신·건설·전기 등의 여러 공정이 일괄발주된 것은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도급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위반
 -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아파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괄발주 후 정보통신·건설·전기 등의 여러 공사를 분담하여 실시하고 각자 책임지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위반
 -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결성되는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계약은 외형상 1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분리도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임대주택건설 공사에서 법률이 정한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편의상 1개의 계약’을 체결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
 -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입찰참여는 ‘분리발주’를 할 경우 더욱 용이
 - 분담이행방식이 적용되더라도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
 - 분담이행방식의 일괄발주는 정보통신공사의 중속성을 탈피하고, 영세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취지에 반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91~95.

2

재정비촉진사업의 과다한 이월을 초래하는 국비 교부기준 개선 필요 (주택토지실)

가. 현 황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교부지침 강화
 - 지방비 누적 매칭률이 50% 이상이고, 당해 연도 지방비를 100% 확보한 경우만 국비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방비를 확보토록 하는 현행 국비 교부조건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교부조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기획재정부의 예산교부지침으로 인하여, 예산의 과다한 이월·사업계획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
 - 지침에 따라 11월까지 1,150억원의 예산 중 95억원만 지방자치단체로 교부
 - 국비 교부기준을 12월에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755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전액 이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96~97.

3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국토도시실)

가. 현 황

-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예산 집행부진 및 사업지연이 연례적으로 반복
 - 이월액은 2012년 40억원, 2013년 69억원, 2014년 275억원, 2015년 491억원으로 증가
 - 1차 시범사업 4개 지구의 실효율은 10~20%로 정체, 2015년부터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2차 시범사업 4개 지구의 실효율도 35.8%에 불과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월액이 증가하는 등 실효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효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98~99.

4

해수담수화시설의 부지선정 기준 개선 필요 (수자원정책국)

가. 현 황

- 임해지역 산업단지·농업용지의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23개 소규모 담수화시설과 2개의 중대규모 담수화시설 설치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수담수화시설 안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지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
 -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1,9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12. 부산 기장군에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이 안정성 논란으로 1년 넘게 미가동
 - 사업부지 선정기준에는 적정 부지면적, 용수 수요, 비용 분담, 해수취수의 경제성, 야간 소음 허용여부, 담수 수송비용, 부지 지지력의 ‘경제성 요건’만 규정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00~101.

5

건물 매각대금의 회계처리 시정 필요 (항공정책실)

가. 현 황

-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건물매각대는 공항시설 중 공항시설 유자·보호에 지장이 없고, 장래 사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건물)의 매각 수입
 -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919억 9,800만원을, 2012년에는 1,986억 500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천공항 급유시설과 화물터미널 매각시, 매각 대상에 따라 세입목을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건물매각대에 일괄 세입조치
 - 화물터미널·급유시설 영업권의 경우 ‘기타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목에, 기계설비의 경우 ‘기계기구 매각대’에 계상했어야 하는 것으로, 수납과목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02~103.

6

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사업 성과 제고 필요 (항공정책실)

가. 현 황

- 「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항공우주기술·국제항공전문가·조종인력 양성, 항공인턴십 지원 등 항공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 2015년 예산현액 48억원 중 47억 9,0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내역사업별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비행훈련원 지원사업: 수료인원 비율과 조종인력의 취업률 증대 노력 필요
 - 항공 인턴십 지원사업: 성과지표인 인턴십 지원 인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감소
 - 항공특성화 고교 지원사업: 해당 고교 졸업자의 항공분야 취업실적이 저조한 추이
 - 성과가 극히 저조한 학교의 경우 보조금 지원 축소정책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04~106.

7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 포장사업의 집행 개선 필요 (항공정책실)

가. 현 황

-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 포장」사업은 청주공항에 초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할 경우를 대비하여 활주로 갓길을 포장하는 사업
 - 2015년 예산액은 20억원이며, 이 중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1억 4,600만원만이 집행되고, 시설비·감리비 등 18억 4,300만원은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는 하계스케줄(3.25.~10.25.) 기간은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작업시간이 부족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 실시설계를 3월 말에 착수하여 8월까지의 설계용역이 진행되었고, 활주로 포장 공사용역 입찰이 10월 20일에서 11월 5일까지 진행되어 공사 계약은 하계스케줄이 종료된 이후인 11월에야 체결
 - 설계 완료 후 하계스케줄 종료(10.25.) 전에 입찰 및 계약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107.

8

항공안전 교육훈련사업의 안전과 무관한 교육 실시 (항공정책실)

가. 현 황

- 「항공안전 교육훈련」사업은 항공안전감독관 등 항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유지하고 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항공안전 교육훈련사업을 통한 국내교육훈련 중 항공안전과 연계성이 적은 교육훈련 (예: ‘부동산 권리분석과정’, ‘자산관리 및 인생설계 과정’ 등)이 있으므로, 시정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108.

9

철도 PSO 보상비 지급의 법령 준수 필요 (철도국)

가. 현 황

- 「PSO 보상」사업은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등 철도 운영시 제공한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보상하는 것(2015년 예산액 3,509억원을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로부터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뒤에 분기별로 분기 초에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지출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 분기별로 보상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3조는 철도공사가 PSO보상을 받는 벽지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시행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09~110.

10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집행 부진 (철도국)

가. 현 황

-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사업은 충북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거쳐 전남 목포역까지 249.1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2015년 예산 300억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예산액 30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1.2%에 불과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111.

11

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철도국)

가. 현 황

- 「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신규사업
 - 2015년 예산액 130억원 중 1억 2,000만원 집행, 3억 3,900만원 이월, 125억 4,100만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
 - 예산안 제출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이었던 사업 9건 중에서 실제로 2015년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된 것은 1건에 불과
- 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총액계상형식 예산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동 사업은 사실상의 총액예산편성방식을 택하고 있어 총액계상사업만 세부내역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예산을 내역 없이 편성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은 해당 노선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2~114.

12

고속도로 조사설계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부진 등 (도로국)

가. 현 황

- 「고속도로 조사설계」사업은 고속도로의 기본·실시설계비(건설비 제외)를 편성하는 사업
(예산현액 841억 800만원 중 545억 6,8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대구순환 노선변경, 영덕-삼척사업 재기획 연구용역 등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 편성 필요
- 시설부대비와 여비 집행은 고속도로 조사설계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5~117.

1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기 부적정 (교통물류실)

가. 현 황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
 - 2015년 예산액 28억 8,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17억 100만원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11억 8,300만원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금을 교부한 두 지방자치단체 모두 2015년에 실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8~119.

14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의 분석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교통물류실)

가. 현 황

-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교통안전공단에 구축하여,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
 - 2015년 예산은 13억 3,000만원으로, 전액 교통안전공단에 출연되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이 중 13억 2,400만원을 실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운행기록장치 장착대상 대수 대비 분석 실적(활용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0.1%, 2012년 4.0%, 2013년 13.1%, 2014년 29.0%, 2015년 29.4%로 저조
-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자료제출비율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업종별 분석률을 살펴보면, 개인택시의 분석률이 1.0%로 가장 낮고, 개인화물 22.3%, 법인화물 24.8% 순으로 자료 제출비율이 저조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20~122.

15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자동차관리관)

가. 현 황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사업은 자동차 및 교통안전 연구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연도별로 선정된 4~5개의 지방자치단체 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사업(2015년 예산 3억원 전액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후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개선 권고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는 비율이 저조
 - 2013년에 조사하였던 4개 지자체의 2015년 평균 이행률이 16%로 극히 저조
-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권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하여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행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23~124.

16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의 부적절성 (교통물류실)

가. 현 황

-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 및 튜닝 활성화 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된 튜닝부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交通安全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출연금 중 10억원은交通安全공단이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센터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사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전산망 구축은 민간 인증기관이 구축하여야 하는 것으로,交通安全공단의 업무소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 구축은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국고를 통해 구축하는 것은 부적절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25~129.

17

연구용역의 목적 외 집행 과다 (교통물류실)

가. 현 황

-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사업 내 연구개발비는 녹색교통 수단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녹색교통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사용됨
 -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 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1,100만원 중 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200만원은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연구용역의 비중이 과다
 - 2015년에 9건의 연구용역을 계약(계약액 6억 6,957만원)하였으나, 이 중 4건(계약액 3억 3,940만원, 전체 계약액 중 50.7%)이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수단의 발전방향과 무관한 연구용역
 - －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체계 재정비 및 합리적 규제 개선, 전국 BIS 도입 및 통합서비스 방안 마련 연구, 교통분야 법령 및 계획 정비 연구
-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사업은 2013년과 2014년에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을 지양하도록 국회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집행을 반복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30~131.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현안 분석】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건설 집행관리 강화 필요 (기반시설국)

1-1.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 사업의 추경예산 집행 부진

가. 현 황

-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사업은 세종시와 공주시 간 6.3km 구간의 국도 36호선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경예산액 255억 8,500만원 중 171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미흡
 -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1-2. 오송-청주공항, 오송-청주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추경예산 집행 부진

가. 현 황

-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사업은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4.72km 구간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오송-청주 연결도로」사업은 오송과 청주를 연결하는 4.51km 구간의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
 - 2015년 추경예산액은 각 사업별로 본예산보다 100억원씩 증가한 555억 7,800만원이며, 예산현액 721억 3,400만원 중 577억 8,9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비 증액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음에도 시설비의 집행은 저조하게 나타나며, 오송-청주 연결도로사업의 경우 시설비 집행액이 본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함
 -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사업은 추경을 통해 시설비를 97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나 이 중 63억 600만원이 이월되고 2억 9,000만원이 불용
 - 오송-청주 연결도로사업은 추경을 통해 시설비를 85억 3,600만원 증액하였으나 시설비 중 26억 7,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전용하고, 60억 1,900만원은 이월, 3억 6,400만원은 불용시킴 - 시설비 집행액 67억 3,000만원은 본예산 70억원보다도 적은 액수

1-3. 당초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등

가. 현 황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사업은 외삼동과 유성복합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
 - 2015년 예산현액 14억 2,100만원 중 8억 3,900만원이 집행
-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사업은 당진-대전 고속도로 공주나들목에서 공주시 송선교차로까지 3.12km의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
 - 2015년 예산현액 15억 8,700만원 중 6억 8,500만원이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두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계약기간은 2014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18일임에도 2015년 예산안 편성시 기본·실시설계비 잔여소요 100%를 모두 편성
 - 결산시 설계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설계비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설계를 종료하겠다는 예산 편성시의 계획이 달성되지 않음
-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용역 대금 일부를 기본 조사설계비가 아닌 실시설계비 비목으로 집행하여 집행지침을 위반

1-4.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가. 현 황

-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사업은 모두 2015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 사업 모두 선행절차의 미비로 2015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
 -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사업: 대전지역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천부지 경계확정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교량연장 확정을 위한 협의기간이 소요
 - 오송-조치원 연결도로사업: 대전지역의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정비계획 자문 및 심의 일정에 따라 과업이 중지
 -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사업: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설계용역진행이 중단
- 행정도시-부강역 연결도로사업과 오송-조치원 연결도로사업은 사업 지연의 근거가 된 하천기본계획의 완료 시점(2016년 10월 26일)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
-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에도 타당성재조사의 재수행이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당초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던 것으로 보임

1-5. 건설공사 형식·주관사 변경으로 인한 집행 부진 등

가. 현 황

- 「행복도시-청원IC 연결도로」사업은 세종시와 경부고속도로(청원IC)간의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 2015년 예산현액 231억 700만원 중 8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49억 5,700만원을 이월
- 「행복도시-청주시 연결도로」사업은 세종시와 청주시 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
 - 2015년 예산현액 472억 1,500만원 중 247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223억 5,900만원을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관사 변경·건설공사 형식 변경 등의 문제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16년 준공 예정에 맞추어 공사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
 - 행복도시-청원IC 연결도로사업의 경우 주관사인 대아건설의 법정관리(2015년 3월 신청)로 5개월(2015.4.~2015.8.)동안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비 예산의 이월이 발생
 - 준공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주관사 선정시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
 - 행복도시-청주시 연결도로사업의 경우 석곡교차로 형식 변경(불완전입체 → 완전입체)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발생
 - 향후에는 공사중 설계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사전 설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교차로 건설 형식을 최적 대안으로 선택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41~151.

2

토지매입비 예산의 집행 부진 및 집행상 문제점 (기반시설국)

가. 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 중 토지매입비가 집행된 사업은 「오송-청주 연결도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행복도시-대덕테크노 연결도로(1구간)」, 「행복도시-대덕테크노 연결도로(2구간)」의 4개 사업
 - 4개 사업의 추정 기준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213억 2,100만원이며,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사업 등 타 사업으로부터의 토지매입비 조정액(74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12억 3,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0억 4,9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이 중 395억 2,400만원을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토지매입비를 98.7%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액이 한국감정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음
 - 2015년 토지매입비가 집행된 4개 사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집행액은 총 395억 2,400만원이나, 이 중 한국감정원이 실제로 토지소유자에게 집행한 보상비는 228억 3,300만원에 불과
- 토지매입비 실집행실적은 국가결산과정에서 실집행 집계 대상 사업에서 벗어나 있어 집행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 정부는 보조금(민간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만 실집행액을 집계하고 타 비목에 대해서는 100% 실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의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과 같이 나타남
- 토지매입비 지급을 한국감정원에게 위탁하여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시 지급 절차가 부적정하므로 개선 필요
 -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에 위탁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면, 행복청은 한국감정원에 기 교부한 토지매입비 잔액 중에서 청구된 위탁수수료를 한국감정원이 직접 수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고금 지출 시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 토지매입비 잔액 등의 국고 수납 시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7조 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52~154.

3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적기 완공을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공공건축추진단)

3-1.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A) 건립사업의 안전조치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A) 건립」사업은 1생활권의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는 사업
 - 2015년도 예산현액 125억 6,900만원 중 82억 2,300만원 집행, 42억 5,700만원은 이월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사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 2015년 8월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의 처분에 따른 공사 중지(70일)와 추가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공사중지기간이 있었음
 - 2016년에는 이월액 125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159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는 총사업비 318억 9,400만원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A)의 적기 완공을 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무리한 공사 진행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3-2. 건립 지연에 따른 국회 시정조치요구 위반 등

가. 현 황

-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B) 건립」사업과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각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 두 사업 모두 예산현액이 1억 5,100만원이며,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B) 건립」사업은 전액 미집행,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69.5%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
-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설계 당시보다 노무비 등 단가가 상승하여 조달계약을 취소하고 총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문제가 발생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55~158.

【개별 사업 분석】

1

복합민원센터 건립사업 불용 및 사업목적 변경 등 (공공건축추진단)

가. 현 황

- 「복합민원센터 건립」사업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민원창구·주차장·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민원센터 6개소를 건립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정부세종청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
 - 예산현액 831억 8,000만원 중 집행액은 없고, 76억 6,000만원 이월, 755억 2,000만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전액 불용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
- 2015년 중 기본계획안의 재변경을 통해 당초 복합민원센터 건립의 주된 목적이었던 ‘민원센터’ 건립이 계획안에서 제외되어, 사업의 목적이 예산과 상이하게 변경
- 2016년 예산의 집행 역시 불투명한 상황
 - 복합민원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 3월 중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6년 10월에야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59~161.

2

경찰서 건립사업의 전액 불용 문제 (공공건축추진단)

가. 현 황

- 「경찰서 건립」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의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세종시 내 경찰서 청사를 건립하는 신규사업
 - 기본설계비로 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찰서 건립 사업은 세종시 내 경찰서 건립의 시급성을 이유로 직제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직제협의 결과 반영되지 않아 전액 불용
- 직제 개정 여부에 따라 2016년 예산의 집행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직제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162.

3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 부진 등(공공건축추진단)

가. 현 황

-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세종시 내에 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창업 지원, 창업 후 신생 기업의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세종시 내 4생활권에 건립하는 사업
 - 예산 15억 7,000만원 중 집행액은 없으며, 14억 4,300만원 이월, 1억 2,700만원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건립기본계획 등의 미비로 인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내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식산업센터의 준공 이후 세종산학융합본부(가칭) 등에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을 검토중이나, 운영주체의 적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63~164.

4

아트센터 건립사업의 과도한 사업 지연 문제(공공건축추진단)

가. 현 황

-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세종시에 복합 문화예술시설인 아트센터(공연장, 전시관, 영상관 등)를 건설하는 사업(이월예산 4억 1,200만원이 전액 불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트센터 건립규모를 확대하고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2010년에 기 실시한 아트센터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타당성재조사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액이 전액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조
-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나타났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아트센터 건립규모를 추가로 조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2016년 예산의 집행 역시 불투명
-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맞추어 추진한 설계용역의 중지 과정에서 계약예규를 위반하였으며, 용역계약 중지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지연보상금이 발생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65~167.

III

새만금개발청

【개별 사업 분석】

1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 방식 개선 필요(기획조정관)

가. 현 황

- 「새만금위원회 운영」사업 내의 ‘직책수행경비(250-02)’비목은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장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300만원 중 1,100만원이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직책수행경비 지급 대상이라 보기 어려움
 -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규정된 직위가 아니며,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역할 외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의 활동을 ‘업무의 수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 새만금개발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유사하게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타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장에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
- 직책수행경비 지급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급액수가 과도(최대 112.5만원)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73~175.

2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개발사업국)

가. 현 황

- 새만금산업단지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32,000톤/일 용량의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
 - 2015년 예산으로 40억원 전액을 피보조기관인 전라북도 군산시에 교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고 군산시 역시 이를 전액 집행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군산시의 위탁을 받아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에 교부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함
-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관리 강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76~177.

제15장

여성가족위원회

I

여성가족부

【주요 현안 분석】

1

**학교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가. 현 황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이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지원센터(꿈드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의 분포 비율이 지역별로 상이함에도 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분배되는 지원액은 동일하여 개선이 필요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22~225.

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가족정책관)

가. 현 황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3.25.)으로 사업시행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2015년 3월)되었고, 상담·협의·소송·채권추심·모니터링 서비스와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서비스 사업의 채무자(비양육한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필요
- 양육비이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필요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26~228.

【개별 사업 분석】

1

구로가족센터 건립 예산 2회계연도 초과이월 우려 (가족정책관)

가. 현 황

- 서울 구로구에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함
 - 구로가족센터의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06억원이었으나, 예산확정 이후 구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총사업비는 128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준공예정일은 2016년말에서 2018년 2월로 연장됨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여성가족부는 2015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함
- 부지변경 등 계획변경으로 준공예정일이 2018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2회계연도 초과 이월이 예상됨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29~231.

2

다누리콜센터 위탁사업비 예산 초과 발주 (가족정책관)

가. 현 황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 상담,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누리콜센터 위탁을 위해 조달청에 공모를 하면서 예산액을 초과하여 발주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방식이 사업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32~233.

3

**잉여금을 고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예산 편성 필요
(여성정책국)****가. 현 황**

-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함(수지차보전기관)
 - 2015년도 예산액은 66억 600만원으로 전액 진흥원으로 집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7년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추이와 잉여금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잉여금은 2011년 4.5억원, 2012년 2.6억원, 2013년 6.1억원, 2014년 7.2억원, 2015년 9.5억원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함
 - 동 기관이 수지차보전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34~235.

집필

심 의 | 김 광 목 예산분석실장
윤 용 중 예산분석심의관
상 지 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 세 옥 산업예산분석과장
문 종 열 사회예산분석과장
박 동 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 은 정 법안비용추계1과장
장 태 성 법안비용추계2과장
이 선 주 법안비용추계3과장

작 성 | 이 홍 석 심 지 현 조 효 정
윤 나 나 한 상 춘 전 용 수
김 혜 미 한 성 진 윤 성 식
심 예 원 김 성 수 강 상 규
김 성 은 조 은 애 정 수 현
김 태 은 채 미 강 오 명 희
강 건 회 김 경 수 조 가 영
정 주 완 이 미 연 윤 주 철
박 연 서 김 윤 희

지 원 | 이 서 진 행정실무원
조 혜 정 행정실무원
정 진 아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V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발간일 2016년 7월 11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926-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